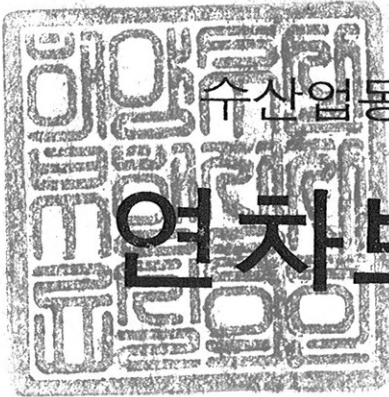


1969年度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KM00012479

海 洋 水 産 部



수산업동향에관한

# 연차보고서

1969

농림수산식품자료실
등록번호: 14266
등록일: 2008년 4월 8일

## 수 산 청



제 1부 1968년도 수산업 동향 .....	3
I. 일반 수산경제 동향 .....	3
1. 국민경제 동향과 수산업 .....	3
2. 수산경제의 개관 .....	6
II. 수산물 수급과 가격 .....	12
1. 수산물 수요 .....	12
가. 개 황 .....	12
나. 수산물가계 소비 지출 .....	15
다. 수산물의 소비형태 .....	15
2. 수산업 생산 .....	17
가. 어업생산 .....	17
나. 제조업 생산 .....	43
3. 수산물 가격 .....	49
가. 개 황 .....	49
나. 종류별 가격변동 추세 .....	51
III. 수산물 수출 .....	55
1. 개 황 .....	55
2. 대상국별 수출 .....	57
3. 품목별 수출 .....	59

IV. 어업 경영 동향	61
1. 어업 경영체의 추이	61
가. 개 황	61
나. 연안어업	63
다. 양식어업	65
라. 근해어업	69
마. 원양어업	72
2. 어업종사 인구의 동향	72
가. 개 황	72
나. 연안어업	74
다. 양식어업	74
라. 근해어업	74
마. 원양어업	75
3. 어업별 어선 규모의 동향	75
가. 개 황	75
나. 연안어선	79
다. 근해어선	79
라. 원양어선	80
V. 어업생산성	82
1. 어업부가가치	82
2.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83

Ⅵ. 수산금융	85
1. 개 황	85
2. 연안어업	88
3. 근해어업	90
4. 원양어업	91
Ⅶ. 68년도 수산부문 투용자	93
1. 개 요	93
2. 투용자 사업 규모	93
3. 투용자 사업실적	94
4. 사업의 효과	98
제2부 1969년도 수산시책	103
I. 개 설	103
1. 수산시책의 배경	103
가. 연안 영세어업 중심의 어업구조	104
나. 생산수단의 전 근대성	104
다. 어업 취업자의 생산성 저위	104
라. 수출신장 추세의 둔화	105
2. 중점 시책	105
가. 수산물 수출진흥	106
나.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추진	108

다. 천해 간석지의 개발	109
라. 원양어업 진흥	110
마. 어항시설의 확충	112
바. 수협제도 개선	113
3. 재정조치	115
4. 입법조치	116
II. 어업자원의 유지와 어업조정	116
1. 어업자원의 번식보호	116
가. 보호수면 관리	116
나. 수질 오염방지 사업	117
2. 어업자원의 증식	117
가. 치어의 인공 방류	117
나. 어업종묘 및 종패 생산	118
다. 원양어장 개발	121
3. 어업조정	122
가. 정치어업 조정	122
나. 근해어업 조정	122
III. 어업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 확충	123
1. 어업 생산수단의 확장파 개선	123
가. 어선 건조	123
나. 동력 개량	125
다. 장비 개량	125

2. 어업 생산기반 조성	126
가. 어항 확충	126
나. 어업 기본시설	128
다. 수산 공제사업	129

#### IV. 기술개발의 촉진과 어업지도

1. 어업 기술개발 촉진 및 교류	132
가. 조사연구 사업의 강화	132
나. 어업기술자 양성	141
다. 기술 교류	142
2. 어업지도	143
가. 어로지도 보호	144
나. 부정어업 단속	145
3. 어촌지도	146

#### V. 수산물증산과 수출의 확대

1. 수산물 증산	148
가. 개 요	148
나. 연안어업	150
다. 양식어업	154
라. 근해어업	158
마. 원양어업	159
2. 수산물 수출	162
가. 개 요	162



나. 품목별 수출계획	163
다. 지역별 수출계획	163
VI. 수산물 유통개선과 처리가공시설의 정비확충	165
1. 개요	165
2. 유통시설의 확장	165
3. 유통구조의 개선	167
4. 어가 안정 사업	167
5. 처리가공시설의 정비 확충	168
VII. 수산업협동조합의 육성 강화	168
1. 수협 자체자금 조성	168
2. 수협직원의 훈련 실시	169
VIII. 조사통계 업무의 강화	170
1. 어업센서스 시험조사	170
2. 어가 경제조사	171
3. 선어 유통조사	171
IX. 한·일 어업협정 수행과 국제협력	172
1. 한·일 어업협정 수행	172
2. 국제어업협력	174

제 3부 1970년도 수산시책	181
------------------	-----

1. 70년도 수산시책의 기본방향	181
2. 중점시책	182
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	182
나. 개발수출	182
다. 연근해어업의 경영개선	183
라. 원양어업 진흥	185
마. 사회간접자본 확충	186
바. 조사연구사업의 실용화 촉진	187
사. 통계개선	188

## 부 록

I. 수산관계 법령 제정 및 개정	193
1. 수산진흥법시행령	193
2. 한국수산개발공사법	198
3.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
II. 수산관계 주요 통계	201
1. 68년도 수산물 총 생산고	201
1-1 1968년도 종류별·시도별 어획고	201
1-2 1968년도 종류별·시도별 양식고	202
1-3 1968년도 포경어업 어획고	202
1-4 1968년도 원양(해외)어업 어획고	203

2. 1967년도와 1968년도의 어선세력비교	204
3. 68년도 톤급별 어선세력	204
4. 68년도 어업별 어선세력	206
5. 선령별 어선현황	208
6. 어업별 어로장비	210
7. 68년도 수산물 제조상황	212
8. 68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214
9. 69년도 시도별·해역별·종류별·분기별 생산계획량 총괄표	218
10. 69년도 어업별·종류별·분기별 생산계획량 총괄표	222
11. 69년도 어업별·월별 생산계획량	230
12. 69년도 종류별·월별 생산계획량	230
13. 69년도 연근해어업 중요어종별 생산계획량	232
14. 시도별·분기별·제품별 생산계획량	239

## 도 표 목 차

도 1. 수산업 성장률	5
도 2. 수산판매 주요지표의 추이	7
도 3. 수산물 소비구조 추이	13
도 4. 어업 생산구조의 추이	17
도 5. 종류별 생산추이	19
도 6. 다획성 어종 생산추이	22
도 7. 주요 연안어업 생산추이	24
도 8. 양식어업 생산추이	27

도 9. 근해어업 생산추이	33
도 10. 원양어업 생산추이	36
도 11. 수산물 가공품 생산추이	44
도 12. 수산물 가격동향	50
도 13. 어류 (가공) 도매가격 월별 추이	52
도 14. 해조류 도매가격 월별 추이	53
도 15. 수산통조림 도매가격 월별 추이	54
도 16. 수산물 수출 추이	56
도 17. 수산물 품종별 수출 추이	59
도 18. 어선세력 추이	77
도 19. 수산업의 부가가치 추이	82
도 20. 어업과 비어업간의 생산성 대비	84
도 21. 재정자금 연도별 대하 추이	87
도 22. 68년도 투융자 실적	94
도 23. 69년도 어업구조별 생산계획	143
도 24. 69년도 시도별·해역별 생산계획	149
도 25. 총수출 대 수산물 수출	162
도 26. 지역별 수출계획	164

## 표 목 차

표 1. 국민총생산과 수산업 성장대비	5
표 2. 수산관계 주요지표	12
표 3. 수산물 수급상황	14

표 4. 수산물 가격소비지출 추세	16
표 5. 어업 생산실적	18
표 6. 종류별 생산실적	20
표 7. 다획성어종 생산실적	23
표 8. 연안어업 생산실적	26
표 9. 양식어업 생산실적	28
표 10. 패류생산 증가율	29
표 11. 분기별 패류 생산량	30
표 12. 도별 생산량	31
표 13. 해조류 생산추이	32
표 14. 근해어업 생산실적	35
표 15. 원양어업 생산실적	36
표 16. 해역별 어획량 추이	37
표 17. 원양어선 보유현황	38
표 18. 연령별 학력별 선원수	39
표 19. 참치어업 어선수 및 어획고 추이	39
표 20. 68년도 참치 연승어업 기지별 생산실적	40
표 21. 참치연승 선원수	41
표 22. 68년도 트롤어업 기지별 생산실적	42
표 23. 세계 주요어업국 생산추세	43
표 24. 제조업 생산실적	45
표 25. 주요 병동품 생산량	46
표 26. 통조림 생산실적	46
표 27. 한천 생산실적	47

표 28. 어간유 생산실적	47
표 29. 어업총생산고 대 제조고	48
표 30. 수산물가격 변동률	51
표 31. 총수출과 수산물 수출대비	56
표 32. 대상국별 수산물 수출실적 추이	57
표 33. 품종별 수출실적	60
표 34. 어업경영체의 추이	62
표 35. 연안어선어업 업종별 경영체 동향	64
표 36. 연안어선어업 시·도별 경영체 동향	65
표 37. 도별·품종별 경영체수	67
표 38. 주요 품종 수익성	68
표 39. 어업 경영체별 동향	69
표 40. 어업 근거지별 경영체수	70
표 41. 업종별 경영체 현황	71
표 42. 어업 종사인구의 동향	73
표 43. 어업별 종사인구 추이	76
표 44. 어선 세력 증가 동향	78
표 45. 연도별 연안어선 통계	80
표 46. 근해어선의 동향	80
표 47. 원양어선의 동향	81
표 48. 자금현황	82
표 49. 어업취업자 생산성 동향	85
표 50. 자금 확보상황	89
표 51. 어선 어획량 및 자금지원 추이표	90

표 52. 자금확보상황	91
표 53. 기금확보상황	92
표 54. 68년도 투융자사업 예산 집행실적	95
표 55. 68년도 투융자사업 실적	96
표 56. 수산부문 투융자 예산	115
표 57. 종묘 생산계획	119
표 58. 백합종패 보호구역 지정 및 69년도 사업규모	120
표 59. 69년도 백합종패 수급계획	121
표 60. 69년도 어선건조계획	124
표 61. 69년도 동력 개량사업 계획	125
표 62. 69년도 장비개량 사업계획	126
표 63. 69년도 어항수축 사업계획	127
표 64. 69년도 어업기본시설 계획	129
표 65. 국고보조금 교부 실적	130
표 66. 공제기금 적립상황	131
표 67. 69년도 공제사업 추진계획	131
표 68. 69년도 해 외연수생 파견계획	143
표 69. 69년도 해 외기 술자 훈련계획	143
표 70. 부정어업 단속 및 처리상황	145
표 71. 어촌 부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146
표 72. 69년도 종류별 생산계획	150
표 73. 69년도 연안어업 생산계획	153
표 74. 품종별·요인별 생산계획	154
표 75. 투자계획	156

표 76. 생산 수출효과 .....	156
표 77. 개발 목표 .....	157
표 78. 연차별 계획 .....	158
표 79. 어업별 생산계획 .....	159
표 80. 해역별 생산계획 .....	160
표 81. 해역별 · 어업별 어선세력 .....	161
표 82. 품목별 수출계획 .....	163
표 83.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계획 .....	166
표 84. 100억 자체자금 계획 .....	168
표 85. 자체자금 조성실적 .....	169
표 86. 사업계획 대 실적 .....	170
표 87. 어업협력자금 제 2차년도 사업내용 .....	175
표 88. 농어촌 개발공사의 A I ■ 차관 사업계획 .....	176
표 89. A ■ F 차관 신청내용 .....	177
표 90. 3차년도 청구권자금 사용계획 .....	178





# 제1부 1968년도 수산업 동향

한글번호 수 코 88891 711

## 제 1 부 1968년도 수산업동향

### I. 일반 수산경제 동향

#### 1. 국민경제 동향과 수산업

68년의 우리나라 경제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수년래의 왕성한 확대추세를 지속하여 13.3%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 주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공업화의 방향으로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의 성장속도는 그동안 이루어진 투자가 차츰 생산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가속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공업은 26%, 건설업 및 사회간접자본은 16%로 각각 성장하였다.

국내 총투자율은 외자도입과 정부저축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전년의 21.8%에서 24.5%로 상승됨으로써 53년 이래 가장 높은 투자율을 나타내었다.

경제확대를 뒷받침한 재정규모는 투융자지출을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하였으나 국내 조세수입이 계속 급증함으로써 재정수지는 흑자를 나타내었으며 재정수입중 원조자금이 접하는 비중은 전년도에 이어 현저히 감축되었다.

68년의 국민총생산은 경상시장가격으로 1조5,756억원에 달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명목상 26.8%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제거하여 본 65년 불변시장가격으로는 1조 1,273억원이 되어 13.3%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였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경상시장가격으로 51,713원에 달하여 전년도

의 41,712원에 대하여 10,001원이 늘어났으며 불변시장가격으로는 11%의 증가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을 산업부문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1.2%에 불과하였으나 광공업은 26.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는 15.9%의 현저한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성장에 따른 국민총생산에 대한 구성비(경상시장가격)를 보면 광공업은 전년의 20.0%에서 21.1%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48.2%에서 50.1%로 각각 증가된 반면 농림 어업부문은 31.8%에서 28.8%로 감퇴되었다.

이러한 국민경제의 기초위에서의 수산업은 한 때 동해안에서의 심한 폭풍우로 인한 어선의 손실 등 생산활동에 극심한 타격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66년 이후 집중 투하된 매일 청구권자금의 투자효과와 수출산업으로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시책에 힘입어 어업생산량은 85천톤에 달함으로써 전년비 13.6%의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물량면에서의 증가율은 62년 이후의 평균증가율 9.7%에 대하여 3.9%를 상회하는 것이며 동 기간중에 있어서의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던 63년의 13.1%에 대하여도 0.5%를 상회하였다.

어업 총 생산(부가 가치)은 6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200억원(경상 가격 299억)으로서 전년대비 14.4%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증가는 농림부문의 0.5% 미증가는 대조적인 것으로서 1차산업 전체성장률 1.2%를 증가시키는데 현저히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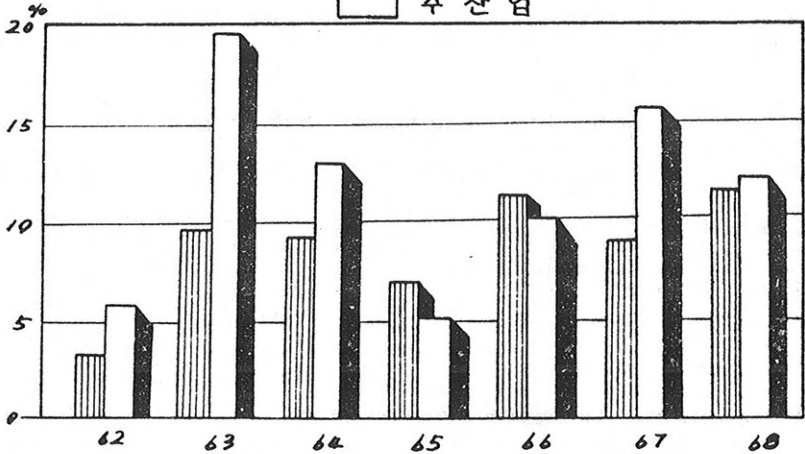
한편 국민총생산에 대한 구성비는 1.8%로 됨으로써 전년도와 동일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 1)

수산업성장률  
(65년 불변시장가격)

국민총생산

수산업



(표 1)

국민총생산과 수산업성장대비

구 분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국민총생산	3.5	9.1	8.3	7.4	13.4	8.3	13.3	
농림업	-6.4	6.7	16.3	-1.1	11.0	-6.5	0.5	
수산업	6.2	19.1	13.2	5.5	10.6	16.5	14.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어업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은 6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91,273 원에 달함으로써 전년도 80,550원과 대비하면 13.3%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의 수준은 농림업에 대하여는 36%를 상회하고 있으나 비농림업 부문에 대하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에 따른 어업총생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연안어업은 전년도의 65.5%에서 64.9%로, 근해어업은 16.2%에서 15.9%로 감소된 반면 원양어업은 5.3%에서 5.9%로, 양식어업은 12.9%에서 13.2%로 각각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연근해 어업에 있어서 그 구성비가 감소되는 반면 원양 양식어업에 있어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원양어업진흥책과 천혜천치개발시책이 그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생산구조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 2. 수산경제의 개관

연도중 수산업은 어획면에서 전례없는 생산실적을 올림으로써 전년대비 13.6%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부가가치면에서는 전년의 16.5%에 이어 14.4%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어업생산의 계속적인 호조는 66년 이후 적극화된 수산개발 정책에 따라 그동안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투자에 힘입어 그 효과가 현저히 나타난데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3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천혜조건과 미개발자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를 충분히 활용 또는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어업은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침체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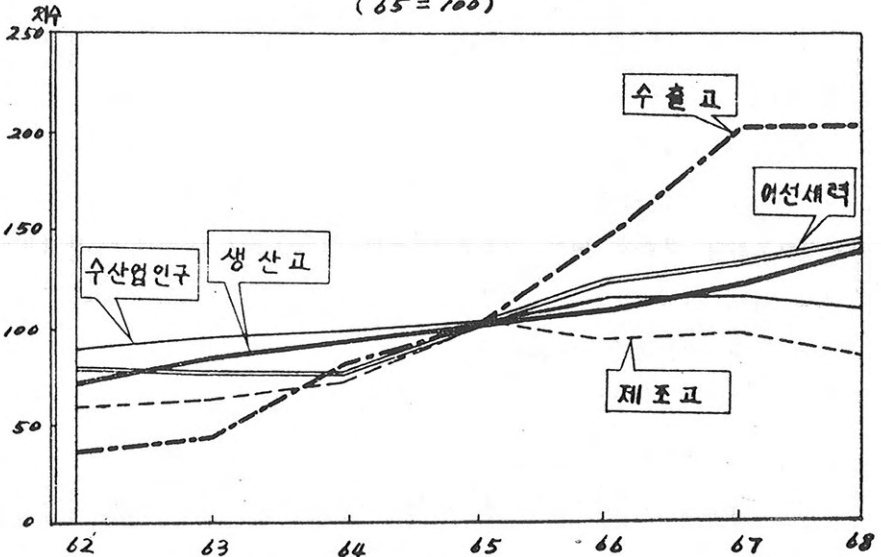
따라서 총인구의 4.6%를 도용하고 있는 어업부문의 부가가치는 국민총생산에 대하여 1.8% (65년불변가격) 제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서 아직도 취약한 상태를 탈피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연도중 영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책외 일환으로서 천해간석지개발사업을 대폭 확장하였으며 특히 생산성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선건조·어항수축·어업기본시설·어로장비의 개선, 무동력선의 동력화 및 원양어업개척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어업경영의 근대화화 및 금후 확대재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생산기반확장과 생산성향상 이외에도 어획물의 제조 가공 및 일식다획성어종의 어가안정, 유통정로개선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수산경제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 수산관계 주요 지표의 추이 (65 = 100)





### (1) 어업 생산고의 증가

어업생산량은 62년 이래 연평균 9.7%의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으며 68년에는 852천톤에 달하여 전년대비 13.6%의 전례없는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증가율을 어업별로 보면 연안어선어업에서 12.6%, 연안양식어업에서 16.4%, 근해어업에서 11.4%, 원양어업부문에서는 25%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어업의 부가가치도 62년 이래 연평균 12.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68년에는 6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200억원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14.4%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편 어업의 생산구조도 근래화의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 연안어업의 구성비는 전년도의 65.5%에서 64.9%로, 근해어업은 16.3%에서 16.0%로 감퇴된 반면 원양어업은 5.3%에서 5.9%로 상승되었다.

### (2) 어업종사자의 감퇴

어업종사자는 62년 이래 적극화된 수산개발정책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에 따라 67년까지는 연 5%의 증가추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68년에는 전년도보다 8.5%가 감소된 540,857명이었다.

이를 종사형태별로 보면 어선어업에서 12%, 양식어업에서 3% 각각 감소되었는바 어업종사자의 이와같은 감퇴현상은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공업고도화의 심화에 따라 공업부문에서의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많아진 데다가 이로 인한 어촌의 잠재실업군이 차츰 감소된 데 기인한 것이다.

### (3) 수산가공생산의 감퇴

연도중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은 77,267톤으로서 총량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9%가 감소되었다.

이를 상품의 형태별로 보면 총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처차

산품중 소견품은 전년도에 비하여 배증하였고 여타산품인 염신품·염장품 염건품등은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다.

한편 고차산품인 냉동품은 전년도에 비하여 16%, 통조림은 26%로 현저히 감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감소는 냉동대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확성 어종인 전갱이와 조기등이 선어상 태로서의 국내소비가 증가되고 또한 가공제품의 주된 원료인 콩치의 생산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있다.

#### (4) 수산물가격 상승의 둔화

수산물가격은 62년이래 67년까지 연평균 23.6%의 높은 수준의 등귀율을 나타내었으며 동 기간중의 변동폭은 무려 15%이었으나 연평균으로 본 수산물가격은 163.1 (65 = 100)로서 전년에 비하여 9.9%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등귀율은 전국 도매물가상승률 8.1%에 대하여 1.8%를 상회하고 있기는 하나 전년도 등귀율 24.9%나 연평균등귀율 23.6%와 대비하면 현저히 둔화된 셈이다.

이와 같이 62년이래 가장 낮은 등귀율을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전국 도매물가 상승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유통경로의 단순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야기되었던 다확성어종등에 대한 가격진폭을 어기간정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 의하여 조정 안정시킨데 기인된 것이다.

#### (5) 수산물수출의 둔화

연도중의 수산물수출실적은 수년내 지속된 상승세에서 반전하여 전년도 실적보다 약간 감퇴된 57,323천불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수산물수출의 부진상을 대상지역 별로 보면 일본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예년에 수출액의 60%

내지 70%의 비중을 점하던 일본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에 비하여 약 1.8백만불 감소되었다.

한편 이를 품목별로 보면 활어·선어·해태·참치 등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오징어 한천이 예년에 비하여 월등히 부진함으로써 당초목표 미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 (6) 어업취업자 부가가치생산성의 향상

어업생산고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어업부가가치의 증가로 연도중 어업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6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91,273원으로서 전년도 수준보다 10,723원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취업자 부가가치생산성 수준의 상승은 어업생산고의 증가에 주된 원인이 있겠으나 증가추세를 지속하던 어업취업자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에 따른 2차산업부문에서의 고용기회 확대로 어업부문의 취업자가 타산업부문으로 이동됨에 따라 그 증가율이 둔화됨으로써 1인당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7) 어선세력의 확장

연도중 어선세력은 293천명에 달하여 전년대비 11.7%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어선형태별로는 동력선이 206천척으로서 전년비 15.1% 무동력선이 87천척으로서 전년비 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동력선의 현저한 급증은 66년 이후 강력히 추진하여온 무동력선의 동력화책 효과가 나타남에 기인된 것이다.

한편 어선척수의 동향을 보면 전년비 8%가 증가된 62천척으로서 동력선이 4%, 무동력선이 9% 각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무동력어선척수의 증가는 우리나라 어업구조의 특징과 전체대비 82%를 점하고 있는 무동력어선의 비중을 비추어 보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 (8) 어업경영체의 증가

68년도에 있어서의 어업경영체의 총수는 79,541로서 전년비 5.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체의 어업별구성을 보면 연안어업이 79,077로서 전체대비 99.4%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0.6%가 근해 및 원양어업경영체로서 우리나라 어업이 연안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어업별 경영체의 변동을 전년과 대비하여 보면 연안어업중 어선어업은 6.3%, 양식어업은 5.4% 증가하였으며 근해 및 원양어업은 16.8%, 33.3%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급증은 정부의 외연어장확대시책에 힘입은 것이다.

#### (9) 수산자금 대출액의 증가

연도중 수산업 부문에 대한 자금대출액은 10,644백만원으로서 전년말현재 대출액 7,086백만원대비 50% 증가 되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재정자금 부문에서 전년비 40%, 금융자금부문에서 103% 각각 증가되었으며 금융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증가는 해태수집자금의 한도액증가와 원양어업출어척수의 증가에 따른 출어자금 지원액 증가에 기인된 것이다.

한편 재정부문에 있어서의 증가는 시설자금중 청특자금을 의한 신규 어선건조 및 처리가공시설의 확충에 따르는 신규 소요자금의 지원과 영어자금 및 경제사업 자금중 부족액의 일부를 추가 확보 지원한에 기인되고 있다.

(표 2)

## 수 산 관 계 주 요 지 표

구 분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수 산 업 인 구 (천인)	1,138 (87)	1,204 (92)	1,245 (95)	1,314 (100)	1,495 (114)	1,520 (116)	1,400 (107)
생 산 고 (천%)	470 (74)	532 (84)	599 (94)	636 (100)	702 (110)	750 (118)	852 (134)
제 조 고 (천%)	58 (63)	60 (65)	65 (71)	92 (100)	82 (89)	85 (92)	77 (84)
수 출 고 (천\$)	12,341 (43)	13,691 (48)	23,665 (83)	28,492 (100)	42,036 (148)	57,499 (202)	57,323 (201)
어 산 세 력 (천원)	162 (80)	160 (79)	167 (82)	203 (100)	245 (121)	262 (129)	293 (144)

※ 괄호내시는 지수

## II. 수산물 수급과 가격

## 1. 수산물 수요

## 가. 개 황

수산물의 수요는 국내 소비수요와 해외수출 수요로 구분한다.

국내소비중 식용품으로 소비된 수산물은 연중 746천톤으로 전년비 19.3% 증가 되었으며 62년도의 393천톤에 대하여는 89.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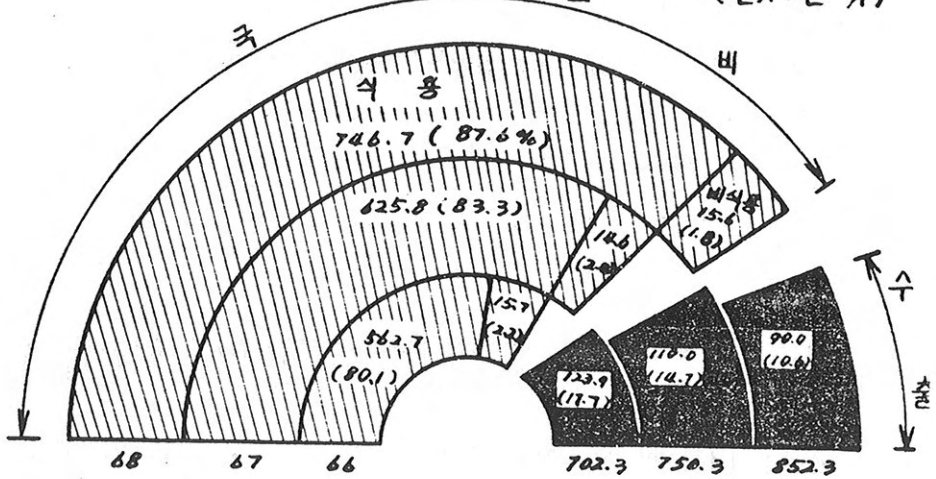
총 공급량에 대한 국내 식용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66년에는 702천톤의 80.1%, 67년도에는 750천톤의 83.3%이었던 것이 68년도에는 852천톤의 87.6%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도 3)

수산물소비구조추이

내 소

(단위: 천 %)



※ 팔호내시는 구성비

수산물이 국민 보건상 필수 불가결한 담백질 공급원인임을 감안할 때 연간 수요량에 대한 과부족은 생산시책에 의하여 조정되어야 할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수준의 저위성과 수산물의 소비태양에 비추어보아 양곡 수요량과 같이 절대수요량이 존립될 수 없고 공급량 즉 생산량 자체가 수요량을 결정하고 또한 국내수요는 국외수출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절대 수요량의 책정은 의의가 없으므로 잠재 수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보면 1인 1일당 담백질 권장량 73 gr 중 30% 즉 22 gr을 동물성 담백질로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동물성 담백질 공급권장량 22 gr

중 80% 즉 17.6 gr을 수산동물성 단백질로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에 수산물 수요량은 약 200만 톤으로 추산된다.

수산물과 축산물과의 대체관계는 그 상대가격의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현재의 가격변동 추세로 보아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소비중 비식용 소비는 연중 15.6천톤으로 전년비 0.8% 증가되었으며 총공급량에 대한 비율은 1.8%로서 전년도보다 약간 하회하였다. 수출수요는 62년도에 64천톤이던 것이 68년에는 90천톤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14.5%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67년이후에는 수량면에서 약간 감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수 산 물 수 급 상 황

(단위 : %)

구 분		62	63	64	65	66	67	68	증가율 68/62	
공 급 (생산)		470,187	532,153	599,824	636,512	702,295	750,349	852,291	81.3	
수 요	국 용	식량	395,823	462,205	483,906	524,286	562,689	625,768	746,690	89.6
		구 성 비	84.2	86.9	80.7	82.3	80.1	83.3	87.6	
	내 소 비	식량	9,972	7,921	15,159	9,341	15,734	14,575	15,576	56.2
		구 성 비	2.1	1.4	2.5	1.4	2.2	2.0	1.8	
	비 계	식량	405,795	470,126	499,065	533,627	578,423	640,343	762,266	87.8
		구 성 비	86.3	88.3	83.2	83.8	82.3	85.3	89.4	
수 출	수 량	64,392	62,027	100,759	102,885	123,872	110,006	90,025	39.8	
	구 성 비	13.7	11.7	16.8	16.2	17.7	14.7	10.6		

#### 나. 수산물 가격 소비지출

국민소득면에서 본 68년의 민간의 총소비규모는 경상시장가격으로 1조 1917억원으로 전년보다 명목상 22.9% 증가하였으며 물가등귀를 거하고 보더라도 11.4% 늘어났다.

이로서 1인당 소비수준은 39,112원으로서 전년보다 20% 증가하였으나 1인당 국민총생산 증가율 24%보다 4% 하회하였다.

68년의 식료품 소비지출 총액은 5,607억원으로서 전년보다 17.1% 증가한데 대하여 수산물 소비지출 총액은 350억원으로서 22.4%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식료품 소비지출 증가율에 대하여 5.3%를 상회 하였다.

한편 65년 이후 식료품 소비지출 총액이 민간소비지출 총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65년 55.4%, 66년 52%, 67년 49%, 68년 47%로서 해마다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에 반하여 동기간중 식료품 소비지출 총액에 대한 수산물 소비지출 총액의 비율은 각각 5.8%, 6.2%, 6%, 6.3%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가계비중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퇴하는 반면 식료품중비중 적 고급 식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기인된 것이다.

#### 다. 수산물의 소비형태

수산물의 소비형태를 66년도 산업연관표에서 보면 총산출액 24,156.8백만원 (경상시장가격) 중 공업원료 등 중간재로서 7,194백만원 최종재로서 17,322.8백만원이 수요되어 총산출액에 대하여 30% : 70%



의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표 4) 수산물가제 소비지출 추세  
(경상가격) (단위: 10억)

구 분		연 도			
		65	66	67	68
민 간 소 비 지 출 (A)		669.08	805.90	973.55	1,191.75
식 료 품 소 비 지 출 (B)		370.97	419.22	478.74	560.71
수 산 물 소 비 지 출 (C)		21.63	26.04	28.65	35.09
구 성 비	B/A	55.4	52.0	49.2	47.0
	C/B	5.8	6.2	6.0	6.3
가 구 당 수 산 물 월 소 비 지 출 (원)		35.3	424	467	571

이는 63년도 산업연관표에서 나타난 것 보다 중간재 수요가 4% 증가된 반면 최종 수요가 4% 감소된 것으로서 그동안 수산물의 공업 제품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수산물을 수요부문별로 보면 중간수요중 식료품에 7,061.9백만원, 목제품 및 가구에 38.8백만원, 기초화학제품에 22.1백만원, 기타제조업에 12.2백만원, 건축 및 건축보수에 54백만원 기타 용도에 5백만원이 각각 수요 되었으며 최종수요중 민간소비지출에 14,849.3백만원, 정부지출에 41.8백만원, 수출에 2,431.7백만원이 수요되었다.

이렇게 볼때 수산물 총산출액중 가공 식료품 소비가 증가수요의 98.1% 총산출액의 29%를 차지하고 민간소비지출이 최종수요의 85.7%, 총산출액의 61.5%를 차지하며 수출이 최종수요의 14%, 총산출액의 10.1%를 차지하여 가공식료품 소비와 민간소비지출 및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

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업원료로서 소비되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근소한 면이다.

## 2. 수산업 생산

### 가. 어업생산

#### (1)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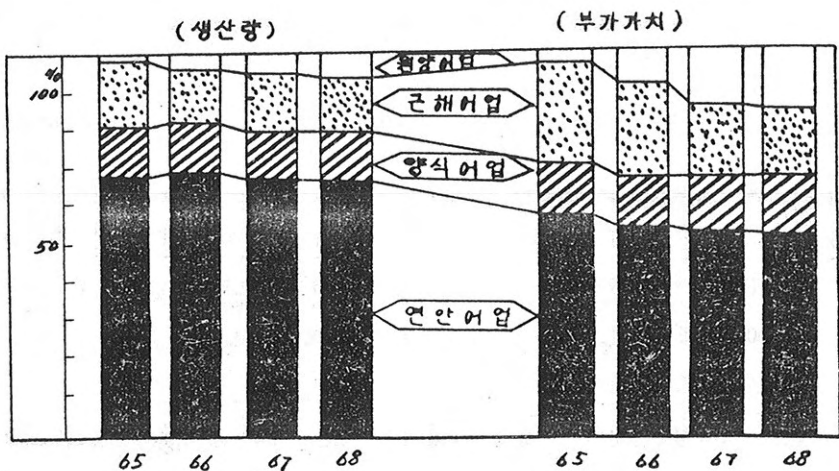
어업생산량은 62년도 이래 연평균 9.6%의 증가율로 계속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중 생산량은 852천톤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13.6%의 증가율을 나  
 타내었으며 연평균 증가율보다도 3.9%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어업생산의 호조는 어업개발정책의 적극화와 이에 따른 경제  
 개발계획에 의한 투자효과가 생산면에 현재화된 데 기인된 것이다.

(도 4)

어업생산구조의 추이  
 (65년 불변시장가격)



어업별 생산고를 보면 연안어업이 553천톤으로 전년비 12.7%, 근해어업이 136천톤으로 11.5%, 원양어업이 50천톤으로 23.6%, 양식어업이 111천톤으로 14.2% 각각 증가하였다.

원양어업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연어장 확장 지원책이 주요한 결과라 하겠다.

(표 5)

어업 생산 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연도 구분 어업별	연안어업		양식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		계	
	생산량	부가가치	생산량	부가가치	생산량	부가가치	생산량	부가가치	생산량	부가가치
65	431 (67.7)	7,634 (56.1)	74 (11.6)	1,863 (13.7)	124 (19.4)	3,642 (26.7)	8 (1.3)	480 (3.5)	637 (100)	13,616 (100)
66	482 (68.6)	8,011 (53.2)	91 (13.0)	1,885 (12.5)	102 (14.6)	3,667 (24.3)	27 (3.8)	1,504 (10.0)	702 (100)	15,062 (100)
67	491 (65.5)	9,088 (51.8)	97 (12.9)	2,371 (13.5)	122 (16.3)	3,713 (21.1)	40 (5.3)	2,388 (13.6)	750 (100)	17,566 (100)
68	553 (64.9)	10,665 (50.1)	113 (13.2)	2,972 (14.8)	136 (16.0)	4,111 (20.5)	50 (5.9)	2,932 (14.6)	852 (100)	20,088 (100)

※ 괄호내시는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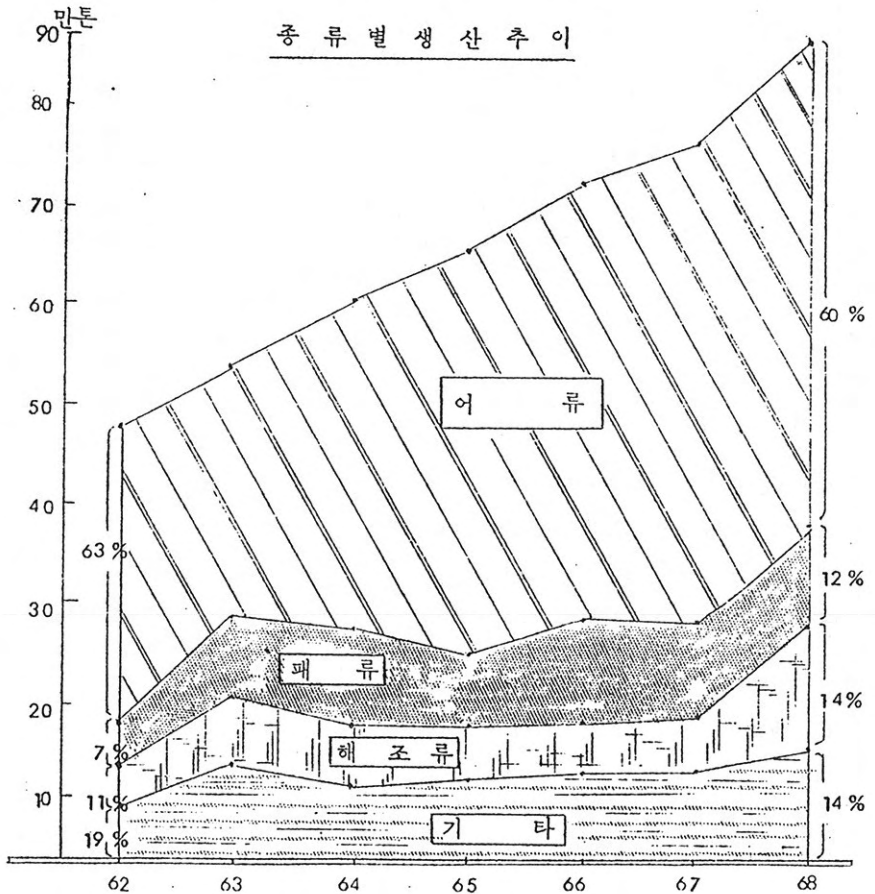
한편 이를 종류별로 보면 어류가 511천톤으로 전년비 6.1%, 패류가 100천톤으로 4.4%, 해조류가 119천톤으로 36.1% 기타 수산물 122천톤으로 4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 어획량에 대한 종류별 구성비를 62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첫째 어

류는 63%에서 60%로 감퇴되었으며 둘째 패류는 7%에서 11.7%로  
 해조류는 11%에서 14%로 각각 증가되었다.

연중 생산량을 62년도 생산량과 대비하여 보면 어류 83.3%, 패류  
 232.6%, 해조류 13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패류의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62년 이후 강력히 추진되어온 연안증식사업의 확장에  
 힘 입은 것이다.

도 5



(표 6)

## 종 류 별 생 산 실 적

(단위 : %)

종류별 \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어 류	298,926 (63%)	252,672 (47)	323,289 (54)	393,504 (62)	428,905 (61)	481,427 (64)	511,219 (60)
패 류	32,649 (7%)	82,559 (15)	99,181 (17)	79,687 (12)	101,368 (114)	95,607 (12)	99,855 (12)
해 조 류	51,665 (11%)	57,523 (11)	61,714 (10)	60,978 (9)	69,749 (10)	87,827 (11)	119,587 (14)
기 타	86,947 (19%)	139,399 (27)	115,640 (19)	102,343 (17)	102,273 (15)	85,488 (11)	121,630 (14)
어업총생산	470,187 (100%)	532,153 (100)	599,824 (100)	636,512 (100)	702,295 (100)	750,349 (100)	852,291 (100)

※ 괄호내시는 구성비

한편 어획고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일시 다획성 어종의 생산량은 216천톤으로서 연안어업 생산고 553천톤에 대하여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가 감소 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칼치의 어획량이 전년에 비하여 30천톤이나 감소된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 다획성 어종의 생산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생산고의 증가율이 12.7%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때 연안어업에서 생산되는 어종중 다획성 어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어종별 생산추이를 개관하면 다획성 어종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멸치

는 62년에 47천톤이었던 것이 68년에는 63천톤으로 증가되어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조기는 22천톤이 54천톤으로 증가됨으로써 23%, 가자미는 9천톤이 20천톤으로 증가됨으로써 18%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외에 명태는 62년의 생산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꽁치·전생이·칼치는 62년에 비하여 오히려 감퇴하였다.

## (2) 연안어업

### (가) 개황

어선세력의 97%인 60,202척이 투입되고 있는 연안어업의 68년도 총 생산량은 553,370%으로서 전년도 연안어업 총 생산량 490,928%에 비하여 1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생산증가 요인은 해조류의 풍획과 오징어의 전례없는 풍어에 있는 것이다.

62년부터 68년까지의 어업별 생산추이를 보면 현저한 기복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전년도와 대비하면 제1종공동어업·유자망어업·일본조어업·연승어업에 있어서는 어획량이 증가되었음에 반하여 타 어업은 평형 내지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 (나) 권현망어업

이 어업은 연안어업중 가장 경영규모가 큰 어업으로 68년도 생산량은 25,363%으로 전년도대비 약 5.8%가 감소되었으나 62년도부터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다) 안강망어업

연안어업중 중추적인 어업에 속하며 매년 1~2위의 어획고를 유지하는 어업이다.

6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67년도에는 109,837%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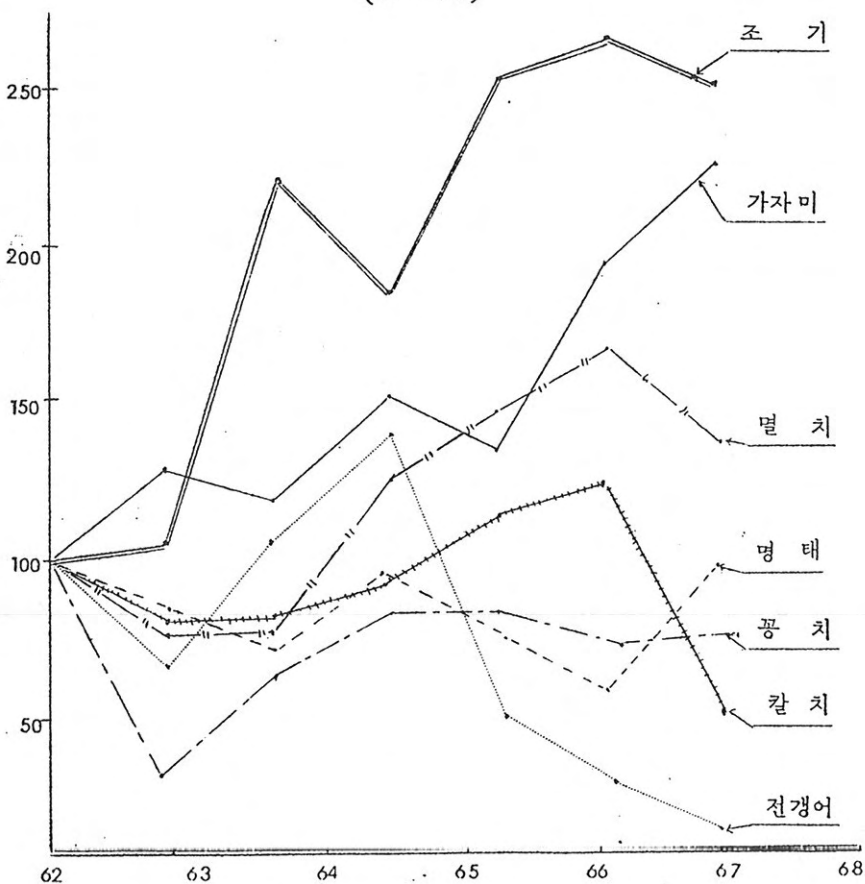
어획되어 연안어업별 어획고중 제 1위를 차지하였으나 68년도에는 96,060 %을 생산함으로써 전년비 10%가 감소되었다.

이와같은 감소는 어획물의 주종을 차지하는 조기·칼치등의 어획부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도 6)

다 획성 어 종 생 산 추 이

(62 = 100)



(표 7)

## 다 회성 어종 생산실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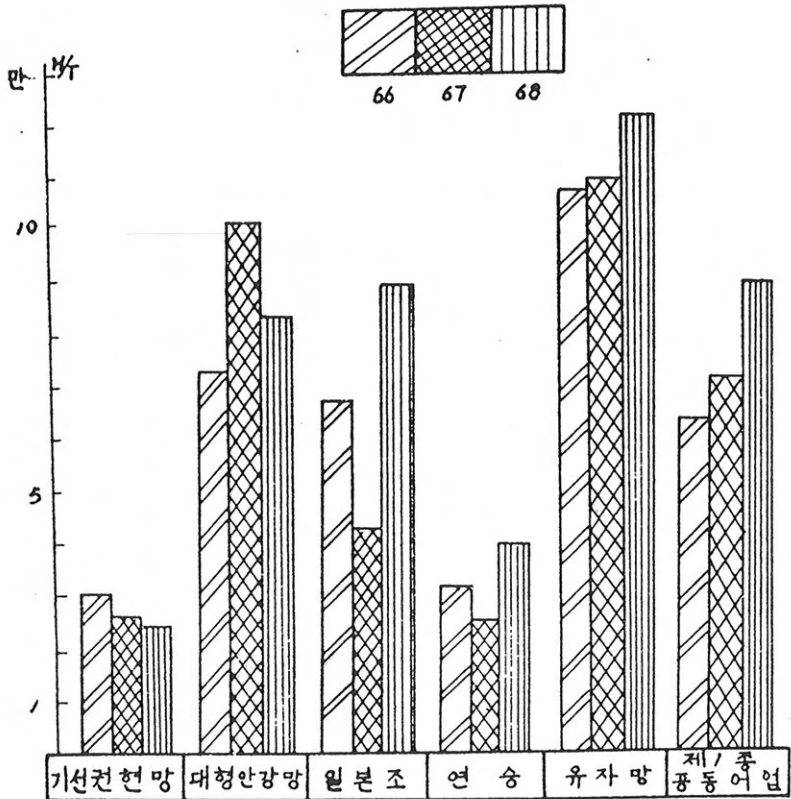
어 종	연 도		62		63		64		65	
	생 산 량		생 산 량	지 수	생 산 량	지 수	생 산 량	지 수	생 산 량	지 수
가 자 미			8,639	100	11,410	132	10,252	119	13,495	156
명 태			27,792	100	22,606	82	20,653	71	26,696	99
조 기			21,653	100	23,049	106	47,018	217	39,608	183
퐁 치			39,772	100	12,544	31	25,370	64	32,281	81
전 갱 이			18,419	100	12,440	68	19,581	106	26,496	143
멸 치			46,955	100	32,392	69	35,592	76	56,761	121
칼 치			39,307	100	30,451	77	29,961	76	37,683	96
계			202,737	100	144,886	71	188,427	93	233,020	115

어 종	연 도		66		67		68	
	생 산 량		생 산 량	지 수	생 산 량	지 수	생 산 량	지 수
가 자 미			12,021	139	16,457	191	19,758	229
명 태			21,013	76	17,503	63	28,678	103
조 기			54,422	253	57,521	265	53,846	249
퐁 치			39,404	79	27,858	70	29,893	75
전 갱 이			10,058	54	5,280	29	2,543	14
멸 치			66,349	192	78,536	168	63,127	134
칼 치			45,384	115	48,713	124	18,592	47
계			248,651	122	251,870	124	216,437	107



(도 7)

주요 연안어업생산추이



(라) 일본조어업

영세 경영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이 어업은 연안의 대표적 소규모 어업으로서 주대상 채포물은 오징어이며 64년도에 87,762 %의 생산고를 올렸으나 동년 이후 계속 감소 경향을 보여 67년도에는 42,393 %으로 감퇴되었으나 68년도에는 전년대비 2배나 증가된 88,941 %의 어획고를 올렸다.

이는 주대상 어종인 오징어의 풍어와 신규 건조어선의 투입에 의한 어선세력의 확장 및 장비 현대화에 따른 단위 생산성의 향상에 힘입은 것이다.

#### (마) 유자망어업

이 어업은 안강망어업과 같이 연안어업중 생산고의 1~2위를 유지하는 중견어업으로 68년도 생산량은 1~3월의 어획부진에도 불구하고 119,164 %의 어획을 보여 전년 대비 14% 증산되었으며 어업별 어획고중 수위를 수지하였다.

연도별 생산추이를 보면 63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타 어업에 비하여 연도간 생산진폭이 비교적 좁은 것은 영세어업이기 는 하나 안전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바) 정치망어업

이 어업의 68년도 어획실적은 전년 대비 34%를 하회한 15,800 %의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생산감소는 연도중의 해황·기상조건의 영향도 있겠으나 기동성 어업의 발달로 인하여 고정어구에 의한 정치망어업의 생산감소추세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입지조건으로 보아 전망이 희박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키로 방침을 세워 연차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68년도에는 71건을 정비 보상하였다.

#### (사) 연승어업

이 어업의 68년도 어획실적은 현저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61%가 증가된 40,211 %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급증은 신규 건조어선의 투입과 무동력어선의 동력화 등에 의한 단위 생산성의 향상에 기인된 것이다.

(아) 제 1종 공동어업

62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어업의 68년도 생산실적은 89,382 %으로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이는 일선어민들이 양식 수익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양식에 대한 정부의 중점적인 개발시책이 주요한데 기인된 것이다.

(표 8)

연안어업생산실적

(단위 : %)

어업별 \ 연도별	62	63	64	65	66	67	68
기선권현망	32,253	19,624	9,028	17,542	30,160	26,913	25,363
범선저인망	5,635	3,867	6,798	10,260	9,469	11,996	10,145
선인망	701	389	-	661	2,202	1,993	595
대형안강망	32,724	42,798	65,045	61,093	72,534	99,750	83,057
기타안강망	3,492	33,561	6,693	11,325	10,613	10,087	13,003
일본조	40,734	32,832	87,762	72,625	76,757	42,393	88,941
연승	30,511	30,643	23,866	31,769	31,054	24,965	40,211
상어연승	4,462	-	2,594	3,678	1,108	2,860	921
유자망	61,223	37,484	67,399	94,191	104,703	106,269	119,164
잠수기	4,381	6,567	9,100	11,348	11,024	15,292	11,194
정치망	32,517	22,974	19,496	26,976	30,651	23,812	15,832
제 1종공동	25,782	39,069	44,172	55,954	62,730	69,396	89,382
제 2종공동	5,996	2,413	4,251	9,932	4,848	6,627	6,035
제 3종공동	25,652	28,363	12,574	11,771	12,457	16,916	17,359
해조채취	1,155	668	-	2,905	7,461	6,181	6,773
기타	22,238	76,155	66,481	9,287	13,938	25,578	25,395
총계	329,456	365,757	425,259	430,617	481,709	490,928	553,370

### (3) 양식어업

#### (가) 개 황

연도중 수산증식사업에 투입된 투자액은 843,757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투융자 사업부문에 496,117천원이 투입되었고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에 347,640천원이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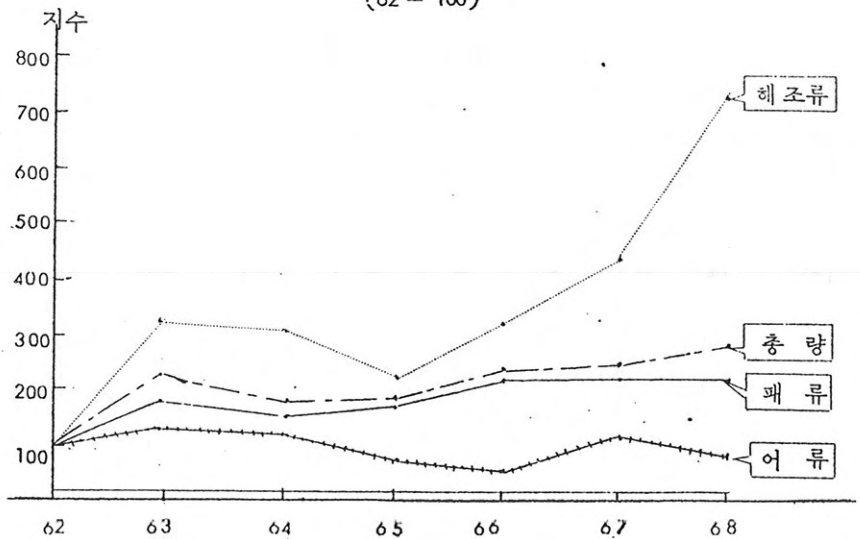
수산증식사업비중 중점개발품목인 굴·백합·해태·축양에 투입된 투자액은 총액대비 78.6%인 663,370천원이며 그중 일반투융자가 50%인 331,730천원,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이 50%인 331,640천원이었다.

68년도 양식어업 생산량은 113천톤으로서 전년대비 16.3%가 증가하였으며 어업 총생산량 852천톤에 대하여 13.1%의 비중을 점하였다. 62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별 양식 생산량의 증가추이를 보면 연평균 3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급증은 굴·백합·반지락 등 품목에 대한 정부의 중점 개발시책이 주요한데 힘 입은 것이다.

(도 8)

양식어업생산추이

(62 = 100)



(표 9)

## 양식어업생산실적

(단위 : %)

품종별 \ 연도별	62	63	64	65	66	67	68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39,248	85,324	72,924	73,705	91,085	97,165	113,053	29.7
패류계	33,138	65,101	54,151	61,059	71,650	70,680	70,071	18.5
굴	28,144	53,337	32,419	44,747	48,218	41,959	34,683	3.8
백합	314	1,112	1,202	1,227	1,339	3,584	4,580	66.4
반지락	2,801	5,288	7,816	7,240	11,425	11,313	9,549	40.1
고막	212	5,006	8,270	7,246	7,690	10,941	17,893	51.4
홍합	203	358	963	274	2,032	2,019	2,611	20.7
기타	1,464	-	3,481	325	924	864	755	-
해조류계	6,054	19,632	18,734	12,616	19,405	26,421	42,761	99.3
해태	4,247	16,783	11,081	9,838	8,478	26,025	36,443	126.3
천초	896	1,103	1,661	1,257	1,364	67	1,810	18.7
미역	804	1,624	5,023	1,257	3,692	306	4,344	73.3
기타	107	122	968	264	5,867	23	164	-
어류계	31	39	39	30	25	34	22	82
잉어	30	39	39	30	22	25	13	-9.5
뱀장어	-	-	-	-	-	-	6	-
송어	-	-	-	-	1	1	-	-
기타	-	-	-	-	1	8	3	-
기타수산물계	25	552	-	-	5	-	199	-
새우	-	-	-	-	-	-	17	-
해삼	-	-	-	-	5	-	-	-
기타	25	552	-	-	-	-	182	-

(가) 패류양식

68년도 패류양식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수산증식 총사업비 863,756천원의 48.2%인 416,136천원이며 그중 백합에 329,365천원 (79.1%), 굴에 65,172천원 (15.7%) 홍합에 16,000천원 (3.8%) 진주에 5,600천원 (1.4%)을 각각 투입하였으며 이의 재원은 경특, 청특, 재특, 농어민 소득 특별사업비 등에서 충당되었다.

68년도 패류양식 생산량은 총양식 생산량의 62%인 70천톤으로서 대체로 연간 생산량의 70% 선을 점하고 있으며 62년도 대비 생산량의 년평균 증가율은 18.5%였다.

(표 10)

패 류 생 산 증 가 율

(단위; MT)

년도 품종별	굴	백합	반지락	고막	홍합	기타	계	총양식고대비 (%)
62	28,144	314	2,801	212	203	1,464	33,138	84.4
63	53,337	1,112	5,288	5,006	358		65,101	76.2
64	32,419	1,202	7,816	8,270	963	3,481	54,151	74.2
65	44,747	1,227	7,240	7,246	274	325	61,059	82.8
66	48,218	1,339	11,425	7,690	2,052	926	71,650	78.7
67	41,959	3,584	11,313	10,941	2,019	864	70,680	72.7
68	34,683	4,580	9,549	17,893	2,611	755	70,071	62
년평균증 가율 (%)	3.8 %	66.4	40.1	51.4	20.1		18.5	76 %

품종별 생산량의 증가율은 홍합이 20.7%, 백합이 66.4%이고 다음은 고막 51.4%, 반지락 40.1%, 굴 3.8%의 순위이며 이의 증가 요인을 보면 홍합은 굴 수하식 시설과 병행하여 홍합수하식을 장려한데 기인하며 굴의 평균 증가율이 저조되고 있는 원인은 기존 굴 투석식 양식 시설의 단위당 생산성저위와 굴 투석 양식 사업의 지연에 기인되고 있다. 백합생산은 65년도 부터 대일 수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며 고막 반지락의 생산증가는 국내 수요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68년도 패류생산량을 62년도 기준으로 대비하면 굴은 34,683톤으로 0.2배, 백합은 4,580톤으로 3.5배, 반지락은 9,549톤으로 2.5배, 고막은 17,893톤으로 80배, 홍합은 2,000톤으로 10배가 각각 증가하였다.

시기별 생산상황을 보면 수출 수요기인 1/4분기와 4/4분기가 63.4%인 45천톤이며 2/4분기와 3/4분기가 36.3%인 26천톤이었다.

(표 11) 분 기 별 패 류 생 산 량 (단위: 10/T)

품 종 별	분 기 별				계
	1/4	2/4	3/4	4/4	
굴	10,975	7,470	942	15,296	34,683
백 합	273	1,514	792	2,001	4,580
반 지 락	1,103	3,245	3,174	2,027	9,549
고 막	1,236	3,340	3,971	9,346	17,893
홍 합	127	203	411	1,870	2,611
기 타	60	478	78	139	755
계	13,774	16,250	9,368	30,679	70,071
%	19.6	23.2	13.4	43.8	100

도별 생산상황을 보면 전남이 굴·해태 주산지로서 77.3%인 55천  
 톤으로 수위이며 다음은 충남이 굴·반지락 생산으로 9.4%인 7천톤  
 경남이 굴·홍합생산으로 8.9%인 6천톤의 순위이다.

(표 12)

도 별 생 산 량

(단위 : M/T)

도별 품종별	경 기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남	기 타	계
굴	1,355	1,797	62	29,172	2,297		34,683
백 합	294	842	753	2,176	515		4,580
반 지 락	54	2,578	140	6,090	687		9,549
고 막		1,366		16,474	53		17,893
홍 합		3			2,608		2,611
기 타	176	13		242	67	257	755
계	1,879	6,599	955	54,154	6,227	257	70,071
(%)	2.7	9.4	1.4	77.3	8.9	0.3	100

대 해조류양식

68년도 해조류 생산량은 증양식 생산량 대비 37.8%인 43  
 천톤으로서 년평균 99.3%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가는 해태생산량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다.

품종별 해조류 생산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해태 26.3%, 천초 18.7  
 %, 미역 73.3%이며 이와같은 증가는 67, 68양년도에 걸친 해태의 풍  
 작에 기인되고 있으며 톤당 가격은 해태 66.3%, 천초 18.5%, 미역  
 235.3%의 상승이며 이러한 상승은 국내 및 수출수요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다.



(표 13)

## 해 조 류 생 산 추 이

(단위 : M/T)

년도별 품종별	해 태	천 초	미 역	기 타	계	총양식고 대비 (%)
62	4,247	896	804	107	6,054	15.6
63	16,783	1,103	1,624	122	19,632	23
64	11,081	1,661	5,023	988	18,734	25.7
65	9,838	1,257	1,257	264	12,616	17.1
66	8,478	1,354	3,692	5,867	19,405	21.3
67	26,025	67	306	23	26,421	27.3
68	36,443	1,810	4,344	164	42,761	37.8
년평균증가율	126.3	18.7	73.3		99.3	

※ 해조류 생산량은 원료생산량임.

## (4) 근해어업

## (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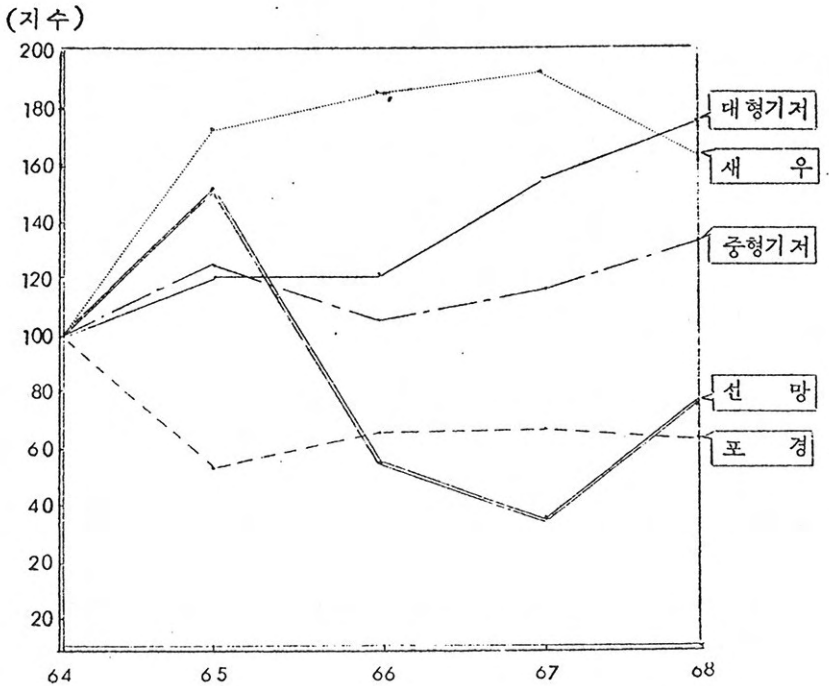
근해어업의 년도중 생산량은 135,794 M/T으로서 전년대비 11.5%의 증가를 실현하였으며 어업총생산량 852,291M/T대비 15.9%로 연안어업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년도별 생산추이를 보면 63년도의 92,635 M/T에 비하여 46.6%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1.5%의 증가를 보였으나 어업총생산량 증가율 13.6%에 대하여는 1.1%를 하회하였다.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30톤 이상 100톤 내외로 법정허가 정한수가 있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새우트롤 어업과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톤수증가를 하지 않기로 한 대형포경어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형기선저인 망 어업과 기선선망어업이 매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도 9) 근 해 어 업 생 산 추 이  
(64 = 100)



(나)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근해어업 생산량의 62%를 점하는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중추적 어업일뿐 아니라 65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 이후 중형기선저인망어업과 더불어 공동규제 대상어업 중 대표적인 어업으로서 어획량은 매년 순조롭게 증가되고 있다.

년중 생산량은 83,762M/T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9%의 증산을 실현하였으며 이와같은 증가는 어선의 대형화와 어로장비의 개량 등에 의한 단위 생산성의 증가에 기인된 것이다.

#### ㉔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근해어업 생산량의 26.8%를 점하고 있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다음가는 어업이다.

년도중 생산량은 36,336 M/T으로서 전년대비 7%의 증가를 실현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 6년간(63~68)의 연간 평균증가율 5.9%와 대비하면 1.1%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같이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어업생산수단의 현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다.

#### ㉕ 새우트롤어업

62년에 허가어업으로 제도화된 새우트롤어업은 새로운 심해어장 개척 어선의 대형화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년도중의 생산량은 3,078M/T으로 전년대비 14%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감소율은 새우자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어업경영자의 의욕저조에 기인한다 하겠다.

#### ㉖ 기선선망어업

65년도에 25,700 M/T이었던 어업생산량이 동년이후 급강하하여 66년에는 8,502 M/T, 67년에는 65년 생산량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6,206 M/T으로 감소된 바 있었으나 68년도에는 11,574 M/T으로 전년 대비 87%의 현저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증가는 누년의 어획부진 타개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동지나해의 신어장개발과 년중 조업 가능으로 인한 것으로 금후 기선선망어업

어획 증산이 기대된다.

㉞) 대형포경어업

년도 중 생산량은 1,044M/T으로 전년도 1,140M/T에 비하여 9%가 감퇴 되었다.

이와같은 감퇴는 생산수단이 노후하여 가동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있다.

(표 14) 근 해 어 업 생 산 실 적

(단위 : M/T)

어업별 \ 년도별	64	65	66	67	68	68/67 (%)
대형기저	49,109	58,692	58,715	76,761	83,762	9
중형기저	25,510	35,095	30,863	34,097	36,336	7
새우트롤	1,845	3,280	3,441	3,569	3,078	- 14
기선선망	16,609	25,700	8,502	6,206	11,574	87
대형포경	2,802	860	1,128	1,140	1,044	- 9
계	95,875 99,016	123,627	102,649	121,773	135,794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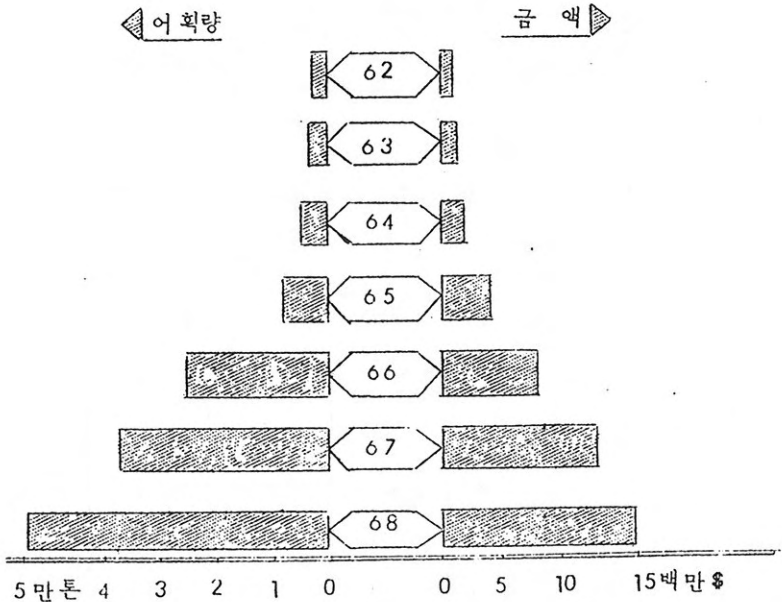
(5) 원양어업

㉞) 개 황

년도중 해외원양어업의 출어척수는 210척 (60,281명)에 달하여 총어획량 50,074톤을 생산함으로써 외화 15,559천불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67년에 비교하여 선평증대 30척, 어업생산 31.8%, 수출실적 23.7%라는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62년의 실적과 비하여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도 10)

원양어업생산추이



67년까지만 해도 태평양 대서양에 집중조업하여 오던 어선들은 년도 중에 인도양으로의 대거 진출이 이룩됨으로서 전체 어업생산량에 대한 해역별 구성비는 태평양 50.5%, 대서양 26.8%, 인도양 23.2%로 나타났다. 신어장으로는 마테지아 근해 및 인도네시아 근해의 진출을 보았다.

(표 15)

원양어업생산실적

년 도	출어척수	어획량(MT)	지 수	금액 (천\$)	지 수
62	5	657	100	209	100
63	10	2,558	390	754	360
64	20	2,605	397	783	373
65	48	8,563	1,295	2,545	1,216
66	138	26,857	3,883	9,183	4,371
67	180	40,484	5,792	12,582	5,991
68	210	50,074	7,633	15,559	7,444

한편 조업선의 기지이용 상황은 태평양 해역 3개기지, 대서양 6개  
 기지 및 인도양 3개기지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근해 각 1개  
 기지를 이용케 됨으로써 총 14개 기지에 달하였으며 년도중 신규계척기  
 지는 인도양의 페낭,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싱가포르 및 대서양의 사오비  
 센트 등 4개 항구에 달함으로써 어장확대 및 조업범위를 계속 확장하  
 기에 이르렀다.

(표 16) 해역 별 어획량 추이 (단위: M/T)

년 도	태 평 양		대 서 양		인 도 양		합 계	
	척수	어획량	척수	어획량	척수	어획량	척수	어획량
62	5	656					5	656
63	10	2,559					10	2,559
64	19	2,437	1	167			20	2,604
65	39	7,973	26	520			65	8,493
66	73	17,599	62	7,116	3	762	138	25,477
67	109	21,577	56	12,843	15	3,576	180	37,996
68	126	25,045	53	13,434	29	11,596	208	50,074

68년도 어선 210척에 대한 톤급별 구성상황은 100~200톤급이  
 57.1%, 200~300톤급이 18.1%, 300~400톤급이 9.1%를 차지함으  
 로써 원양어선 전체 척수의 85.3%의 대다수 어선세력은 100~400톤  
 급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67년도의 제층별 구성비와 비교할때 100~200톤급은 4%로  
 감소된 반면 200~300톤급은 5.2%, 300~400톤급은 5.1%로 각  
 각 증가되었으며 또한 어선척당 평균 톤수에 있어 67년의 229톤이  
 68년에는 287톤으로 증가된 현상은 원양어선 건조의 대형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년도중 종어획량에 대한 어선 계층별 구성비를 보면 100~200톤급이 45.1%, 200~300톤급이 22.6%, 300~400톤급이 17.3%이며 65년에 전체 어획고의 94%를 차지하였던 100~200톤급 어선의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점검된 반면 대형어선의 어획고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은 생산수단의 물적요소인 어선의 규모가 200~400톤급의 기동성 있는 어선으로 대형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특히 68년의 300~400톤급 어선의 전체어획고(8,676톤)는 67년 동계층 어획고의 5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표 17) 원양 어선 보유 현황

년도 구분	62		63		64		65		66		67		68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00 톤이하										6	597	12	1,138	
101~200	5	555	10	1,326	19	2,578	56	8,305	110	12,071	251	9,514	420	18,830
201~300							71	549	174	4,046	256	6,084	38	9,214
301~400					1	377	1	377	2	754	7	2,444	19	6,621
401~1,000							1	621	7	434	19	9,651	17	10,800
1,000~3,000									2	946	2	946	3	4,278
3,000 이상													1	9,400
합 계	5	555	10	1,326	20	2,955	69	10,852	132	12,998	280	41,236	210	60,281

한편 원양어업 종사자수는 5,056명에 달하여 전년비 18.8%인 1,280명의 증가를 가져왔는 바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30세 선원이 36%, 31~35세 선원이 31.3%, 36~40세 선원이 14.2%이었고, 학력별로는 중.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45.3%, 국민학교 졸업자가 44.5%를 차지하여 이 양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표 18)

## 연령별 학력별 선원수

학 력	연 령	연령					계	비 율
		20~25	26~30	31~35	36~40	40이상		
대	졸	70	157	60	18	4	309	6.1
고	졸	239	407	241	112	36	1,035	20.4
중	졸	168	463	466	121	42	1,260	24.9
국	졸	88	743	777	424	218	2,250	44.5
기	타	5	54	41	46	56	202	3.9
	계	570	1,824	1,585	721	356	5,056	100
비	율	11.2	36.0	31.3	14.2	7.0	100	%

## 나) 참치연승어업

68년도 참치어선수는 179척(41,623톤)으로 어획고가 43,59 M/T에 달하여 외화 14,976천불을 획득함으로써 전체 원양어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96.3%로서 원양어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거니와 62~68년간 이 어업의 성장추세는 어획고에 있어 연평균 133.2%의 증가율을 실현하였고 선폭 95.8%의 성장과 수출금액 135.2%의 증가율을 보여 급진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참치류 수출은 단일품목으로서 전국 수출순위 제7위를 차지하였다.

(표 19)

## 참치어업어선수및어획고추이

구 분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척 수(척)		5	10	20	65	130	152	179
어 선톤수(噸)		555	1,326	2,955	10,852	25,388	33,839	41,623
어 획량(M/T)		656	2,559	2,604	8,493	23,956	36,206	43,519
금 액(천불)		209	755	783	2,554	9,181	12,582	14,976



해역별 생산동향은 태평양 해역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이 대서양 인도양의 순서로서 전체 어획량에 대한 구성비는 각 순위별 44.3%, 20.9%, 26.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인도양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어획의 급증현상을 보여주었다.

(표 20) 68년도 참치연승어업기지별생산실적

해역	기 지	척 수	어획량(MT)	금 액(US\$)
태 평 양	SAMOA	68	15,093	5,164,324
	SANTO	8	1,528	443,751
	FIJI	25	2,678	889,428
	계	101	19,299	6,497,503
대 서 양	Free-Town	24	5,268	1,948,721
	Temá	8	3,906	1,419,985
	Monrovia	2	150	28,695
	Las Palmas	9	2,837	994,256
	Saovicent	5	463	177,466
	Abidjan	1	—	—
	계	49	12,624	4,569,123
인 도 양	Penang	6	614	162,286
	Durban	14	8,081	2,689,712
	Tamatave	5	2,027	741,204
	전 해 역	4	874	315,806
	계	29	11,596	3,909,008
계		179	43,519	14,975,634

해외기지 이용면에 있어서는 대서양의 사오버센트 및 인도양의 페낭 기지를 개척함으로써 총기지수 12개항에 달하였다.

어선의 규모는 100~540톤으로써 각 계층별 분포상황은 100~200톤 급이 전체의 41.4%를 차지하였으며 400톤급 이상이 22.3%, 200~300

톤급이 21%, 300~400톤급이 15.3%를 각각 차지하였는 바 이러한 현상은 66년의 규모별 구성비에서 볼때 100~200톤급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200~400톤급 어선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참치어선의 척당 규모는 평균 233알에 달하여 52년 규모(111알)의 2배에 달하였으며 66년의 211알에 비하여는 약 1할정도 증대되었다.

이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수는 총 4,309명으로 전체 원양어선 선원수의 85.2%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40세의 층이 주축을 형성하여 82%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별로는 초·중·고교 졸업자가 90%로 나타났다.

(표 21)

참 치 연 승 선 원 수

학 령	연 령	20~25	26~30	31~35	36~40	41이상	합 계	비 율 (%)
대 출		64	137	46	11	1	259	6.0
고 출		218	343	197	89	25	872	20.2
중 출		143	388	412	93	28	1,064	24.7
국 출		51	627	681	380	194	1,938	45.0
기 타		2	45	33	42	54	176	4.1
합 계		478	1,540	1,374	615	302	4,309	100
비 율 (%)		11.1	35.7	31.9	14.3	7.0	100	

㉠ 트롤어업

우리나라의 원양트롤어업은 66년 한국수산물개발공사 어선의 조업에서 시작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연도중 출어척수 31척(18,553알)은 북태평양, 대서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근해까지 진출

하여 총어획고 6,555톤을 올렸으며 이는 66년 어획고의 3.3배, 67년의 2.6배라는 급진적인 성장이다.

이 어업의 종사자수는 747명으로 20~30세가 284명(38%) 31~35세가 211명(28.2%) 36~40세 106명(14.2%)로서 참치어업의 선원 연령구성과 대차없다.

(표 22) 68년도 트롤어업기지별생산실적

해역	기지	척수	어획량 (M/T)	금액 (US\$)
태평양	Indonesia	12	2,544	84,282
	Bering Sea	9	2,171	322,412
	Singapore	6	731	21,640
	계	27	5,746	438,334
대서양	Las Palmas	2	636	132,809
	Monrovia	2	173	22,685
	계	4	809	155,494
계		31	6,555	583,828

### 6. 세계어업생산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67년도의 세계어업 생산고는 60.5백만톤으로서 66년도 생산량 57.3백만톤에 대하여 5.6%가 증가되었으며 이와 같은 증가는 57년 이래의 연평균 증가율 9%와 대비하면 연도중의 생산고는 현저히 둔화된 셈이다.

이와같은 증가율에 대한 주요 어업국(100만톤이상 생산국)의 생산 동향을 보면 세계 어획고중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페루, 일본, 소련, 노웨이 등은 전년비 15%, 11%, 8%, 12%의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스페인, 인도는 6%와 2%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덴마크는 전년비 26

%의 급증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하여 칠리는 전년비 24%의 격감을 가져왔으며 그의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전년비 6%, 4%, 5%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지역별 동향을 보면 북미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세아 지역의 각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23) 세계 주요 어업국 생산 추세 (단위; 1,000M/T)

국/년/도/월	62	63	64	65	65	67	67/66
합 계	47,000.0	48,300.0	52,700.0	53,500.0	57,300.0	60,500.0	5.5
페 루	6,957.5	6,899.0	9,116.5	7,461.9	8,789.0	10,110.2	15.0
일 본	6,866.9	6,698.5	6,350.7	6,907.7	7,102.2	7,814.0	10.0
소 련	3,617.0	3,977.0	4,476.0	5,100.0	5,349.0	5,777.0	8.0
노르웨이	1,331.7	1,387.9	1,609.1	2,307.3	2,865.0	3,214.3	12.1
미 국	2,972.9	2,777.0	2,647.1	2,724.3	2,542.9	2,384.1	△ 6.3
스페인	1,107.5	1,125.3	1,203.5	1,341.5	1,363.0	1,430.6	4.9
인 도	973.7	1,046.3	1,320.0	1,331.3	1,367.6	1,400.4	2.3
캐나다	1,123.5	1,197.6	1,211.0	1,262.3	1,346.0	1,289.8	△ 4.2
덴마크	785.1	847.9	871.1	840.8	850.8	1,170.4	25.8
칠 리	688.6	761.9	1,160.9	708.5	1,383.5	1,052.9	△ 23.9
영 국	944.3	960.9	974.3	1,047.3	1,063.4	1,026.1	△ 4.0
기 타	19,681.3	27,620.7	21,760.8	22,467.1	23,272.5	23,930.2	2.8

## 나. 제조업생산

### (1) 개황

수산제조업은 수산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유지, 보존 또는

증대시키는 산업으로서 어업생산의 증가에 따라 식료품의 면에서만 아니라 일시 다뤄되는 어류의 어가유지와 어민소득증대의 면에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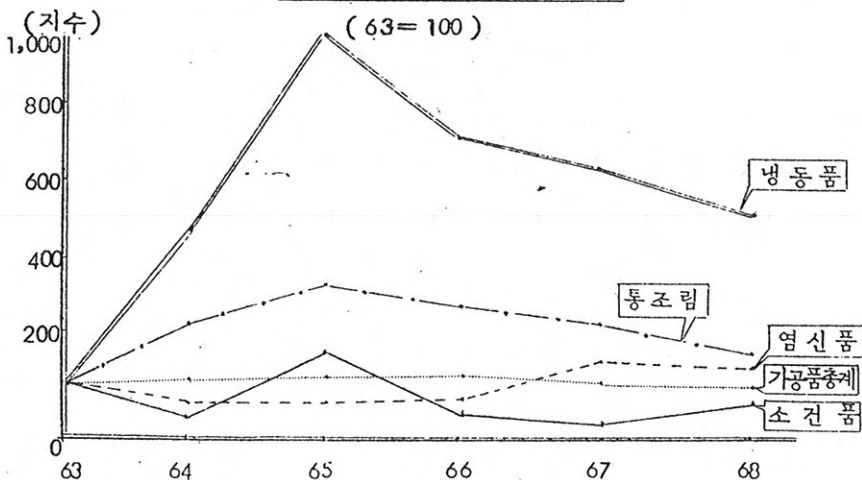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생산량의 증가 및 수출의 증대를 유통면에서 뒷받침하고자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왔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초년도인 62년 이후의 수산물 제조업의 생산동향을 보면 총제조업 생산에 있어서는 65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나 66년 이후부터 매년 담보상을 보이고 있으며 처리가공 형태별에 있어서는 저차가공품의 생산이 62년도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반면 고차 가공품의 생산이 증가되었다.

즉 냉동품은 62년도의 1,63M/T에서 18,487 M/T으로 113배나 증가하였고 통조림은 62년도의 1,236M/T에서 3,387M/T으로 약 3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도 11)

수산물 가공품 생산 추이



이와 같이 동기간 중 고차가공품이 증가된 것은 동가공품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가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국내 수요도 저차가공식품으로 부터 고차가공식품으로 수요구조가 변천된 데 기인된 것이다.

(표 24)

제 조 업 생 산 실 적

(단위 ; M/T)

년 도 별 품 종 별	62	63	64	65	66	67	68
조 건 품	18,872	23,576	17,619	14,012	14,187	8,967	19,176
염 건 품	1,380	919	919	1,823	1,806	2,274	2,906
염 신 품	11,112	8,539	8,308	8,905	7,852	15,669	11,660
염 장 품	5,692	5,041	2,803	1,711	5,080	4,547	3,774
저 건 품	7,594	4,735	2,240	3,718	9,944	10,217	4,475
냉 동 품	163	3,593	18,935	38,751	25,353	22,136	18,489
통 조 림	1,236	2,207	4,741	7,438	6,336	4,956	3,687
해 조 품	10,595	10,123	8,415	11,623	9,730	13,155	11,491
어 유 비	845	1,179	1,309	2,007	1,152	922	628
기 타	47	179	50	1,962	977	1,915	983
계	57,532	60,088	65,339	91,950	82,417	84,758	77,267

(2) 품종별생산

가) 냉동품

수산물 가공품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냉동품은 국내수요의 증가, 수출의 증대 및 시설의 확충에 따라 그 생산은 62년도에 163M/T에 불과하였으나 68년에는 18,487M/T의 실적으로 무려 11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품종도 새우와 수종의 어류로 부터 오징어, 문어 각종 패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65년도의 38,751M/T을 정점으로 66년도 25,353M/T, 67년도 22,136M/T, 68년도 18,487M/T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냉동대상어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회성 어종인 조기, 오징어, 명태, 광치, 정갱이 등이 국내에서 선어상태로서의 소비가 증가되는 반면 냉동품으로서의 가공이 활발치 못함에 기인된다.

(표 25)

## 중요 병 동 품 생산 량

(단위; M/T)

연도별		65	66	67	68
어종별	고등어	407	107	23	794
	전갱이	6,534	303	133	-
오징어	치어	1,383	2,166	842	1,408
	정어	567	357	199	299
새문어	우어	2,364	1,440	2,019	1,579
	계	610	133	413	79
덜조	태기	613	394	170	-
	치어	3,286	776	645	-
삼병	어	102	67	420	-
	계	102	13	16	64
방기	어	22,885	19,427	17,234	14,264
	계	38,751	25,353	22,136	18,487

## (나) 통 조 립

수산물 통조림의 생산량은 62년 군납이 중단된 후 침체상태에 빠졌으나 그 후 국민식생활의 개선에 따른 국내 소비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65년도에는 7,438M/T의 생산실적을 올렸으나 동년 이후 계속 절감되어 66년도 6,336M/T, 67년도 4,956M/T, 68년도 3,687M/T으로 감퇴되었다.

이는 통조림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치의 가격은 보합상태인데 반하여 국내의 원료가격의 앙등에 따른 생산비의 고가로 자연히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데 기인된다.

(표 26)

## 통 조 립 생 산 실 적

(단위; M/T)

연도별		62	63	64	65	66	67	68
콩	치	938	773	2,133	5,439	4,052	3,344	2,573
	정어	138	345	415	490	73	329	560
오징어	계	65	285	68	191	62	32	9
	고등어	-	106	45	119	-	23	120
전갱이	계	3	23	-	8	-	-	8
	소라	72	299	39	71	154	87	154
새문어	우어	-	84	-	-	131	-	-
	단복	-	-	-	-	56	-	-
운전어	단복	2	5	-	-	3	-	-
	계	-	-	-	12	-	-	-
고기	래	-	7	-	11	-	-	-
	타	18	280	2,041	1,797	1,805	1,141	265
계	계	1,236	2,207	4,741	7,438	6,336	4,956	3,689

### ㉠ 한 천

한천 가공업 국내원조 공급량이 시설능력에 비하여 3분의 1 밖에 되지 않아 62년이래 거의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68년도의 한천 생산량은 384%으로 전년에 비하여 256%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한천의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외국산 원조의 수입감소에 기인된 것이다.

(표 27) 한천생산실적

연도별 구분	62	63	64	65	66	67	68
생 산 량	530	419	576	545	528	640	384
공 장 수	43	36	40	40	40	40	38

### ㉡ 어간유

어간유의 공장수는 점차 증가하여 왔으나 그 생산량은 주원료인 오징어·명태·멸치·꽂치·상어·복어등의 자원이 거의 한정되어 있어 침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5년의 2,007%의 실적에 비하여 매년 감소되어 68년도에는 628%으로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이는 주 원료인 오징어·명태의 선어로서의 소비가 증가된데 기인된다.

(표 28) 어간유생산실적

(단 위 ; %)

구분 연도별	62	63	64	65	66	67	68
생 산 량	845	1,179	1,309	2,007	1,152	922	628
공 장 수	68	70	76	94	101	100	83



(3) 어업총생산고 대 제조고

연도중의 우리나라 어획물의 이용배분을 보면 생산형태로 소비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구미나 일본보다 생산형태소비율이 월등히 높다.

세계전체의 이용배분인 생선 35% ; 가공 65%와 비하여 이와같이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비지가 생산지에 근접하고 있어 선어형태의 소비를 촉진시킬 뿐아니라 수산물 수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않는배 기인된다.

최근에는 냉동·통조림등 고차가공품이 증가하는 반면 건제품등 저차가공품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저차 간이가공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 표 29 >

어업총생산고대제조고

(단위 ; % 천원 )

구 분 연도분	어업총생산고		제 조 고		B/A (%)	비고
	생 산 (A)	금 액	원 료 (B)	제 품		
62	470,187	6,122,659	167,465	57,532	35.6	
63	532,153	8,060,101	191,759	60,088	36.2	
64	597,325	13,543,207	208,705	65,339	35.0	
65	636,512	19,729,890	230,293	91,950	36.7	
66	702,300	24,335,441	208,402	82,417	30.9	
67	750,349	31,205,377	246,296	84,758	32.8	
68	852,291	44,286,933	246,938	77,267	30.0	

(4) 처리가공시설능력 및 가동상황

수산물처리가공에 있어서, 냉동품·통조림·한천·어간유 등 고차가공품은 일정한 처리가공시설이 필요하나 그 외의 건제품·염신장품·

제조제품등 저차가공품은 일정한 시설없이 영세어민이 가내 수공업 형태로 단순한 수단을 가하여 가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차가공품에 있어서 냉동품은 대상원료 특히 다획성 어종인 조기·오징어·명태·꽂치·전갱이 등의 선어 상태로서의 소비증가로 수산물 냉동의 가동률은 저조하였으나 농축산물도 병행하여 냉동한 것을 고려한다면 전반적인 가동률은 결코 저조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산물 통조림은 주 원료 어종인 꽂치의 어획부진, 어가의 양등, 국제 통조림 가격의 보합, 공판의 고가 및 자금부족 등으로 그 생산실적은 부진하나 복숭아·양송이·우유 등 농축산물 통조림의 생산이 활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가동률은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추단된다.

한천은 국제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외국산 원조의 수입감소로 어간유는 대개가 가내 공업이므로 자금의 부족, 원료어의 어획 부진으로 각각 처리능력에 비하여 저조한 가동률을 시현하고 있다.

### 3. 수산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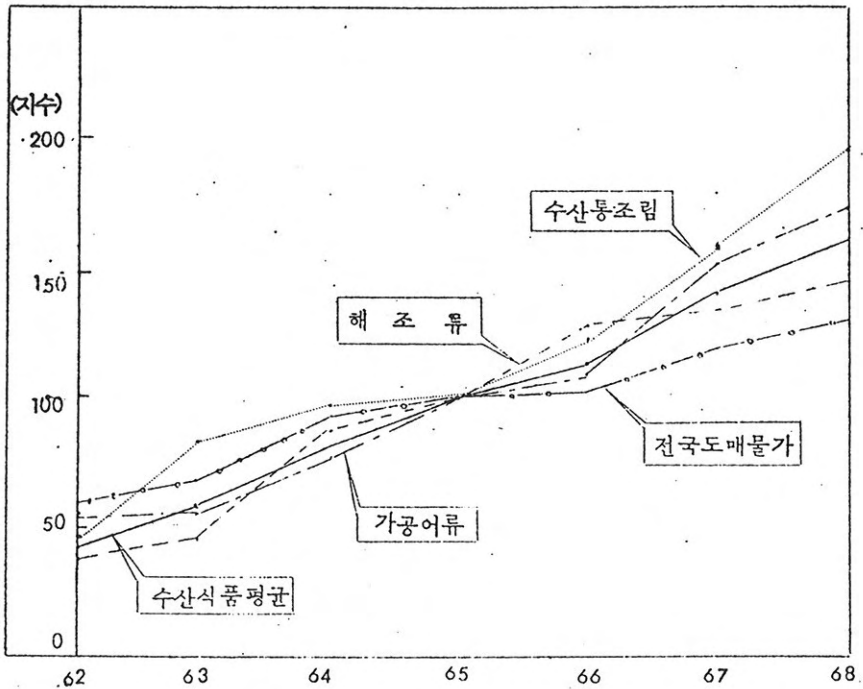
#### 가. 개 황

국민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 수요의 증대와 수출진흥에 따른 해외 수요의 증대에 자극되어 수산물의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미탈피로 수산물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그 진폭이 현저하다.

62년부터 68년까지의 전국 도매물가 지수는 연평균 139%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음에 대하여 수산물 가격지수는 21.6%의 변동률을 나타냄으로써 전국 도매물가지수에 비하여 7.7%를 상회하고 있다.

(표 12)

수산물 가격 동향  
( 65 = 100 )



기간중 연도별 변동상을 보면 '62년 17.2%, '63년 31.8%, '64년 29.7%, '65년 19.3%, '66년 18.7%, '67년 24.9%, '68년에 10%의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65년 이후부터는 동년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 기간중의 변동폭은 21.8%의 극심한 기복을 이루고 있는 바 이러한 가격변동의 극심한 현상은 수산물이 가격면에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표 30)

## 수산물 가격 변동률

구 분 \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연평균 변동률
전국도매물가지수 (총지수)	56.0	67.5	90.9	100.0	108.8	115.8	125.2	13.9
변 동 률 (%)	9.4	20.5	34.7	10.0	8.8	6.4	8.1	
수산식품평균지수	49.0	64.6	83.8	100.0	118.7	148.3	163.1	21.6
변 동 률 (%)	17.2	31.8	29.7	19.3	18.7	24.9	9.9	
가 공 어 류 지 수	50.6	66.3	78.1	100.0	113.5	160.5	173.9	23.2
변 동 률 (%)	22.5	31.0	17.7	28.0	13.5	41.4	8.3	
해 조 류 지 수	43.4	45.6	87.1	100.0	121.8	135.4	147.8	23.5
변 동 률 (%)	11.8	5.1	91.0	14.8	21.8	11.2	9.1	
수 산 통 조 림 지 수	49.5	80.0	100.0	100.0	121.5	164.8	194.7	23.9
변 동 률 (%)	5.9	61.6	25.0	0	21.5	35.6	18.2	

자료 : 한국은행조사월보

나. 종류별 가격변동 추세

(1) 어 류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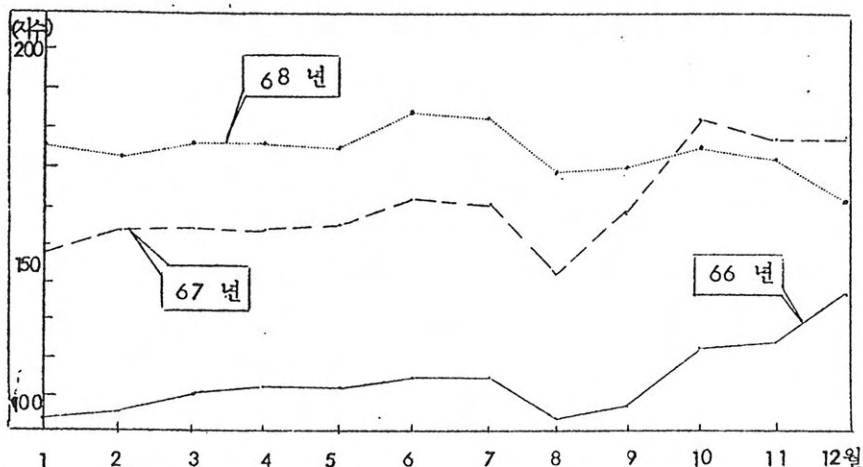
어류(가공) 가격은 62년부터 68년까지 7년간에 걸쳐 약 3배로 등귀하였으며 연평균 23.2%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으로써 전국 도매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 12.6%보다 10.6%를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62년 22.5%, 63년 31%, 64년 17.7%, 65년 28%, 66년 13.5%, 67년 41.4%, 68년에 23.2%로서 기간 중 27.9%라는 극심한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변동의 기복이 심한 것은 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어류에 대한 유통보장 처리가공시설의 미비와 어가 안정에 대한 보장책이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도 13)

어류 (가공) 도매가격 월별 추이  
( 65 = 100 )



연도\월별	평균	연도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66	114	102	106	110	111	112	115	115	103	108	122	123	136
67	161	147	154	156	154	156	163	161	142	158	181	177	178
68	174	176	173	177	177	176	183	181	169	170	175	173	160

자료 : 한국은행조사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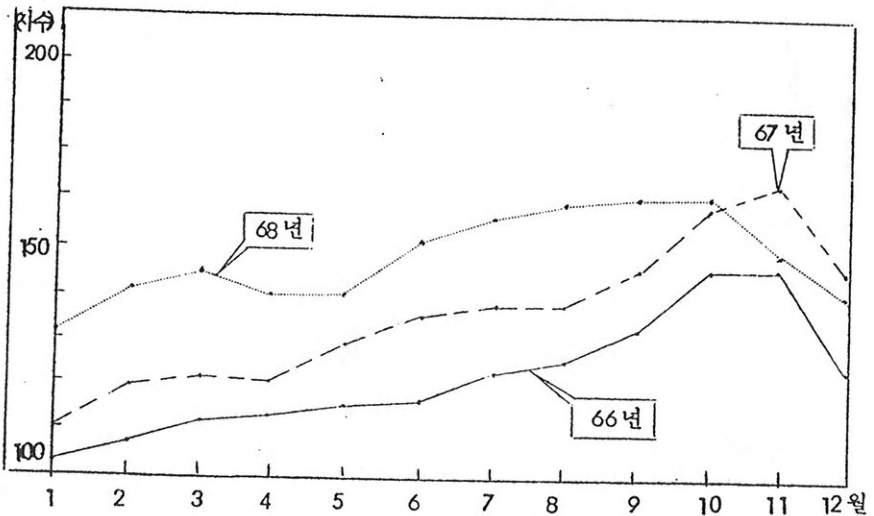
(2) 해조류

해조류의 가격은 62년부터 68년까지 7년간에 걸쳐 약 3배로 등귀하였다. 기간중 연평균 23.6%의 상승률을 나타냄으로써 전국 도매물가지수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11%를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62년 11.8%, 63년 51.5%, 64년 91%, 65년 14.8%, 66년 21.8%, 67년 11.2%, 68년에 9.2%로서 기간 중의 변동폭은 무려 81.9%라는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의 격심한 변동은 해조류 생산량의 대종을 이루는 해태가 생산과 수출사정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이 일본에 제한되고 있어 일본의 생산량 여하에 따라서도 결정적

(도 14) 해조류도매가격월별추이  
( 65 = 100 )



연도별 월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6	122	104	107	111	112	112	117	122	126	132	147	147	124
67	135	110	119	121	120	129	136	138	138	146	159	163	146
68	148	131	141	145	140	140	152	157	159	160	160	149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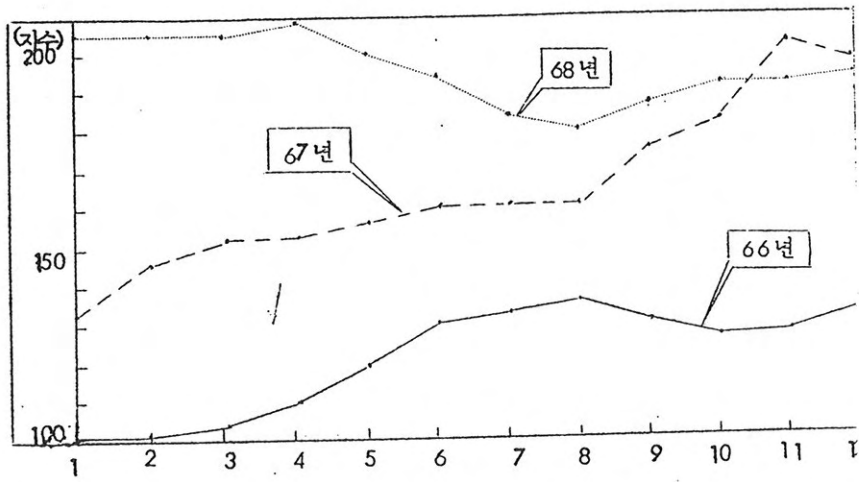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조사원보

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품종의 가격 변동과 직접 대비함은 무리가 없지 않다.

64년의 91%의 등귀율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대체로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다.

월별 추세를 보면 대체로 10월부터 12월에 가격 등귀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그 기간중 해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도 15) 수산물조림포대가격월별추이  
( 65 = 100 )



연도\월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6	122	100	100	104	110	120	131	133	137	131	127	129	134
67	165	134	146	152	152	157	160	160	160	175	182	202	198
68	195	206	206	206	208	190	194	184	180	187	191	191	194

자료 : 한국은행조사월보

### (3) 수산 통조림

수산 통조림의 가격은 62년부터 68년까지 7년간에 걸쳐 계속 등귀하였으며 연평균 24%의 상승세를 나타냄으로써 전국 도매물가지수 연평균 상승률 12.6%보다 11.4%를 상회하고 있다.

기간중 변동추세를 보면 63년의 61.6%를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10% 내지 30% 선상에 머무르고 있다. 동 기간중의 수산식품 평균지수 21.7%와 대비하면 2.3%를 상회하고 있음에 불과하나 전국 도매물가지수에 비하면 11.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것은 수산물 통조림에 대한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어획물의 고차가공화를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 Ⅲ. 수산물 수출

### 1. 개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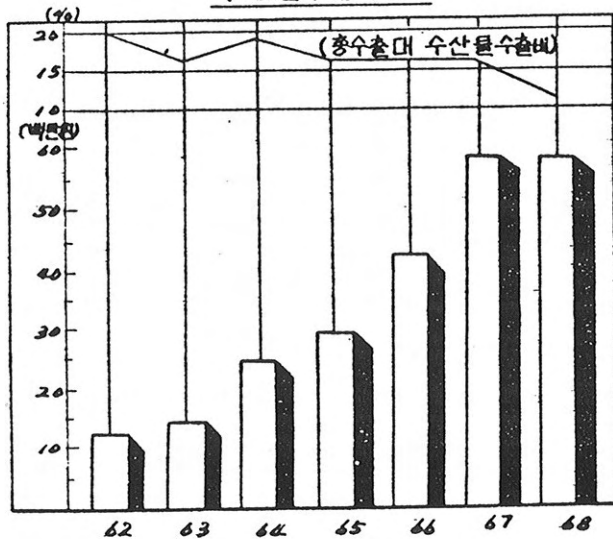
연도중 수산물 수출은 57,323\$로서 전년 수준보다 약간 하회하였으며 총수출액 500,408천\$에 대하여는 1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수산물 수출이 60년 이후 계속 신장일로에 있었으나 68년의 수출실적이 67년의 실적보다 약간 저조한 것은 연도중에 있어서의 수출어종의 어획부진이 주된 원인이 있었으며 수산물 수출지원제도의 미흡에도 원인이 있었다.

또한 수출신장이 공산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산상품의 특수성과 그 상품의 산업적 배경의 취약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2차산업의 발달과 함께 그 신장을 동등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이 있다. 수산물 수출 구성비에 있어서도 60년 이후 총수출액의 15~17%를 차지하였으나 68년도에는 11.4%로 저하되었다. 이와 같이 수출구성비의 비중의 감소는 총 수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1차산품의 증



(도 16)

## 수산물수출 추이



대개 2차산품의 증가에 따를 수 없는 산업적인 배경에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31)

## 총수출과 수산물수출대비

구분 \ 연도	62	63	64	65	66	67	68
총수출고 (천불)	56,702	84,368	120,851	180,450	255,751	358,592	500,408
수산물수출고 (천불)	12,341	13,691	23,666	28,492	42,036	57,499	57,323
구성비 (%)	21.8	16.2	19.6	15.8	16.4	16.0	11.4

## 2. 대상국별 수출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의 대상국을 보면 일본·미국을 비롯하여 30여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수출 수산물의 60~65%가 일본지역에 수출되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일무역의존도는 큰 것이며 다음의 대상국이 미국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어획물인 참치는 거의 전부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산물 수출의 대상국이 30여개국가가 되나 일본과 미국에 수출된 것이 46,052천\$으로써 수출액의 80.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는 33,607천\$으로써 수출액의 58.6%를 차지함으로써 수산물 수출의 대일 및 대미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월남에 대한 2,402천\$의 수출은 주로 군남 수산물 통조림이며 자유중국에 대한 1,029천\$의 수출은 주로 전오징어이고 기타 동남아 각국에 수출되는 것은 오징어·전어개류·한천·통조림 등이다.

서구지역에는 냉동 수산물 및 통조림이 수출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는 어망이 주된 수출품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이와 같이 대상국이 제한되고 있음은 수산물 상품의 특수성과 그 시장성에 요인이 있는 것이다.

(표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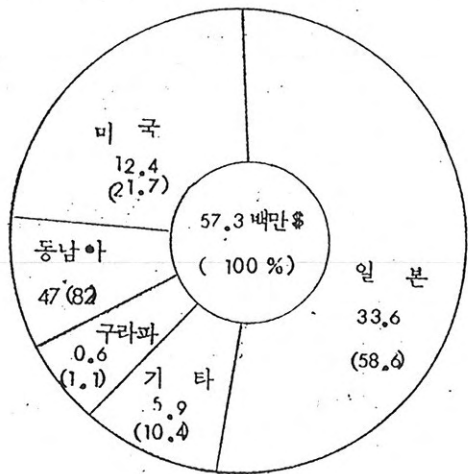
대상국별 수산물수출실적주어

(단위: 천\$)

연도 국 별	62	63	64	65	66	67	68
일 본	7,202	8,092	16,007	18,783	25,245	35,396	33,607
향 (홍콩) 미 국	1,826	2,275	2,726	576	754	567	299
미 국	1,646	1,775	1,318	3,087	9,205	13,112	12,445
싱 가 폴	333	121	442	589	735	778	500

연도 국 별	62	63	64	65	66	67	68
자유중국	155	298	848	563	735	825	1,029
태 국	354	276	172	262	593	717	338
영 국	190	91	82	240	508	917	14
마 레이	215	73	182	132	—	—	18
월 남	10	57	29	44	200	416	2,402
서 전	46	68	46	72	65	149	106
카 나 다	36	66	75	146	305	227	110
서 독	73	—	14	222	219	13	78
유 구	131	395	55	410	202	150	134
이 태 리	6	—	46	84	215	321	385
기 타	120	104	1,624	3,282	3,055	3,911	5,858
계	12,343	13,691	23,666	28,492	42,036	57,499	57,323

( 68 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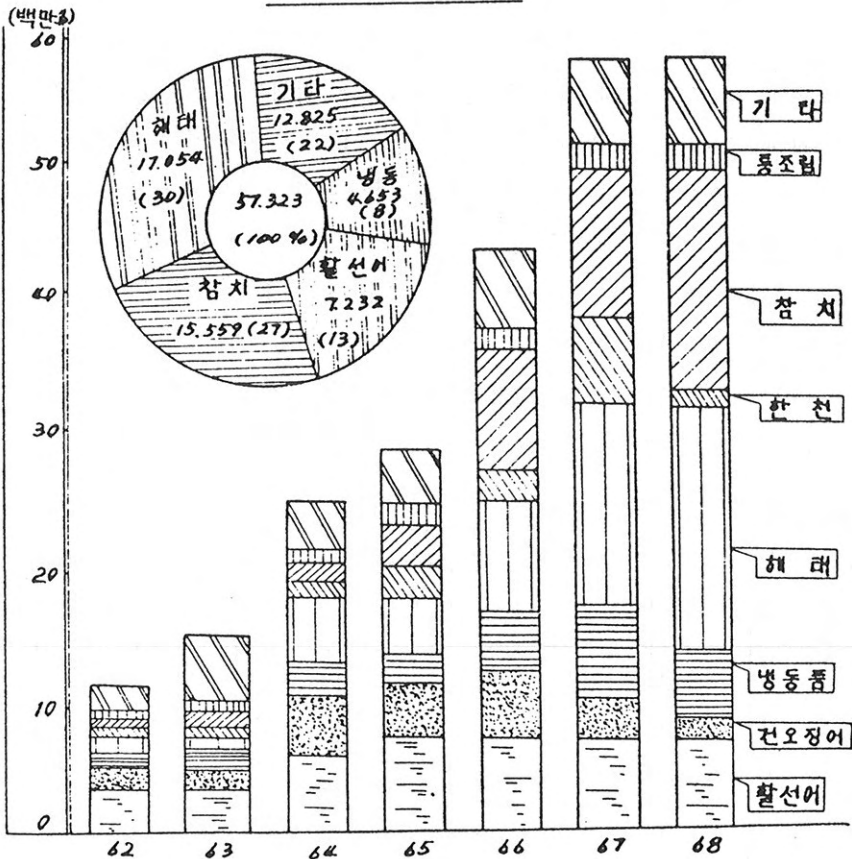


### 3. 품목별 수출

수산물 수출은 품목별로 보면 활어·선어·냉동품·오징어·건어게류·염신장품·통조림·한천·해조류·김·참치등이나 비중이 큰 품목은 활선어·냉동품·김·참치등으로서 수산물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 17)

수산물품종별 수출추이



활어는 장어·백합·문어·소라등으로서 2,750천 \$을, 선어는 삼치·방어·병어·새우등으로서 4,482천 \$을 수출하였는데 전액 대일 무역이다.

냉동품은 대하·중하·장어·꽃게등의 제품으로서 4,653천 \$을, 오징어는 1,970천 \$로써 진오징어와 조미오징어로 약 50%씩 수출하였다.

건어개류는 마른멸치·상어지네미·마른새우·마른굴·마른개아지살·마른학꽂치·마른조개·마른홍합·마른고등어등으로서 646천 \$을, 염신장품은 성게젓·청어알·새우젓·염소라·조개젓·게젓·곤쟁이젓·명난젓 등으로서 1,217천 \$을 수출하였고 통조림은 꽂치·오징어·굴훈게·새우·게·소라·골뱅이장어·홍합·패류의 제품으로서 2,221천 \$을 수출하였으며 한천은 천초를 원료로하여 제품되는 것으로서 동남아지역에 1,851천 \$을 수출하였다.

해조류는 자연호료의 원료로서 수출되는 툇·도박·감태·불동가사리·돌가사리·뜯 세모가사리·해조분 등으로서 588천 \$을 수출하였고 김은 대일지역 수출비중이 가장 큰 품목으로서 17,054천 \$을 수출하였다.

참치는 원양어업에서 어획되는 단일 품종으로 15,559천 \$을 수출하였고 어망이 4,246천 \$ 기타 수산물 즉 조미백합·진주핵·어간유등이 86천 \$의 수출실적을 나타냈다.

(표 33)

품종별 수출실적

(단위 : 천 \$)

품종	연도	62	63	64	65	66	67	68
		활어	673	658	784	1,091	1,755	2,456
선어		3,654	3,532	5,075	6,298	5,212	4,265	4,482
냉동품		1,381	1,763	2,255	2,368	3,872	6,084	4,653
오징어 (조미포함)		2,371	2,078	5,010	5,452	6,290	4,630	1,970
건어개류		279	384	264	419	390	533	646

연도 품종	62	63	64	65	66	67	68
염 제 품	363	843	519	882	1,368	1,730	1,217
통 조 립	272	372	826	1,406	1,655	519	2,221
한 친	1,420	1,641	1,849	2,176	2,753	5,800	1,851
해 조 류	352	328	654	819	1,002	929	586
해 태	1,267	1,343	5,391	3,781	6,838	14,371	17,054
참 치 류	205	625	320	2,404	7,971	11,969	15,559
기타수산물	106	20	138	142	87	102	86
어 망 류	—	65	241	892	2,727	4,001	4,165
로 - 푸	—	39	140	362	116	110	81
계	12,343	13,691	23,665	28,492	42,036	57,499	57,323

#### IV. 어업경영동향

##### 1. 어업경영체의 추이

###### 가 개 황

68년도 어업경영체수는 79,541로서 전년비 5.9%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구조별로 보면

첫째 ; 연안어선어업 경영체에 있어서는 기선상어연승·기선오징어일본조·안강망·유자망·자망 및 연승어업등은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한 반면 권현망·선인망·일본조·정치망 및 공동어업등은 오히려 감소하였는 바, 총체면에서는 42,847로서 전년비 6.3% 증가되었다.

둘째 ; 연안양식어업의 경영체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천혜간석지 개발시책에 힘입어 전년도 34,389에 대하여 5.4%가 증가된 36,230에 달하였다.

세째 ; 근해어업의 경영체수는 444로서 전년비 16.8%가 증가되었으며 어업별 증감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대형 및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이 증가된 반면 기선선망어업은 감소되었으며 새우트롤 및 대형포경어업은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네째 ; 원양어업의 경영체수는 전년도의 15에서 20으로 증가되었으며, 참치어업에서 3, 트롤어업에서 2가 각각 증가되었다.

어업경영체의 시도별 증감상황을 보면 강원·경북의 2개도만이 전년보다 감소되었을 뿐 여타 도는 대체로 증가되었다. 강원도와 경북도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감소는 양도 다같이 자망과 일본조어업의 경영체가 줄어들고 있는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편 경영체의 어업별 구성비는 연안어업이 79,077로서 전체의 99.4%를 점하고 있으며 잔여 0.6%가 근해어업과 원양어업경영체이다.

연안어업 경영체중 특히 양식어업 경영체의 증가가 현저하였으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과의 구성비는 54%대 46%로 나타났다.

(표 34)

어업경영체의 추이

(단위 : 경영체)

어업별		연도별	
		67	68
연안어업	어선어업	40,296	42,847
	양식어업	34,389	36,230
	소계	74,685	79,077
근해어업		380	444
원양어업		15	20
계		75,080	79,541

## 나. 연안어업

### (1) 경영체의 구성

연안어업 경영체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별 경영체는 연승어업 6,571, 일본조어업 5,507, 자망어업 3,709, 유망어업 3,351, 공동어업 4,164 (제1종 1,796, 제2종 296, 제3종 2,072), 안강망어업 1,725, 정치망어업 909, 계 25,936으로서 전체 42,847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기선오징어·일본조어업 451, 기선상어연승어업 147, 권현망어업 153, 타퇴망어업 154, 선인망어업 86, 기타 업종 15,920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별 분포상황을 보면 전남이 20,972로서 전체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이 9,518, 강원이 3,990, 경기도가 2,359, 경북이 2,010, 부산이 1,393, 충남이 1,029, 제주도가 882, 전북이 694로서 어장에 따라 각시도에 분포되어있다.

### (2) 업종별 동향

주요 업종별 경영체의 동향은 기선상어연승어업이 전년비 345.0%의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기선오징어 일본조어업이 45.5% 유망어업이 36.9%, 연승어업이 22.1%, 자망어업이 18.9%의 차폐로 각각 증가된 반면 선인망어업이 72.3%로 가장 많은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제3종 공동어업이 51.1%, 제2종 공동어업이 48.8%, 제1종 공동어업이 6.7%의 순위로 각각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기선상어·연승어업과 기선오징어 일본조어업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조업상황이 저조한 무동력 연승 또는 일본조어업이 외연 어장에 진출하고자 기선 상어연승 또는



기선오징어 일본조어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며 유망·자망 및 안강망어업의 증가는 정부의 동력개량 시책에 힘입어 무동력선이 대량 동력화되어 기선유망어업이나 대형 안강망어업에 흡수되고 있는데 기인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많은 감소율을 나타낸 공동어업이나 정치망어업은 기동성어업에 위축되거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양식어업으로 그 업종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표 35) 연안어선어업 업종별 경영체동향

업종별 연도별	67	68	증△감율 (%)
기선상어연승	33	147	345.0
기선오징어일본조	310	451	45.5
권현망	164	153	6.7
선인망	311	86	△ 72.3
타퇴망	203	154	△ 24.1
안강망	1,421	1,725	21.4
유망	2,447	3,351	36.9
차망	3,122	3,709	18.9
분기초망	227	509	124.2
들망	162	168	3.7
제1종공동어업	2,665	1,796	△ 32.6
제2종공동어업	578	296	△ 48.8
제3종공동어업	4,235	2,072	△ 51.1
연승	5,383	6,571	22.1
일본조	5,943	5,507	△ 7.3
정치망	1,015	909	△ 10.4
기타	12,077	15,243	26.2
계	40,296	42,847	6.3

시도별 증감상황을 보면 경기가 전년비 44.7%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전북이 20.9%, 제주가 20.5%, 충남이 20.4%, 경남이 13.3%, 전남이 11.3%, 부산이 0.9%로 각각 증가한 반면 동해안에 위치한 경북과 강원만은 38.6%, 18.4%의 감소율을 각각 시험하였다.

이와 같이 동해안 일대의 경영체가 현격히 감소된 반면 서남해안의 경영체가 늘어 난것은 동해안 어로 한계선 부근에서의 고등어·명태·오징어 조업어선이 어로 저지선 남하로 서남해안의 민어·새우등을 어로 대상으로 전향하는 통어선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표 36) 연안어선어업 시도별 경영체동향

시도별	연도별	67	68	증△감률 (%)
부 산		1,380	1,393	0.9
경 기		1,630	2,359	44.7
강 원		4,892	3,990	△ 18.4
충 남		573	1,029	20.4
전 북		574	694	20.9
전 남		18,837	20,972	11.3
경 북		3,274	2,010	△ 38.6
경 남		8,404	9,518	13.3
제 주		732	882	20.5
계		40,296	42,847	6.3

#### 다. 양식어업

##### (1) 경영체의 구성

양식어업의 경영체는 개인어업·어촌계 및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7년이전의 경영체 구성은 해태양식업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에

의한 협업화 조성사업으로써 연안 어촌계 단위의 공동어장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68년도 이후부터는 수산시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중투자에 의한 주산단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어 기업적인 경영체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2) 업종별 경영체의 동향

주요 품종의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경영체는 굴 314, 백합 497 해태 35,187, 반지락 232 계 36,230으로서 이를 구성 요인별로 보면 법인이 593, 개인이 35,637이며 도별 분포상황을 보면 전남이 29,862로서 가장 수위이고 그 다음은 충남 3,640, 경남 1,909, 부산 284, 전북 271, 경기 264의 순위이다. 개인 경영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원인은 해태양식의 경영체 구성이 주로 영세어가 경영체인데 기인되고 있으며 법인 경영체는 백합·굴·반지락의 경영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어협·어촌계 중심의 공동어장 조성사업에 치중함에 기인된 것이나 주요 양식어업의 경영체 동향을 보면 첫째 해태 양식업은 소자본과 가족노동에 의한 부업적 경영이 가능하며 양식시기가 농한기인 동계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을 이용한 반농반어의 경영형태에 가장 적합한 경영체이다.

최근 해태 양식업은 수출수요국의 기호에 맞도록 품질을 개량하고 중량급 해태 생산으로 수출증대 및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의 개량에 필요한 발장·탈수기·절단기·조제기등 제조기기의 보급과 양식장 선정, 어장관리, 원조취급·절단·건조 및 화입, 보관등에 관한 기술 보급으로 점차적인 해태 생산의 기계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다.

백합양식업은 종래 분산적인 어촌계 단위의 공동어장 조성사업으로서

( 표37 )

## 도별 · 품종별 경영체수

단위 : 건  
( 68년말현재 )

도별	글		백 합		해 태		반지락		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계	
경 기		44	126	51					43	126	138	264
충 남	3	27	150	9	3,384				67	3,537	103	3,640
전 북		4	49	26	167				25	216	55	271
전 남	21	135	27	20	29,597				62	29,645	217	29,862
경 남	65	15	9	30	1,755				35	1,829	80	1,909
부 산					284					284		284
계	89	225	361	136	35,187				232	35,637	593	36,230

양식방법이 저열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물의 대부분이 국내소비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집중투자에 의한 주산단지 조성으로 기업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일본국의 점차적인 생산량 감소 ( 62년도 31,000톤 ~ 66년도 10,000톤 이하 ) 로 대일 수출 잠재력이 20,000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65년도부터 수출개발품목으로서 그 생산방식을 양산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연도중에는 경기도 인천만과 아산만, 충남도 비인만, 전북도 망경만, 전남도 영광만·광양만의 6개단지를 중심으로 한 1,464 ha에 대하여 331백만원을 투입하였다.

글 양식업은 양식 방법에 따라 경영형태가 다양하며 글 투석식과

간이 수하식의 일부는 주로 지구별 어협 및 어촌계 단위로 경영체가 구성되어 있고 멧목 수하식, 연승 수하식은 대부분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굴 양식사업도 종래는 서남해안의 광범한 간석지를 이용한 굴 투석양식에 의한 어협 및 어촌계 중심의 공동어장 조성사업인 조방적인 방법에 의하여 소득증대의 일환책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성장도가 3년이 소요되어 단위당 생산량이 적고 지반변동에 따른 매몰등으로 굴 양식 경영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그리하여 66년도부터는 경남 및 전남 동부의 천해를 이용한 멧목 수하식 및 연승 수하식 양식방법에 의한 개인 경영형태로서 수면의 입체적인 이용으로 단위 생산량의 제고를 기도하여 기업경영체로 발전시켜 왔으나 역시 소규모의 경영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굴 수요인구의 증가와 제조가공방법의 발달에 의한 수출 증대로 인하여 국제수준의 생산비 인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경영체를 기업규모의 집약 양식 방법의 채택과 개량된 멧목 수하양식 방법의 도입으로 단위 생산성 제고 및 노력비 절감과 자재내구력의 연장에도모하여 생산·가공·수출의 계열화로 기업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표 38)

주요품종 수익성

(단위 : 천원)

품종별	기업단위	총투자	조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 득	소득률	수익	수익률
							%		%
굴멧목	50 대	19,500	6,960	4,789	5,272	2,171	31.0	1,688	24.0
백 합	50ha	15,000	18,000	10,693	12,369	7,307	40.6	5,631	31.3
해 태	10 책	140	240	130	141	110	46	99	41
반지락	20ha	4,000	5,400	3,045	3,661	2,355	44	1,739	32

라. 근해어업

① 경영체의 구성

68년의 근해어업경영체는 총 444로서 전년대비 16.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를 요인별로 보면 개인이 306으로 76%, 법인이 87로 20%, 공동이 20으로 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대부분이 개인기업으로 경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근해어업경영체의 증가추세도 개인기업과 공동경영이 전년대비 19.1%, 185.7%로 각각 증가한데 기인된 것이며 법인경영은 3.4%나 감소 경향을 보였다.

(표 39) 어업경영체별 동향

연도별 경영체별		65	66	67	68
대형기저	개인	156	150	156	197
	법인	33	50	47	46
	공동	7	9	4	19
	계	196	209	207	262
중형기저	개인	103	103	93	109
	법인	17	19	15	13
	공동	5	3	3	1
	계	125	125	111	123
새우트롤	개인	17	13	11	7
	법인	8	12	14	18
	공동				
	계	25	25	25	25
기선선망	개인	12	13	13	13
	법인	7	10	11	8
	공동				
	계	19	23	24	21
대형포경	개인	18	18	10	11
	법인	6	5	3	2
	공동				
	계	24	23	13	13
계	개인	306	297	283	337
	법인	71	96	90	87
	공동	12	12	7	20
	계	389	405	380	444

(2) 어업근거지별 경영체의 동향

어업근거지별로 경영체의 분포 상황을 보면 부산이 전체의 53%, 경남이 16%, 경북이 10%, 전남이 7%, 강원이 6%로서 부산이 가장 중요한 근거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물 처리가공시설·어항시설·어장조건 및 노동력 수급조건등이 비교적 양호하며, 어획물이 신속원활하게 처리되는 데어항을 중심으로 점차 경영체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 표 40 ) 어업근거지별 경영체수

어업별 지역별	대형기저	중형기저	새우트롤	기선선망	대형포경	계	구성비 (%)
부 산	193	26		13	3	235	53
경 기	16	1				17	4
강 원		22	2			24	6
전 북	1	14				15	3
전 남	32			1		33	7
경 북		37	8			45	10
경 남	16	23	15	7	10	71	16
제 주	4					4	1
계	262	123	25	21	13	444	100

(3) 업종별 경영체의 동향

근해어업의 업종별 경영체의 수는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이 262로서 전체의 59.0%이며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이 123으로 27.7%, 새우트롤어업이 25로 5.6%, 기선선망어업이 21로 4.7%, 대형포경어업이 13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증감상황을 보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이 전년대비 27% 증가 되었는데 이는 공동규제수역내에서 한일간 어업 세력균형을 목적으로 한 선폭증대에 기인된 것이며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은 법정허가 정한수 어업이나 12건의 결전보충으로 1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선선망어업은 전년대비 12% 감소되었는데 65년의 풍어이후 2년간 계속된 흉어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이 경영체 감소의 요인이 된 것이다.

(표 41)

업종별 경영 체현황

연도별 어업별	연도별						증△감률 (%) (67/68)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대형기저	145 (47.2)	122 (39.2)	196 (50.4)	209 (51.5)	207 (54.5)	262 (59.0)	27
중형기저	95 (30.9)	125 (40.2)	125 (32.1)	125 (30.9)	111 (29.2)	123 (27.7)	11
새우트롤	25 (8.1)	25 (8.0)	25 (6.4)	25 (6.2)	25 (6.6)	25 (5.6)	0
기선선망	18 (5.9)	22 (7.1)	19 (4.9)	23 (5.7)	24 (6.3)	21 (4.7)	△ 12
대형포경	24 (7.9)	17 (5.5)	24 (6.2)	23 (5.7)	13 (3.4)	13 (3.0)	0
계	307 (100)	311 (100)	389 (100)	405 (100)	380 (100)	444 (100)	16.8

※괄호내시는 구성비



#### 다. 원양어업

연도중 원양어업 경영체 수는 참치어업 17, 트롤어업 1, 참치 트롤 2로서 전체 경영체 수는 20개업체에 달하였다. 이는 67년도에 비하여 참치어업 4, 트롤어업 1이 증가된 것이다.

원양어선 210척을 보유하는 20개업체중 총어선수 88척을 보유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를 제외한 민간 업체만을 볼 때 기업체당 어선보유범위는 1~25척으로서 그 격차가 크며 1~5척 보유업체는 11, 6~10척 보유업체는 5, 11~25척 보유업체는 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평균한 기업체당 어선보유척수는 6.4척 (1,475.05톤)으로 참치어업 6.2척 (1,830톤), 트롤어업 10척 (2,276톤)으로 되어있다.

민간기업체의 어장 이용상황은 20척이상을 보유한 기업체는 태평양·대서양·인도양에 각각 기지를 두고 조업하는 실정이나 기타 기업체는 위해역중 어느 1개 해역에 국한 조업하는 형태이며 태평양의 사모아 기지에는 7개업체, 대서양의 후리타운 기지에는 4개업체, 인도양의 더반기지에는 3개업체의 어선들이 가장 많이 이용 조업하였다.

## 2. 어업종사 인구의 동향

### 가. 개 황

68년의 어업종사자 수는 540,857명 (겸업자 포함)으로서 전년대비 8.5% 감소되었다.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63년 11.4%, 64년 2.8%, 65년 3.1%, 66년 5.4%, 67년 2.6%로 각각 증가하여 63년의 11.4%와 66년의 5.4%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평균인구 증가율과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났으나 68년에는 전년대비 8.5%가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감소현상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따라 2차산업의 현저

한 신장으로 그 고용 수준이 증대되어 어촌의 노동력이 점차 2차산업 부문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어업종사자의 어업별 동향을 보면 어로어업은 전년비 11.9%가 감소된 44,719명이나 양식어업은 6,278명으로 2.8%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68년도의 어업종사자의 구성비는 양식어업이 40%, 어로어업이 60%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업 총생산고 852톤중 양식어업의 생산고는 113천톤으로 총 생산고의 13%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양식어업생산량의 비중이 그 종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은 대부분의 양식어업이 농민기의 농민들에 의하여 부업으로 경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2) 어업 종사인구의 동향

구 연 도	종 사 자 수			전년비증감률		
	총 수	어 로	양 식	총수	어 로	양 식
62	462,525	261,391	201,134	0.4	22.6	63.2
63	515,367	309,680	205,687	11.4	18.4	2.3
64	529,780	325,924	203,856	2.8	5.2	0.9
65	546,394	343,124	203,270	3.1	5.3	△ 0.3
66	575,665	362,701	212,964	5.4	5.7	3.9
67	590,854	366,188	224,666	2.6	1.0	5.5
68	540,857	322,469	218,388	△ 8.4	△ 11.9	△ 2.8

※ 겸업종사자 포함

#### 나. 연안어업

68년도의 연안어업 종사자수는 308,666명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65년부터 67년까지의 증감 상황을 보면 전년에 비하여 각각 1.5%, 4.7%, 1.4% 증가하였으나 총종사자수의 증가율 보다 낮으며 68년에는 12.6%로 적감하였다. 연안어업의 취업자수의 증가율이 비교적 낮고 68년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연안어업 위주의 우리나라 어업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2차산업부문에 있어서의 고용기회 확대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연안어민들이 임금률이 높은 다른 산업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다. 양식어업

68년도의 양식어업 종사자 수는 218,388명에 전체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8% 감소하였다.

65년부터 67년까지의 증감상황을 보면 65년도는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으나 66년은 4.8%, 67년은 5.5%로 각각 증가하였다.

68년의 2.8%의 감소율은 연안어업의 12.6%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는 정부의 연안 증식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연유하는 것으로 본다.

#### 라. 근해 어업

68년도의 근해어업의 종사자 수는 8,603명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연도별 증감상황을 보면 65년에 16.2%, 66년에 23.5%

%의 급격한 증가 경향을 보였으나 67년도에는 오히려 16.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변동률의 진폭은 66년까지는 근해어업의 기업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어장확대에 필요한 어업생산 수단인 어선의 대폭적인 증강에서 그 종사자수도 이와 병행하여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67년 이후 감퇴된 것은 노후 어선의 대체 또는 청구권 자금등에 의한 새로운 어선의 건조와 어로 장비의 개선등 조업의 합리화 과정에서 초래된 현상이다.

#### 마. 원양어업

68년의 원양어업 종사자 수는 5,200명에 불과하나 연차별 증가율을 보면 65년에 158%, 66년에 100%, 67년에 13.2%, 68년에 17.5%로서 65년과 66년 양년도의 증가율이 현저하며 타부문에 비해 해마다 그 증가율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원양어업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과 지원 및 민간업자의 의욕적인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된 것이며 원양어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증좌이기도 한 것이다. (표 43 참조)

### 3. 어업별 어선규모의 동향

#### 가. 개 항

68년말 현재의 우리나라 어선 세력은 총 62,002척에 292,962톤으로 전년비 4,747척에 30,884톤이 증가하였다.

총척수 62,002척중 무동력 어선은 50,538척에 86,641톤으로 전체의 82%에 해당한다.

(표 43)

## 어업별 종사인구 추이

구분	연도별 어업별	64	65	66	67	68
		총 수	529,780	546,394	575,665	590,854
종사자수	연안어업	327,900	332,718	348,353	353,067	( 57 ) 308,666
	양식어업	203,856	203,270	212,964	224,666	( 40 ) 218,388
	근해어업	7,265	8,451	10,438	8,696	( 2 ) 8,603
	원양어업	759	1,955	3,910	4,425	( 1 ) 5,200
	전년비증감	총 수	2.8	3.1	5.4	2.6
(△) %	연안어업	-	1.5	4.7	1.4	△ 12.6
	양식어업	-	△ 0.3	4.8	5.5	△ 2.8
	근해어업	-	16.2	23.5	△ 16.7	△ 1.1
	원양어업	-	157.6	100	13.2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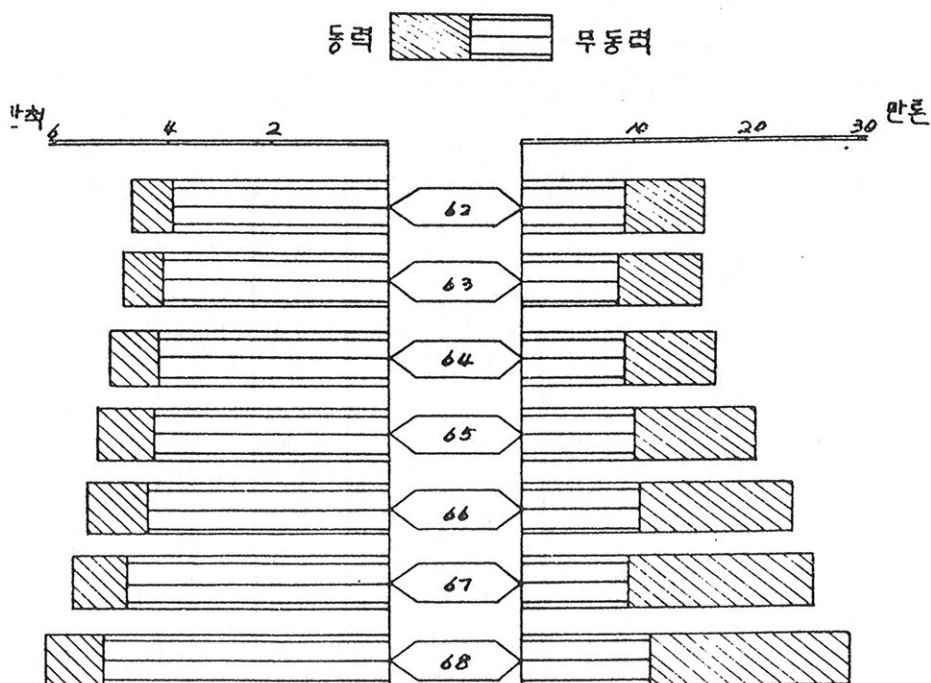
자료.: 근해 및 원양어업 취업자 수는 어선통계에서 근해 및 원양어선 척수에 1척당 종업인원을 곱하여 추산하였음.

그러나 총톤수 292,926톤과 대비하면 30%에 불과한 86,641톤이며 전년비 4,292척에 9.3%, 3,680톤에 4.4% 증가하였다.

동력어선은 11,444척에 206,321톤으로 척수는 전체의 18%에 불과하나 톤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비 455척에 4.1%,

27,204톤에 15.2% 증가하였다.

(도 18) 어선 세력 추이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연안에는 아직도 소형 무동력어선의 수요가 많은데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한편 척당 평균톤수의 연차별 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62년의 3.55톤에서 68년에는 4.73톤으로 상승되었으나 무동력어선은 62년의

2.07톤에서 68년에는 171톤으로 하강하였으며 동력어선은 62년의 13톤에서 68년에는 18톤으로 그 증가율이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동력어선은 기동력이 없으므로 연안에 인접한 어장 조업에는 소형보다 대형 무동력어선의 이용가치가 점차로 감퇴되고 있는 반면 기동력 있는 동력어선은 조업어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또한 원양어업의 발전의 영향을 받아 동력어선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결과라 하겠다.

(표 44) 어선세력증가동향

구 분 \ 연 도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척 수	총 척 수	45,504 (100)	47,217 (104)	48,716 (107)	51,052 (112)	53,294 (117)	57,255 (126)	62,002 (136)
	동 력	6,085 (100)	6,107 (101)	6,463 (106)	7,572 (124)	8,884 (146)	10,989 (181)	11,444 (188)
	무 동 력	39,419 (100)	41,110 (104)	42,253 (107)	43,480 (110)	44,410 (113)	46,266 (117)	50,558 (128)
톤 수	총 톤 수	161,709 (100)	160,043 (99)	167,423 (104)	203,164 (125)	245,962 (152)	262,079 (162)	292,962 (181)
	동 력	80,105 (100)	80,336 (101)	86,514 (108)	119,515 (149)	160,487 (200)	179,117 (224)	206,321 (256)
	무 동 력	81,604 (100)	79,707 (98)	80,909 (99)	83,649 (102)	85,475 (105)	82,962 (102)	86,641 (106)

※ 괄호내시는 지수

## 나. 연안어선

68년도 말 현재의 연안어선 총수는 60,202 척으로 이중 50,132척이 무동력 어선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무동력어선 총수의 96%인 48,213척은 5톤미만이며 5톤이상의 무동력어선은 1,919척으로 무동력어선 총수의 4%에 불과하다.

한편 65~68년간의 5톤미만과 5톤이상의 무동력어선 척수의 동향을 보면 5톤미만은 증가되고 있으나 5톤이상은 감소되고 있으며 연안 무동력 어선은 점차 소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8년도 말의 연안동력어선 총수는 연안어선 총수의 4%인 10,073척에 불과하다. 이를 톤급별로 보면 2~5톤급이 3,505척으로 가장 많고 10~20톤급이 2,724척, 5~10톤급이 2,158척, 2톤미만이 900척의 순위이며 동력 연안어선에서도 5톤급미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5~68년간의 톤급별 동력어선의 동향을 보면 각 톤급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톤이상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고 2톤미만 및 2.0~30톤급 동력어선의 증가경향이 뚜렷하다.

이상에서 볼때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상급 생산성이 낮은 무동력어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편 2톤미만 소형어선의 동력화 및 동력어선의 대형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본다. (표 46 참조)

## 다. 근해어선

68년도 말의 근해어선 총수는 595척으로 전부 10~20톤급 이상의 동력어선이며 전년비 9척이 증가되었다.

근해어선의 톤급별 척수 동향을 보면 30~50톤급은 전년비 21척이



(표 45)

연도별	총수	무등급어선			계
		계	5톤미만	5톤이상	
65	49,344 (100)	42,878 (100)	40,344 (100)	2,534 (100)	6,466 (100)
66	51,376 (104)	43,818 (102)	41,327 (102)	2,491 (98)	7,558 (117)
67	55,518 (113)	45,806 (107)	43,639 (107)	2,167 (86)	9,712 (150)
68	60,202 (122)	50,132 (117)	48,213 (119)	1,919 (76)	10,070 (156)

나 증가하고 있어 근해어업에 있어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선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46) 근해어선의 동향

연도	동력어선					
	총수	10~20톤	20~30톤	30~50톤	50~100톤	100톤이상
67	586	3	—	160	422	1
68	595	4	3	139	449	—
전년비증감(%)	9	1	3	△ 21	27	△ 1

라. 원양어선

68년도 말의 원양어선 총수는 210 척으로서 전년비 30 척이

어 선 통 계

동 력 어 선					
2 ㄹ미만	2~5 ㄹ	5~10 ㄹ	10~20 ㄹ	20~30 ㄹ	30 ㄹ 이상
364 (100)	2,377 ( 100 )	1,658 ( 100 )	1,764 ( 100 )	297 ( 100 )	6 ( 100 )
375 (103)	2,678 ( 113 )	1,905 ( 115 )	2,282 ( 129 )	317 ( 107 )	1 ( 17 )
682 (187)	3,832 ( 161 )	2,083 ( 126 )	2,453 ( 139 )	563 ( 190 )	99 (1,650)
900 (247)	3,505 ( 147 )	2,158 ( 130 )	2,724 ( 155 )	642 ( 216 )	141 (2,350)

※ 괄호내시는 지수임

증가하였으며 등급별로 보면 50~100ㄹ급 6척, 100ㄹ급이상 24척이 각각 전년비 증가하였었다. 이와 같이 100ㄹ급 이상의 대형어선의 증가 척수가 현저하게 많은 것은 원양어장 확대에 의한 어선의 대형화에서 초래된 현상이다.

( 표 47 ) 원양어선의 동향

연 도	50~100 ㄹ	100 ㄹ 이상
67	6	174
68	12	198
전년비증감 (△)	6	24

## V. 어업생산성

### 1. 어업 부가가치

연중 어업부가가치는 200억원 (65년 불변시장가격)에 달함으로써 국민총생산의 1.8%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전년과 대비하면 14.4%의 성장으로 국민총생산성장률 13.3%보다 1.1%를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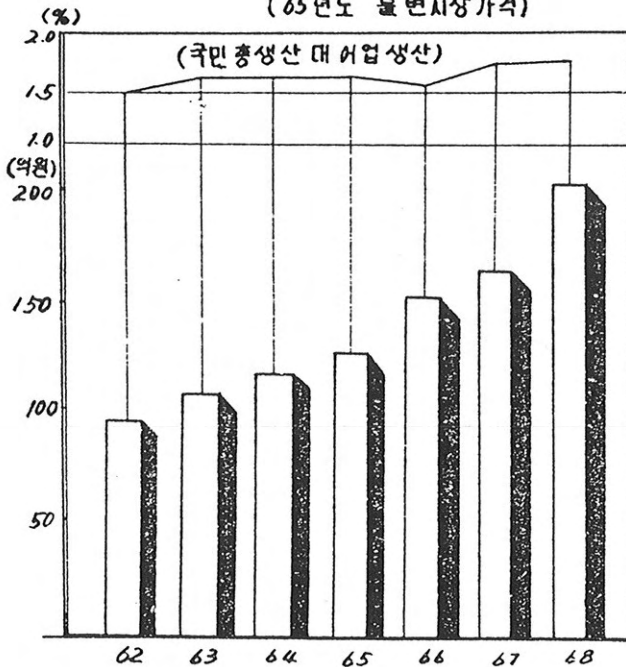
이와같은 고도의 성장은 어업총생산량이 전년에 비하여 13.6% 증가함에 기인하며 1차산업 전체의 부가가치를 1.2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62년 이래 어업부가가치의 증가율은 65년과 66년을 제외하고는 국민총생산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견지하였다.

(도 19)

수산업의 부가가치추이

(65년도 불변시장가격)



과거 6년간의 수산부문 평균 성장률은 12.2%로서 농림부문 성장률보다 9.1%를 상회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에 있어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6년도의 37.9%에서 68년도에는 29.4%로 감퇴하고 있음에도 수산부문만은 동기간중 1.6%에서 18%로 그 구성비가 상승하여 양산업간의 대조적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

자 금 현 황

(단위 : 10억원)

구 분 \ 연 도	62	63	64	65	66	67	68
국민총생산 (A)	634.97	693.03	750.31	805.85	913.82	995.16	1,127.32
어업생산 (B)	9.57	11.40	12.91	13.62	15.07	17.56	20.08
B/A	1.5	1.6	1.7	1.7	1.6	1.8	1.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이와 같은 수산부문의 지속적인 호조는 경제개발 계획에 의하여 적극화된 수산개발 정책에 힘입은 것이며 금후에도 66년도부터 투하된 매일 청구권자금 등에 의한 투자의 생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전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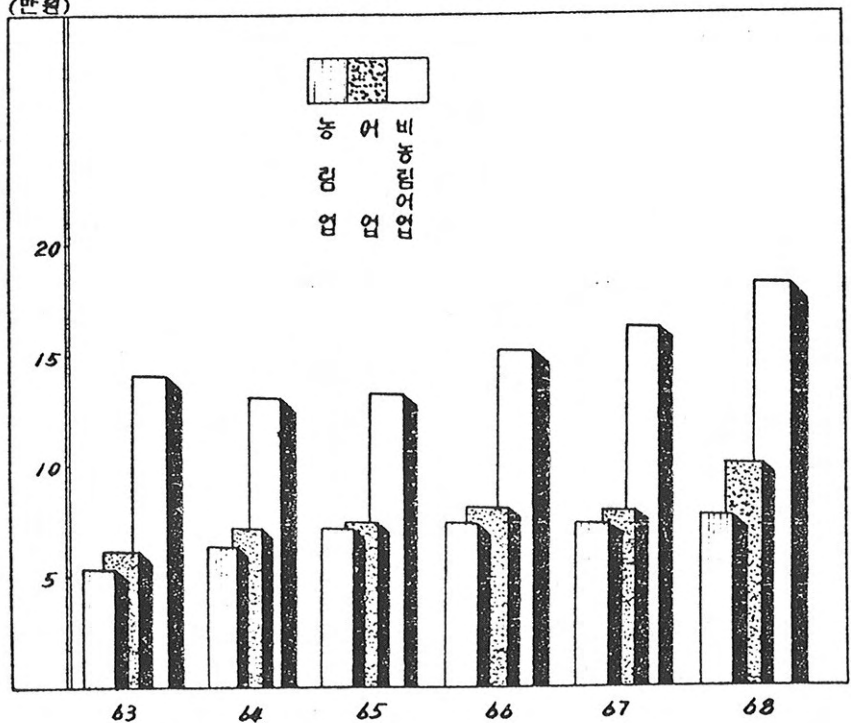
2.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연중 어민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91,273원으로서 전년대비 13.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64년 이후의 연평균증가율 11.1%보다 2.2%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이를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하면 농림업의 66,937 원 보다는 24,342 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비농림어업의 181,101원에 대하여는 50.4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89,828원의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 20)  
(만원)

어업과 비어업간의 생산성대비



이와 같은 격차는 제 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62년 이후 비농림 수산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증가함에 반하여 어업은 아직도 연안을 중심으로 영세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위 생산성이 저열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표 49)

## 어업취업자생산성동향

구 분		연 도					
		63	64	65	66	67	68
농 림 업	부가가치(10억원)	259.36	301.40	298.01	330.84	309.34	310.76
	취업인구(천인)	4,822	4,906	4,785	4,851	4,706	4,643
	1인당부가가치 (원)	53,745	61,434	62,280	68,200	65,733	66,931
어 업	부가가치(10억원)	11.40	12.91	13.62	15.07	17.56	20.08
	취업인구(천인)	200	178	215	186	218	220
	1인당부가가치 (원) (A)	57,000	72,528	63,348	81,021	80,550	91,273
비 농 림 업	부가가치(10억원)	422.47	436.00	494.22	567.91	668.26	796.48
	취업인구(천인)	2,925	3,126	3,522	3,646	3,990	4,398
	1인당부가가치 (원) (B)	144,434	139,475	140,323	155,762	167,484	181,101
소득대비 A/B (%)		39.4	52.0	45.1	52.0	45.6	50.4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연보

## VI. 수산금융

## 1. 개 황

한국 산업의 구조와 발전에 있어서 정부 재정 투용자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은 클 것이다.

특히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수산금융 체제가 확립된지 얼마되지 않음은 물론 자체자금의 빈약으로 정부의 정책 금융에 의한 재정자금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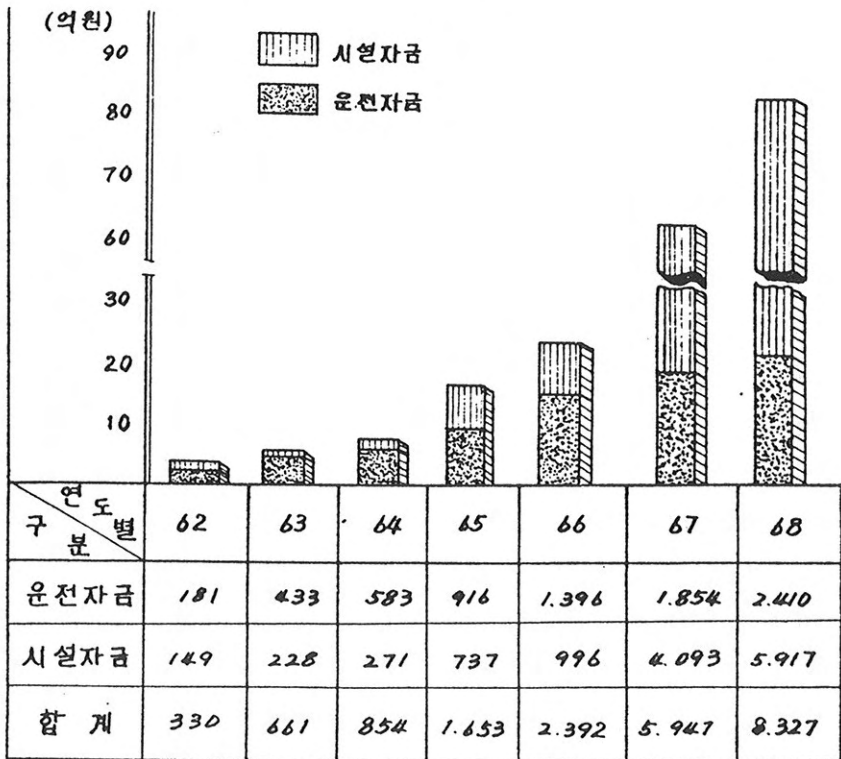
수산 금융기관인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조합원의 출자금과 예수금에 의한 자체자금 조성으로 운영하고자 자체자금 조성 5개년 계획으로 100억원 조성목표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조합원의 경제적 미약과 영세성으로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차입금(금융자금)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자금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수산자금 취급분 일부를 수협중앙회가 차입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수산자금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정부 재정자금인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산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현 수산업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은 정책자금인 재정자금에 의한 의존도가 높으나 앞으로 자체자금 조성의 강력한 추진으로 점차 정부재정의 의존도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2차년도인 68년도에는 수산 진흥사업을 위하여 정부대하금은 청구권 자금의 수산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간 2,380백만원이 증가하여 연말 현재 8,327백만원에 달함으로써 전년대 40%의 증가를 나타냈다.

수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하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다소 기복은 있으나 6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하였으며 이는 청구권자금 제2차년도분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도21)

## 재정자금연도별 대하 추이



68년도 수산금융시책은 수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생산 및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으로서 재정부문에서 555백만원의 수산자금과 기타 사업부문에 있어서 어선건조 동력개량 및 장비개량에 1,114백만원, 증식시설에 225백만원, 처리가공 시설에 542백만원, 기타 사업에 48백만원, 합계 2,484백만원의 재정자금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수반하는 융자금을 제외한 수산자금이 있어 영세성을 띤 영어자금은 어업별·지역별 균배를 원칙으로 하였고 시설자금은 생산성 제고에 양식자금은 주산지 개발에 각각 중점 배정하여 집행한 것이다.

## 2. 연안어업

우리나라 어업의 생산활동은 연안에서 근해로 근해에서 원양으로 외연적 어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년도인 67년도부터 그 양상이 크게 변하여 최근 수년이래 해외어장의 진출로 연안어업에서 근해 원양어업으로 발전되어 가는 현상이다.

그러나 연간 수산물 생산고의 비중은 68년도에 있어서 연안어업 553천%, 근해어업 136천%, 원양어업 50천%, 양식어업 113천%, 합계 852천%로서 연안어업이 전체의 64%를 점하고 있으나 단위당 생산성이 극히 저위상태에 있으며 이는 어업자본 및 장비율의 저위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어가어업이 지배적인 연안어업은 그 영세성으로부터 탈피시켜 생산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 조속히 자본 저축을 이루어 기업어가로 유도 전환시켜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어민에게 수산금융의 지원을 강화하여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근해 원양어업으로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겠다.

68년도에는 연안어업의 영세성을 극복,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계속하여 생산구조를 개선하고자 연안어선 건조와 무동력어선의 동력화등 장비를 근대화하는 동시 출어자금의 적극지원등이 강구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과 더불어 종래 자금혜택에서 도외시 되어온 연안어업은 정책금융에 의한 어업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

고 있는 부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 추이를 살펴보면 68년도의 영어 자금 확보총액 2,484백만원중에서 연안어업에 지원된 것은 1,220백만원으로 43%에 해당되며 항상 총소요자금에 비하여 확보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객주 수탈을 완전히 방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영어자금의 회전도를 높이고 어민들의 자기자본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자기자본의 축적에 의한 금융체제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67·68 양년도의 어업세력과 자금지원 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어선세력은 67년도에 비하여 68년도에는 68%의 증가세에 있으나 어획량은 12% 증가하였으며 자금지원지수는 2%로 저조한 편이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사정이 자금의 수요증가에 마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표 50)

자금 확보 상황

(단위 ; 천원)

어업별	총소요액 (A)	기확보액 (B)	비율 (B/A)	부족액
영세어업	3,568,000	640,218	18	2,927,782
잠수기	36,000	11,106	31	24,894
범선저인망	54,000	16,127	29	37,873
권현망	408,000	124,010	30	283,990
정치망	1,501,000	144,220	9.6	1,356,780
안강망	711,000	109,171	15	601,829
풍치유망	183,000	64,905	35	118,015
삼치유망	236,000	57,580	24	178,420
청유망	1,114,000	52,570	5	1,061,430
계	7,811,000	1,219,907	16	6,591,093

(표 51)

어선어획량 및 자금지원추이표

구 연도별	어 선 증 가			어획량증가		자 금 지 원	
	척 수	톤 수	지 수	수량 (%)	지 수	금 액	지 수
67	52,249	155,585	100	490,928	100	백만원 1,188	100
68	57,255	262,079	168	553,370	112	1,220	102

## 3. 근해어업

우리나라 수산업 근대화의 방향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을 통하여 근해 및 원양어업으로의 외연적 확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바 우리나라의 근해어장은 대부분이 한일 공동규제수역에 속하여 있는 한편 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형 기선저인망·중형 기선저인망·기선선망·대형 포경 및 새우트롤 어업등은 그 대부분이 목선이며 내구년수가 초과된 노후어선이어서 근대적 장비를 갖춘 일본어선들과의 조업경쟁에서 뒤지고 있어 근해어선의 건조와 도입으로 어선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경험위주의 전근대적 조업방식에 의한 저생산성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67년도부터 계속하여 청구권자금 및 차관에 의하여 어군탐지기·무전기·방향탐지기등 장비 개량의 적극 지원으로 어업 생산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68년도 근해어업에 있어 어업별 건수를 보면 대형기선저인망 218건, 중형기선저인망 125건, 새우트롤 25건, 기선선망 16건, 포경 17건, 기

선상어연승 56건, 합계 457건으로 용자소요액은 1,812백만원에 달하나 공급확보액은 660백만원으로 소요액의 36%에 불과하며 자금대출주는 전년도말에 비하여 13%가 증가한 78백만원이 증액었으며 어획량도 67년도 대비 13% 증가한 136천M<sup>3</sup>로서 자금지원 증가율과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2)

자금확보 상황

(단위 : 천원)

어업별	총소요액 (A)	기확보액 (B)	비율 (B/A)	부족액
대형기선저인망	1,095,000	303,610	28	791,390
중형 "	249,000	83,400	33	165,600
새우트롤	56,000	16,300	29	39,700
기선선망	351,000	205,800	59	145,200
포경	31,000	14,590	47	16,410
기선상어연승	30,000	36,920	123	△ 6,920
계	1,812,000	660,620	36	1,151,380

4. 원양어업

원양어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67·68년도에 이르러서이며 따라서 원양어업 출어 척수 증가에 따라 자금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소요되는 자금수요는 1,869백만원으로서 재정자금 152백

만원, 금융자금 816백만원, 합계 968백만원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총소요액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출어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급하였다.

원양어장의 개척으로 어획증산과 외화획득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국위선양을 기하는 등 원양어업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큼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사정으로 연안어업이나 근해어업과 같은 저리의 재정자금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어업의 경영상 문제와 국제 경쟁조업에서 오는 과중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금융자금 지원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대출금리를 연 26%에서 20%로 인하 조치하였으며 또한 69년도에는 원양참치어업 출어자금에 한하여 금리를 연 10%로 인하 조치함으로써 원양 민간업자들의 부담을 계속 경감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68년도의 어선세력과 어획량 및 자금지원추세를 살펴보면 어선세력과 어획량은 67년도에 비하여 29%와 16%가 각각 증가된데 대하여 자금지원률은 54%의 급증을 나타내고 있다.

(표 53)

기금 확보 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별	총 소 요 액 (A)	기 확 보 액 (B)	비 율 (B/A)	부 족 액
원 양 출 어	1,869,000	967,700	51	902,000

## Ⅷ. 68년도 수산부문 투용자

### 1. 개 요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한다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를 하루 속히 달성하고 전근대적 어업의 특징인 영세어업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이로써 어민소득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기본 시책방향에 따라 68년도 수산부문에 배분된 투용자 예산규모는 총 5,90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04백만원 및 예비비 648백만원 포함) 으로서 정부재정 투용자 예산에 대하여 6.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규모는 67년도의 7,068백만원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이는 지도선 및 시험선의 1차년도 중점도입에 기인된 것이고 타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하였거나 동일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2차 5개년 계획상의 수산업 정부부문 투용자 계획규모 6,062백만원과 거의 일치됨으로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무난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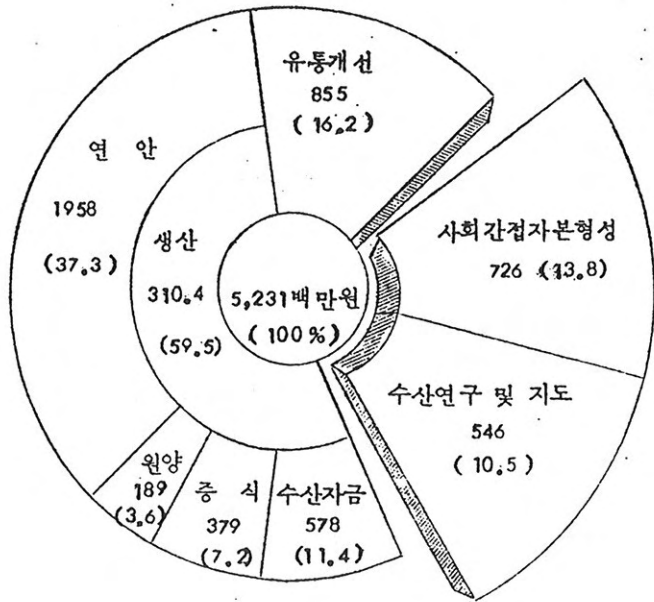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수산 부문의 투자는 어선 건조 및 장비개량을 비롯한 증식사업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 및 어항수축등 10개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서 수산업의 기반을 더욱 굳혔다. (도22 참조)

### 2. 투용자 사업규모

총규모 5,904백만원중 5,231백만원이 연내 집행되었으며 투용자 사업내용으로서는 어선 건조 및 장비개량에 2,312백만원으로 총액 대비 3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수산물 처리가공 시설에 926백만원으로

(도 22)

68년도 투융자실적



14% 그외 어항수축에 229백만원 증식사업에 379백만원 수산자금  
대하에 577백만원, 수산시험에 330백만원 기타 부문에 530백만원이 각  
각 투입되었다. (표 55 참조)

3. 투융자 사업실적

투융자 집행액 5,231백만원의 투입에 의하여 이룩된 사업실적은  
이월되는 동력개량 3,420마력, 연안어선 298톤, 처리가공시설 2개소, 및

(표 54)

## 68년도 투용자사업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68 년 도 예 산 (A)	집 행 액 (B)	B/A	비 고	
				이월액	불용품 절감액
1. 어선전조 및 장비개량	2,312 ✓	2,147	93	39	
2. 증식사업	393	379	96	6	
3. 수산물처리 가공시설	926	855	92	15	
4. 어항수축	696	629	90	60	
5. 어업기본시설	98	97	99		
6. 어촌지도	35	33	93		
7. 수산시험	352	330	94		
8. 실습선 및 시험선전조	504 ✓	173	34		
9. 수산물검사시설	10	10	100		
10. 수산자금대하	578	578	100		
계	5,904	5,231	89	120	553

2대 어항 피해복구 572m 및 조사선도입 1척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실적을 올리어 어업수단의 개선 및 어로장비 개선에 진전을 가져왔다.



( 표 55 )

## 68 년도 투융자 사업 실적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별	사 업 실 적	비 고
1. 어선건조 및 장비개량	동 력 개 량	8,655 마력 (177대)	3,420 마력 (76대) 이월
	연안소형어선건조	480 척 (2,657 톤)	5 척 (65 톤) "
	연안중형어선건조	208 척 (4,168 톤)	12 척 (233톤) "
	원양어선건조	9 척 <u>(2,576 톤)</u>	
	장 비 개 량	어군탐지기등 575 대	
	재해어선복구	3,129 척	
	백합의 6종	458 헥타 (62개소)	
2. 증식사업	해 태 망	1,000 척	
	연어부화장의 4종	13 개소	
	해태철관항목	157,000 본	
	진 주 양 식	70 대	
3. 수산물 처리 가공 시 설	해태 절단기	197 대	
	쇼 케 스	40 대	
	멸치 건조척	5 통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별	사 업 실 적	비 고
4. 어항수축	종합어시장외 13동	100개소준공	병동공장 2개소이월
	방파제 (복구포함)	2,868 m 부두 1식 2개소 부록제작 165개	
	물양장 (복구포함)	1,021 m 매립 3,367 m <sup>2</sup>	
	선착장 (복구포함)	574 m	
5. 어업기 본 시 설	기 본 조 사	30개항	
	재해어항복구	1,713 m	
6. 실습선 및시험선	급유·급수·공동창고	29개소준공	
	어업무선구복강	송수신기 13조 설치	
7. 어촌지도	유조선 건조	2 척	
	실 습 선	4 척	
8. 수산시험	시험선 및 훈련선	3 척	조사선 1척 취소
	어 촌 지 도	지도어민 36만명 이상어촌건설 1개소	
8. 수산시험	시험연구의 4종	시험조사 및 연구	
	연 구 생 과 견 시 험 기 기 도입	30 인 98 종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별	사 업 실 적	비 고
9. 수산물 검사시설	검사장 및 분석 실	5개소	
10. 수산자금 대 하	어가안정자금	100백만원대하	
	수협경제사업자금	55 "	
	영어자금	400 "	

#### 4. 사업의 효과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수산부문에의 투자는 어업 총생산의 연차적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68년도에는 852천 M/T 의 어획고를 올림으로서 전년비 13.6%의 증산을 가져 왔다.

이는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년도인 62년도의 어획량 470천 M/T에 비하면 거의 배에 가까운 증산이다.

특히 양식부문과 원양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증산을 이룩하였으며 양식부문에 있어서는 62년도에 38천톤의 생산량에 불과하던 것이 68년도에는 113천M/T이라는 3배의 생산량을 나타냈고 원양부문에 있어서는 62년도 1천M/T에서 68년에는 50천 M/T의 어획실적을 올렸다.

이 두부문은 연근해 부문에서 올린 어획량에 비해서 그 증대율이 지극히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시책 방향의 전환과 어업의 근대화 과정인 연근해로부터 원양으로 그 단계가 이행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방파제 물양장등의 시설확충과 어항 수축으로 증가되는

어선을 보호하고 어획물을 신속 처리케 하였으며 선수물자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등 어업 경영의 근거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산물 유통시설 및 통신시설의 확장으로 조업안전과 유통의 원활을 도모하였으며 수산시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자원을 개발함은 물론 조업 방식의 개선으로 단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어자원 보호 및 신어장등을 개척하여 어획량을 제고 시켰다.



## 제 2 부 1969년도 수산시책

제 2 부 1999년 수교협약

## 제 2부 1969년도 수산시책

### I. 개 설

#### 1. 수산시책의 배경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중 모든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왕성한 확대추세는 제2차5개년계획기간중에도 계속하여 68년의 경제성장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13.3%의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의 성장은 광공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에서 주도하였으며 농림·어업부문은 불과 1.2%라는 저조상을 면치 못하였다.

한편, 산업구조변에 있어서도 그 구성비는 농림·어업부문 29.4%, 광공업 24.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45.8%로서 제1차 5개년계획의 목표년도인 66년의 37.9%, 19.8%, 42.3%와 대비하여 보면 산업구조도 공업화 방향으로 한걸음 닦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농림·어업부문의 이와 같은 저조한 발전상은 농업부문에 연유되는 것이며, 수산부문은 62년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연평균 12.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66년에는 국민총생산의 1.6%를 차지하던 것이 68년에는 1.8%로 상승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민경제와 수산업의 고도성장 추세하에서 수산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연안 영세어업중심의 어업구조

우리나라의 어업구조를 생산수단과 취업의 양면에서 살펴보면 연안어업에 투입된 어선은 총어선 62,002척중 97%인 60,262척이며 취업자의 수는 어업종사자 541천명중 97%인 52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안어업 집중의 경영구조는 단위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생계업적인 단순재생산의 형태에서 탈피치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구래의 생산경영 구조를 하루속히 탈피하고 확대재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생산수단의 현대화와 경영방식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나. 생산수단의 전근대성

총어선 척수 62,002척중 무동력어선이 82%에 해당하는 50,558척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척당 평균톤수는 4.7톤에 불과하다. 어선 톤급별 규모를 보면 소형어선(5톤미만)이 53,186척으로서 86%를 점하고 있어 어업 생산수단의 전근대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어선 보유형태는 어로장비율의 저위성을 초래하여 적극적인 수산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본 생산성은 별다른 향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다. 어업 취업자의 생산성 저위

생계업적인 연안 영세 경영은 필연적으로 어업 취업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68년도의 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

액은 91,273원으로서 비농림어업의 181,101원에 대하여 51%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업취업자의 생산성의 저위는 어업의 본질적인 특성과 어업근대화 초기과정에 있어서의 내생적 힘의 결여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어업경영방식에 대한 전환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 라. 수출신장 추세의 둔화

60년도의 수산물 수출액은 7,000천불에 불과하였으나 제 1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으로써 67년에는 60년대비 8배가 넘는 54,499천불로 늘어나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68년에 와서는 67년의 수출실적을 오히려 하회함으로써 해마다 놀라운 신장을 거듭하여온 수출추세를 둔화시켜 놓았다.

이와 같은현상은 수출대상어종의 어획부진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내소비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국내어가 상승의 동남아를 위주로 하는 수출시장의 편협등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종래의 신장추세를 회복하고 수산물의 수출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여하히 수출물량을 증대시키고 국내소비를 억제하여 국내가격 체제를 국제경쟁상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데 있다.

## 2. 중점시책

위와 같은 국민경제의 움직임과 수산업의 배경을 감안하여 69년도에 강구한 중점시책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산물 수출진흥

수산물의 수출은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62년 이래 67년까지 연평균 37.7%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으나 68년도의 수출실적은 둔화되어 67년 수준보다 약간 하회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국내소비수요의 증가와 이에 자극된 국내어가 상승 및 이로 인한 수출철 손폭의 확대 수출 주대상어종의 어획부진, 수출여건 조성의 미약등의 저해 요인으로 인하여 69년도 1분기 실적도 예년에 비하여 부진상을 면치 못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해요인을 하루 속히 제거하여 연간목표를 달성코자 다음과 같은 수산물 수출진흥책을 강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수출진흥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첫째 : 가용재원을 수출위주로 재조정하고 수출지원 자금을 별도 설치 운영하며,

둘째 : 수출어종 증산을 위하여 수산자금을 중점 지원하고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며

셋째 : 수출 결손을 위한 특혜의 부여등 적극적인 수출여건의 조성으로 수출책임제를 실시하며

넷째 : 수출 전략어종의 국내소비 억제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입법화를 추진하고

다섯째 : 수출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관제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 등이며,

이와 같은 기본방향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수출어종의 생산증강

집약적인 생산과 수출을 위하여 수출전략어종을 선정하고 이 어종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어선을 건조 또는 도입하며 활선어

의 생산·수출 책임제를 실시하며 굴·백합 실뱀장어등 개발수출 품목에 대한 양산체제를 가춘다.

(2) 수출어획물에 대한 집하 체계 확립, 생산자와 수출업자와 연계제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줌으로써 수출수산물의 자연소모를 최대한으로 막고 수출어종에 대한 취급의 우대등 여건을 조성한다.

#### (3) 수출어종에 대한 국내소비 억제

수출어종의 국내소비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수출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책으로 전락 어종에 대한 위판 수수료를 수출시에는 최소한의 위판장 사용료만 징수하고 국내 판매시에는 100%의 수수료를 추정토록하는 한편 사매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 (4) 수출 금융지원의 강화

수산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출목표달성에 역점을 두며 특히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10억원의 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운용함으로써 금융지원 체제를 정비 강화한다.

#### (5) 수출지원 제도의 개선

수출 창구를 조정하여 수출 지원업무를 원활히 촉진하고 수산물 수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산물 수출 전업자의 무역업 자격을 완화토록 조치하며 수출결손 보전을 위한 각종 간접 보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수입제한 및 조건 개선을 위한 매일 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 (6) 수출행정 체제의 강화

수산물 수출 행정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수출업무를 전담하는 수출진흥과를 신설하고 생산 및 수출의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며 수출행정을 강화한다.

### (7) 품질 고급화

수출 수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품질고급화 사업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어상자 개탕과 점검제 실시를 통하여 품질고급화에 기여한다.

품질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개발공사로 하여금 해태품질 개선사업에 참여케 하여 해태생산 어협과의 계약에 의거, 기술지도 기기 개탕 및 자금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해태를 직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바 어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69년도에는 속당 5.63분에 (전국 평균 5분)에 286척속을 수출하여 16백만불의 외화를 획득하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약생산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외화 획득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 나.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추진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의 목적이, 경제개발계획의 수행과정에서 현재화된 농림어업과 타 산업종사자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전국적인 전지에서 농림어업개발의 핵이 될 수 있는 지구를 선정하여 그지구의 자연적 경제적 입지조건에 가장 적응된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생산처리 가공 및 유통 각 부문에 걸쳐 자금 기술 및 행정력을 집중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기하려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산부문에서는 이의 대상사업으로써, 경제성이 가장 높은 백합·해태등의 수산증식사업을 채택하였다.

68년부터 7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될 이 사업의 총량규모를 보면 투자규모는 2,799백만원 (12개지구)이며 이의 투자효과를 생산

51천톤, 수출 9.7백만불로 책정되고 있다.

제 1차년도인 68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7개지구에 388백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제 2차년도인 69년에는 969백만원을 투입키로 계획되어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에 비추어 타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인 행정력을 경주하여 강력히 추진중에 있으며 69년도 주요사업계획의 개요는 백합 1,050ha, 굴 1,420대, 주요 패류 300ha, 해태용수시설 34개소, 해태화입시설 12개소, 해태기기 300대 축양 4개소로 되어있다.

#### 다. 천해간척지의 개발

어민 소득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어업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연안 영세어민에 대한 생산의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서·남 연안일대에 전개되어 있는 천해간척지를 개발하고 수잉늪기 수출성이 좋은 백합·굴·해태등의 품종을 양산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이 시책에 따른 69년도 사업계획규모를 개관하면 백합·굴·해태등의 품종에 대하여 1,610백만원(정부 1,200백만원, 민간 410백만원)을 투입하여 약 2만톤을 생산 이중 약 1만톤을 수출하여 533만불의 외화를 획득할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시책의 수행은 우리나라 어업구조 개선 즉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69년도에 수산증식 개발의 기본이 되는 적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가용 적지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계속적으로 증식사업 추진을 위해서 64개 임해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중요품종인 백합·굴·반지락·해태·천초·미역등과 지역별 특산종에 대한 총 가용면적, 개발상황, 미개발 적지의 개발전망 그리고 여러가지 부수여건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수출성이 좋고 생산가치가 높은 품종을 선택 생산하여 연안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지역개발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품종의 생산을 장려하고 수출 판로의 개척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굴의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69년도부터 추진중에 있다.

굴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클뿐 아니라 주생산국인 일본이 생산보합내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양식적지가 풍부하여 생산잠재력이 크므로 개량 양식 방법으로 양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여 가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생산에 종사할 영세어민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의 해소와 나아가서는 가공 및 수출을 전담하게 되는 관리기업체로서 산업은행 전액 출자의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를 지정하여 어민과의 계약 양식방법으로 사업추진 중이다.

69년도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 양식시설에 15억원, 가공시설에 5억원을 투입하여 해마다 굴 17,000톤을 생산하며 이중 14,000톤을 수출하여 757만불의 외화를 획득할 계획이다.

#### 라. 원양어업진흥

우리나라 어업은 종래 연안의 협소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대상으로 경영되고 있어 그 경영이 영세함은 물론 생산성이 저조하던 까닭에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에 의하여 어업의 근대화를 도모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 근대화작업의 하나로서 연안 중심의 어업생산 구조의 개선에 시책의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

었으며 원양어업의 진흥이 바로 이 개선책의 실마리로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책방향의 전환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원양어장개발을 위한 조사 시험사업을 전개하고 어선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기 지어업지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신장에 노력하여 왔으며 69년도에는 원양어업자들의 국제경쟁조업에서 오는 과중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참치어업 출어자금의 금리를 26%에서 10%로 인하 조치함으로써 원양어업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중에 있다.

이외에 원양어업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실시중에 있는 69년도 시책중 특기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북양어장 개척

68년 수산개발공사소속 대형 스탠트롤어선에 의한 시험 조업이 성공적으로 끝남으로써 모선식 저인망어업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약간의 애로를 예상하면서 69년에도 신흥수산소속 9,400톤급 공선을 모선으로 하여 동사소속 독항선 12척 운반선 1척과 삼양수산소속 1,000톤급 운반선 2척으로 구성된 1개선단을 편성 출어케 함으로써 선단식저인망 조업에 의한 북양개척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수산개발공사에서도 68년도 1,470톤급 스탠트롤어선의 조업 성공에 이어 69년도에도 1,470톤급 이외에 220톤급 2척을 출어시켜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독항식 트롤어업에 의한 북양진출은 완전히 성공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 (2) 스탠트롤어업진출

66년 이래 68년에 이르기까지의 수산개발공사 스탠트롤어선에 의한 조업실적은 조업기술의 미숙과 어장 사정의 생소에 따른 시기별



어장의 선택적 조업 결여로 그 실적은 극히 부진한 상태였으므로 68년에는 1,470톤급 1척을 북양어장에 투입케 되었던 것이나 69년에 이르러 수공의 대서양 조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그 외에 매일 어업협력자금으로 투입된 780톤급 1척과 1,570톤급 대형스탄트롤어선이 69년 2월과 7월에 각각 대서양과 북태평양 어장에 출어하여 조업케 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조업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채산면에서도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 (3) 한국수산개발공사 운영개선

63년 7월 발족 이래 우리나라 해외어업진흥을 위한 선도적인 임무를 띠고 해외어장 개척과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헌을 한바 있으나 계속된 어획실적의 부진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었다.

특히 68년도에는 귀국 선박의 재정과 출어에 따른 조업일수의 단축으로 어획실적은 극히 부진하여 어획목표 29,630톤(\$8,544,000)에 대하여 12,369톤(\$3,692,000)을 생산함으로써 목표 대 실적은 41.7% (43.2%)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어획실적의 부진 요인이 운영체제상의 결함과 선원 급여제도의 불합리성에서 유래된 것임을 판단한 수공은 68년 후반기부터 69년초에 걸쳐 사업부제의 채택, 선원급여제도의 개선, 부적격 선원의 교체 등 과감한 운영개선책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69년 8월말 현재의 실적은 \$6,423,000로서 계획액 \$6,030,000에 대하여 7%를 초과 달성하였고 연간 목표의 67%를 달성함으로써 69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 어항시설의 확충

어업생산 수단의 보존과 어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어업의 안전조업과 능률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등 어항 수축사업을 계속 확장함으로써 어업생산의 유지증대를 도모한 것이며 69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은 기본시설로서 방파제 480m 물양장 700m, 선착장 200m를 신축하고 철부선 20척을 도입 주요어항에 설치하고 낙도의 어항시설로서 방파제 100m, 물양장 100m를 신축하는 한편 태풍에 의하여 파손된 방파제 200m와 선착장 150m를 복구할 계획인바 이와 같은 사업을 시공하기 위하여 664백만원의 공사비를 책정 이를 추진중에 있다.

#### 바. 수협제도 개선

수협의 존립목적이 어민들의 자율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들 스스로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므로 모든 업무는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과 봉사에 집약되어야 한 것이나 아직도 제도면에서나 경영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함은 물론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는 각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실현코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 (1) 재정적 자립도 향상

수협은 총재원 11,155백만원중 재정자금 차관 기타 금융차입등 대외의존도가 96%로서 재정적 자립도가 극도로 빈약하므로 재정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 수입율을 향상시키어 사업별 잉여목표를 설정하여 각 사업별 독립 재산제를 확립

한다.

(나) 자체자금 조성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배외 의존도를 격감시킨다.

(다) 수산 금융체제를 확립키 위하여 한국은행 직차입제를 추구하고 농협 전대금리를 조정하며 어협 여수신 업무를 확대한다.

(2) 운영체질의 개선

증가 일로에 있는 각종 사업과 어민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는 경영면과 운영체질의 개선이 요청되므로

(가) 임직원의 봉사 정신과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적재 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한 인사쇄신을 단행한다.

(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임직원 공동책임제를 실시하며 지도봉사사업을 강화한다.

(다) 어협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예방지도 감사반을 편성운영하며 어협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을 파감히 시정하도록 한다.

(라) 어민의 협동조합 참여도 향상을 위한 100% 가입 (현재 가입 51%) 을 적극 추진하여 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3) 정부시책 구현을 위한 어협체제 강화

각종 정부 위촉사업을 위시하여 정부시책을 어민조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가)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는 생산·수출 어촌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 수협자립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다) 사업계획내 실적의 확인과 심사분석제도를 확립한다.

### 3. 재정조치

이상과 같은 수산업의 중점시책과 이에 관련된 수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확보된 69년도 재정 투융자 예산은 5,028백만원이며 중요사업별로 보면 증식사업에 758백만원 어항수축에 664백만원 어로시설에 1,844백만원 처리가공시설에 387백만원 수산시험 및 검사시설에 321백만원을 투입키로 하는 한편 수산자금으로 830백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표 56)

수산부문 투융자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년도별	69년도예산	68년도예산	증 △ 감
증식사업비	758	393	365
어항수축비	664	560	104
어업기본시설비	88	98	△ 10
어로시설비	1,844	2,097	△ 253
처리가공시설비	387	877	△ 490
원양어업지원비	62	23	39
수산자금	830	555	275
수산시험 및 검사시설비	321	362	△ 41
어촌지도비	45	35	10
수산업센서스	29	-	29
지도선및 실습선시험선건조	-	152	△ 152
계	5,028	5,152	△ 124

#### 4. 입법조치

어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새로이 제정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가. 어항법

- (1) 어항시설을 기본시설과 기능시설로 구분
- (2) 수산청장 소속하에 어항수축 사업소를 두고 어항수축사업을 실시
- (3) 수산청장이 어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할 때에는 관한 도지사의 의견과 어항 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4) 어항은 그 종류에 따라 수산청장과 관한 도지사가 각각 관리
- (5) 어항의 지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 심의회를 설치
- (6) 어항수축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이 행하도록 규정
- (7) 국가 또는 사업자가 어항 수축사업의 시행 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수면의 일시 사용권을 부여
- (8)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사용료 징수권한을 부여

#### II. 어업자원의 유지와 어업조정

##### 1. 어업자원의 번식보호

##### 가. 보호수면관리

각종 공장 오폐수와 남획으로 인한 자원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용수산동식물의 영속적인 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68년도에 수산업법 제6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남해의 5개도 연안에 12개소의 보호수면을 지정하였으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보호수면지정의 이의를 제고키 위하여 년2회(4, 7월)에 보호수면내의 자원현황과 치패생산량을 파악하여 수급계획과 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있다.

#### 나. 수질오탁방지사업

근래 각종 대규모의 공장이 임해지역에 설립되어 그 폐수가 연안에 다량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탁문제가 급격히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산업의 발달 및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등으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해수오염방지를 포함한 수질오탁방지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며 이 법에서는 국민보건위생상의 위생방지수산자원의 영속적인 번식보호 그리고 타산업간의 분쟁조정등 평범한 규제를 목적으로 현재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법안을 작성중에 있다.

한편 해수오탁으로 인한 수산동식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9년도 예산에서 8,929,200원의 약품구입비를 책정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 2. 어업자원의 증식

### 가. 치어의 인공방류

우리나라 내수면의 자원증강과 번식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69

년도에는 잉어 및 연어 2종의 치어를 인공방류 하였다. 잉어치어는 특히 67년과 68년의 2개년간 심한 가뭄으로 자원이 고갈된 호남지방의 저수지 및 호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의 4개소에서 160,000미 전라남도의 5개소에서 340,000미, 계 500,000미를 방류하였다.

한편 60년의 사라호 태풍으로 부화장시설이 유실된후 연어치어의 인공방류는 중지되어 왔으나 67년의 연어 송어개발을 위한 한미합동 조사결과 감소일로에 있는 한국의 연어자원 번식 부활책으로서 강구·삼척 밀양에 현대적인 연어부화장을 시설 미국산 연어알 600,000립을 기증받아 부화하여 69년에 243,000미를 밀양강에 방류하고 243,000미는 현재 사육중에 있다.

#### 나. 어업종묘 및 종패생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정책전환의 일환으로서 서남해안 일대의 유향 천해간석지를 개발하여 선택적 생산에 의한 수출증대를 기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요소는 각종 수산종묘 및 종패의 생산공급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66년부터 착수한 충남 서산군 안면면 창기리 지선 32ha (시설 45ha) 와 68년부터 착수한 경남 통영군 산양면 세포리 지선 37ha (시설 2,6ha)의 종묘배양장 시설을 69년도에도 계속 추진중이며 두 종묘배양장에서 새우종묘 505만미 미역종자 34만m, 해태채묘 500채분을 생산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표 57)

## 종 모 생산 계획

(단위 : 천원)

도별 품 종 별	충남종모배양장			경남종모배양장			소 계		
	생 산 능 력	70년 이 후 생 산 계 획	생 산 액	생 산 능 력	70년 이 후 생 산 계 획	생 산 액	생 산 능 력	70년 이 후 생 산 계 획	생 산 액
새 우 (천 미)	15,000	10,000	10,000	10,000	50	50	16,000	10,050	10,050
미 역 (천 m)	5,000	300	6,000	500	100	1,500	5,500	400	7,500
해 태 (책)	2,000	1,000	200	250	250	50	2,250	1,250	250
꽃 (천 미)	3,000	2,000	2,000				3,000	2,000	2,000
전 북 (천 미)	500	100	500	1,000			1,500	100	500
백 합 (M/T)	70	140 (년 2회 생산)	2,800				70	140	2,800
문 어 (미)				5,000			5,000		
계			21,500			1,600			23,100

백합 종패장 시설사업은 확대일로에 있는 백합양식 사업의 중요한 지원사업으로써 계속적인 종패수급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68년도에는 4차에 걸쳐 종패주산지인 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등 5개도에 12개소(총면적 2,328.9ha)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으며 69년도는 경특 자금으로 10,000천원(각도 2,000천원)을 보조하여 1,579.4ha의 백합종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표 58 )

## 백합종패보호구역지정 및 69년도사업규모

(단위 : 천원)

도 별	보호구역설정		백합종패장 조성 사업					비 고
	개소	면적	시설장소	면적	보조	자담	계	
경 기	5	ha 317	부천·대부 남리	ha 50	2,000	500	2,500	수산청고시 33호
충남	1	71.5	보령·웅천 광암	30	2,000	500	2,500	" "
전북	2	1,200	옥구·미면 옥구·옥구면	1,200	2,000	500	2,500	" 13호 " 34호
전남	2	363	영광·염산 야월	20	2,000	500	2,500	" 25호
경남	2	377.4	하동·금남 갈사	279.4	2,000	500	2,500	" 21호
계	12	2,328.9		1,579.4	10,000	2,500	12,500	

69년도 백합종패 수급계획을 보면 소요량은 67년까지의 기존시설 1,000ha에 1,000 M/T (ha당 1 M/T), 신규시설 1,700ha에 5,100 M/T (ha당 3 M/T), 계 6,100 M/T임에 대하여 생산계획은 보호구역 생산 4,403 M/T, 자연산 2,870 M/T, 계 7,273 M/T으로서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기된다.

( 표 59 )

69년도 백합종패수급계획

도별	소요면적 (ha)				종 패 소요량 (M/T)	종패생산계획 (M/T)		
	기존시설	경북	농어민	계		보호구역산	자연산	계
경기	130	300	-	430	1,030	420	790	1,210
충남	110		400	510	1,310	400	80	480
전북	230	50	500	780	1,880	3,000	-	3,000
전남	420	250	150	820	1,620	363	2,000	2,363
경남	110	50	-	160	260	220	-	220
계	1,000	650	1,050	2,700	6,100	4,403	2,870	7,273

다, 원양어장개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57년도 참치 연승어업의 해외어장 진출을 효시로 해마다 급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금에 이르러서는 진출업종의 다양화 출어장의 확대 등에 의한 원양어업의 다각적인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원양어업의 발전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어장조사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6년도에 정부 조사선에 의한 최초의 북양어장 조사사업이 실시된 이래 매년 어장조사를 계속하여 왔으며 68년이후에 정부조사선에 의한 어장조사와 민간어선에 대한 위탁시험 조업으로 신어

법 신어장 개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69년도에는 북서태평양의 풍치 봉수망 어장조사를 계획하고 20,000천원을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보조하여 130톤급 어선 2척과 338톤급 운반선 1척을 출어시켜 실험조업토록 하고 있다.

이 시험조업의 성공은 우리나라 원양 참치어선의 자체공급체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3. 어업조정

#### 가. 정치어업조정

각종 어선어업의 확장과 어로장비의 강화로 연안의 정치어업은 상호어장의 보호구역 서축으로 기업성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53.4.11 수산업법(법률 제1321호) 개정 이래 구획제 어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밀한 현존 정치어업권을 정치어업권보상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255호)에 의하여 자기 독립된 보호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는바 67년에 99건 68년에 71건 이어 69년에는 37건을 정비하여 47,500천원을 보상코자 계획하고 있다.

#### 나. 근해어업조정

우리나라 연근해 어족자원은 현상상태에서 감소 경향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어선의 대형화·마력강화·장비개량등의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연근해어장에 대한 어획노력이 보다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정해역에 대한 어획노력의 강화는 해역 어족자원에 미치는바 영향이 클 것이므로 대형어선의 원양어장진출을 강력히 추진하며 대형

기선 저인망어업에 대하여는 타어업과의 조정 및 대상자원 추세등을 연구·검토하여 적정허가 정한수를 규제할 계획이며 중형기선 저인망 어업과 새우트롤어업의 정한수는 현상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 Ⅲ. 어업생산성 향상과 생산기반확충

### 1. 어업생산수단의 확장과 개선

#### 가. 어선건조

어업의 진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어업생산수단의 기본이 되는 어선세력을 확장하고 성능을 개량하고자 일반재정자금 290백만과 청구권자금 885백만원을 투입원양어선 6척(2,600톤), 근해어선 6척(600톤), 연안어선 280척의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근해어선 5척은 이미 진수하여 출어중이며 나머지 어선에 대하여도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사업으로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비 458백만원으로 연양어선 220척, 수산물 수출진흥비 1억원으로 5톤급 장어연승어선 100척을 건조중에 있으며, 한편 영·호남지방의 피해어선 675척을 복구요자 어로시설비 집행잔액 54백만원을 지원하여 완전복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표 60)

## 69년 어선건조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 업 량	예 산 내 역			
		보 조	용 자	자 담	계
( 경 특 )					
근 해 어 선	600(6척) 톤	27,225	27,225	127,050	81,500
원 양 어 선	2,600(6")	117,975	117,975	550,550	786,500
소 계	3,200(12")	145,200	145,200	677,600	968,000
( 청 특 )					
소 형 어 선	150(30")	12,600	29,400		42,000
목조소형어선	1,000(100")	60,000	140,000		200,000
중 형	2,000(100")	138,000	253,000	69,000	460,000
강 조 중 형 (지도공동운반선)	200(10")	15,979	37,285	-	53,264
강 조 중 형 (지도단속선)	1,000(40")	198,400	-	49,600	248,000
소 계	4,350(280")	424,079	459,685	118,600	1,003,264
합 계	7,550(292")	570,179	604,885	196,200	1,971,264
( 추가사업)					
장어연승어선	500(100")		100,000		100,000
추가연안어선	2,250(220")		458,000		458,000

나. 동력개량

우리나라 무동력어선 및 저효율 기관설 치어선은 총 어선 세력의 90% (척수비율)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무동력 및 저효율기관의 동력화와 기관대체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69년에 4,398백만원을 투입 22,000마력의 동력을 개량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업의 안전을 도모코자 계획하고 있다.

(표 61)

69년도 동력개량사업 계획

(단위 : 천원)

회 계 별	물 량	사 업 비			
		보 조	용 자	자 담	계
경 특	1,000 마력	4,800	19,200	-	24,000
청 특	21,000	92,400	323,400	46,200	462,000
계	22,000	97,200	342,600	46,200	486,000

다. 장비개량

어선의 장비개량사업은 어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구조의 변화로서 안전한 조업과 어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험이나 육감을 통하여 행하던 비능률적인 어업경영방식을 지양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향시키기 위하여 69년도 청특자금 78,147.5천원으로 S.S.B. 200대 방향탐지기 25대, 발전기 50대, 잠수기어업용공기압축기

50대를 공급설치코자 계획하고 있다.

한편 모든 어선의 장비 및 기관에 대한 어민의 지도계통을 위하여 조작 기술보급과 고장이나 피해등으로 인한 수리점검을 행하여 기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69년도 정특자금 31,500천원을 투입하여 박용기기정비소 3개소를 설치중에 있다.

(표 62)

69년도 장비개량사업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물량	사업비내역			
		보조	용자	자담	계
S. S. B.	400	5,780	36,820	-	52,600
방탐기	25	2,681	1,256	-	3,937
발전기	50	2,508	5,852	-	8,360
공기압축기	50	2,475	5,775	-	6,250
소계	325점	23,444	54,703	-	18,147
박용기기 정비소	3개소	9,000	22,500	13,500	45,000
합계	328점	32,444	77,203	13,500	123,147

2. 어업생산기반 조성

가. 어항 확충

(1) 어항수축

어항은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어획물을 신속히 양육처리케

하고 모든 선수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는등 어업경영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다.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 1차 5개년계획 기간중 25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제 2차 5개년계획 (조정안) 기간중 약 3,74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69년도에는 38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요어항 14개항중 7개항에 154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항을 완성하고 낙도어항 5개항을 대상으로 7개단위사업에 170백만원을 투입 3개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일반어항은 각 도지사로 하여금 78백만원을 위임집행케 하여 43개항중 31개항을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 표 63 ) 69년도어항수축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또는 규모	금액 (백만원)
1. 기본 시설	1,380 m	
방파제	20척	490
물양장	480 "	192
선착장	700 "	146
철부선	200 "	20
부대비	20척	119
		13
2. 낙도어항 시설	200 m	115
방파제	100 "	100
물양장	100 "	10
부대비		5
3. 피해 복구	350 "	13
방파제	200 "	10
선착장	150 "	3
4. 기본 조사	25개 항	5
5. 장비 운영 관리	6대	35
6. 관리비		6
합 계		664



## (2) 어항보수

어항은 풍랑과 파도가 심한 해중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연례적인 태풍내습시마다 어항시설의 피해는 막심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피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항 피해는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연차별로 집계된 어항시설 총피해액은 600백만원에 달하나 이의 복구실적은 163백만원에 불과하여 437백만원 상당의 피해시설을 복구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피해가 발생한 어항에 대하여 완전 복구를 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더욱 피해가 가중되어 가고 있다.

69년도에는 13백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피해어항중 특히 긴급을 요하는 13개항을 선정하여 7개항을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 나. 어업기본 시설

주요 어항에 급유·급수 및 공동창고 시설을 확충하여 출어어선의 급유 및 급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산물 및 어구등의 안전보관을 위하여 69년도에 90백만원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표 64 )

## 69년도어업기본시설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물 양	규 모	사 업 비			
				보 조	용 자	자 담	계
급 유 시설		16개소	10,900 %	40,990	8,990	8,000	57,980
급 수 시설		6	-	4,200	4,200	-	8,400
공동창고시설		10	450 평	5,960	-	5,960	11,920
보급시설확장		5	수원지 1·급수 급수·급유 3	6,310	2,110	1,800	10,220
유류계량기		20대	-	1,500	1,500	-	3,000
계		37개소 20대		58,960	16,800	15,760	91,520

## 다. 수산공제사업

예상하기 곤란한 수산업의 재난을 상호 공제함으로써 수산업의 유지발전과 어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여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수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가입대상 (어선·선원·시설)의 증가로 연차사업의 확장을 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이 불충실하여 정부에서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어선공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을 책정 (인정) 하고 목표액이 달성 될 때까지 기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69년도에도 9,7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표 65 )

## 국고보조금교부실적

(단위 : 천원)

종 별 년 도 별	어선공계	선원공계	합 계	비 고
54~62	58,029	3,381	410	
63	4,824	75	4,899	
64	5,000	2,000	7,000	
65	5,000	2,900	7,900	
66	5,000	2,900	7,900	
67	10,000	-	10,000	
68	5,000	-	5,000	예산액 10,000 천원 예산절감 50%
69	9,700	-	9,700	예산액 10,000 예산절감 3%
계	102,553	11,256	113,809	

69.6.30 현재 수협중앙회가 적립된 공계 기금은 어선공계 525,979천원 선원공계 34,938천원 시설공계 14,157천원 계 575,074천원으로서 현기금 보유액만으로도 평균 조난율(가입액의 약 1.5%)에 따른 공계금 지급은 무난한 것이나 과거(칼헬이나 사라호 같은 태풍)와 같은 돌발적인 이상재난(평균 조난율의 약 3배)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정부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의 안정성과 가입자들의 불안을 제거하여 항구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 표 66 )

## 공 제 기 금 적 립 사 항

( 69.6.30 현재 ) ( 단 위 : 천 원 )

구분 종별	68년까지	69년당년도	지금까지누계	비 고
어 선	458,921	67,058	525,979	어 선 만 기 공 제 적 립 금 포 함
선 원	30,921	4,074	34,938	
시 설	10,512	3,645	14,157	
계	500,297	74,777	575,074	

한편 수협중앙회에서는 69년도 자체사업계획을 세워 어선 163,550톤 선원 11,000명, 시설 1,356건의 자진가입을 목표로 어민을 계몽 유도하고 있다.

( 표 67 )

## 69 년 도 공 제 사 업 추 진 제 획

( 단 위 : 천 원 )

구분 종별	가 입 목 표 량	가 입 목 표 액	공 제 료	비 고
어 선	163,550 <sup>톤</sup>	7,810,114	176,355	
선 원	11,000 <sup>명</sup>	440,000	5,280	
시 설	1,356 <sup>건</sup>	4,246,608	25,101	
계		12,496,736	206,736	

#### Ⅳ. 기술개발의 촉진과 어업지도

##### 1. 어업기술개발촉진 및 교류

###### 가. 조사연구사업의 강화

국립수산진흥원은 우리나라 각 해역별 지리적 특성에 입각하여 어가경영의 안정과 어민소속 증대를 위한 연근해 어업지원의 합리적인 생산과 증 양식사업의 개발 및 동 어획물의 가공 유통에 관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구로시오 국제합동조사 한일어업자원 공동조사등 국제합동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자원개발 이용을 위하여 동해 연어·송어 어업, 북태평양 꽂치어업, 참치 이료 대체 시험등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69년도 각 부문별조사 연구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조사

한국근해의 동·남·서해역은 각각 상이한 해양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난류와 한류 연안수와 냉수대의 이동에 따라 수온 염분의 분포·변화가 심하며 이로 인한 어종별 내유량, 어장형성의 시기 및 해역이 달라진다. 이러한 해황의 변동에 따른 고등어·정갱이·조기·꽂치 오징어 및 기타 중요어종의 어장형성과 해황의 관계를 조사규명하여 어종별·해역별·월별 어장도 및 해황도를 작성하여 어민에게 공표하고 어민의 능률적인 어장 탐색 자료로서 어획증산에 이바지 하고자 한국 근해 23개관측 정선에 대한 연 4회의 동시 관측과 2회의 쿠로시오 국제합동조사 및 연안 냉수대관측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과거에 조사한 8개년간의 관측 자료를 종합정리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연안어업과 관계가 깊은 연안수온 및 천기관측업무는 41개소의 관측점에서 매일 실

시 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정선관측 자료와 함께 각 해역의 해황 및 어황정기 예보자료 (연 15회) 에 또한 중앙식환경 판단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가) 정선 해양관측실시

한국 근해의 23개 정선해양관측점에서 4월과 6월에 4척의 시험선으로서 동해·남부해·동해·남해·서해의 일제 해양관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항목과 자료분석진도 및 현재까지의 활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7월말 현재)

① 측은 및 채수

23개 정선 238정에서 0 m에서 500 m까지 14개층을 수온 측정 및 채수함.

② B.T 및 G.E.K 관측

격점으로 B.T 관측을 행하고 동해의 몇 개점에서 G.E.K 관측을 실시중에 있다.

③ 대한해협 해류관측

2, 4, 6월에 207의 0.1, 0.3, 0.5 점에서 각각 유향 유속계로 측류하고 동 자료를 분석중이다.

④ 해수분석

각 관측점 수층별로 채수한 염분 산소 염양염류 및 PH 분석용 시수 18097병을 분석완료 하였다.

⑤ 부유생물조사

수직·수평채집 샘플 528개에 대하여 전량조사를 완료하고 해역별 양의 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남·서해분은 고등어의 식이 회유와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분석고찰중에 있다.

⑥ 현재까지의 조사자료 활용상황

6 회의 해황어황예보 발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중요어종의 어장형성에 축을 위한 장기예보 및 속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시 중요어종별·해역별·월별어장도 해황도를 작성하여 해황과 어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료에 공여하고 있다.

(나) 연안 정지관측 실시

41개 연안정지 해양관측점에서 매월 오전 10시 표면 수온 및 기상 관측을 실시중에 있다.

(다) 쿠로시오 국제합동조사

쿠로시오 한국담당해역 272개 관측점에 비하여 3 척의 시험선으로서 2월에 관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자료는 선망어업 및 조기어업의 해 어황예보 자료에 제공하는 등시 공동 조사국과 자료를 교환하여 동지나해 일본서해 및 우리나라 근해를 부상하는 난류의 해양학적 연구 자료를 수립하였다.

(라) 동해 냉수괴, 조사

오징어·어장형성과 관계가 깊은 동해 냉수괴에 대한 관측을 7월에 실시하여 어장형성에 대한 예보를 하고 그 성장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2) 자원조사

(가) 한일 어업자원 공동조사

한일어업 협정에 의한 어업자원 공동조사는 한일어업 공동규계 및 그 외측 조사수역에 있어서 기선 선망어업 대상인 부어 3종(전갱이·고등어·점고등어) 기선저인망어업 대상인 저어 6종(참조기·부구치·칼치·참돔·갯장어·대하)에 대한 계통군 및 생활사 자원동태 및 환경요인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조사 자료 및 결과는 한일공동 규계수역 및 공동 자원조사 수역에 있어서의 자원상태

심의 자료로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나) 연근해 자원동태조사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자원개발과 자원동태 파악이란 전지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중 7개 중요어업 (꽂치·유자망어업 명태자망어업 안강망어업·삼치유자망어업·조기유자망어업·멸치 자망어업)에 대한 자원동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 어황예보 및 어장지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황·해황 변동을 어민에게 알려서 그 조업활동을 돕기 위하여 본원 및 각 해구 시험소에서는 어황예보 및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어업과 예보방송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어업명 : 꽂치유자망·오징어·일본조 명태자망 및 연승·멸치자망·고등어·정경이신망·조기안강망 및 유자망실시 유자망

② 해 어황예보 종류 : 본원 (해·어황장기예보·원간예보 및 주간방송) 해구시험소 (해·어황방송) 또한 이들 어업에 대한 어장 탐색 및 어업지도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3) 증식개발

(가) 수산 증식개발 조사

우리나라 주변의 광대한 간석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연간 9개시도의 적극 천해간석지에 대하여 증식적지와 적종을 통일된 조사양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하여 증식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본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조서에는 패류·해조류 기타 생물을 대상으로 적지면적·적지등급·개발현황·개발계획·생산통계개발에 따른 사회환경 및 개발 애로사항등이 각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다.



(나) 어류축양시험

활어의 배일수출 증대와 출하조정상 필요한 축양 기술개발 시험으로서 중요한 활어·새우·복어·방어·돔·문어·멸치등의 망할책에 의한 사육 및 축양에 관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본 시험연구의 중요내용은 종묘확보 및 운반방법, 망할책재료와 구조개량, 방양밀도와 성장률 사료종류와 급이량어병대책등이며 아울러 축양에 따른 기술의 개발과 경제성의 고찰이 수반되고 있다.

(다) 종묘생산시험

단백질 공급원의 확보와 유향 내수면개발을 위하여 유용재래 담수어민 잉어·미꾸리·초어·백연어에 대해서는 진해 담수구 시험소와 청평분소에서 인공부화 및 성육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해구 시험소 여수분소에서는 보리새우를, 제주 해구시험소에서는 미역·전복을 인공부화 내지 인공채묘하여 육성하는 시험을 실시중이며 서해구 시험소에서는 백합종묘 생산을 위한 자원보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 해태자재 및 품질 개량시험

본 시험은 수출 해태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량자재 즉 쿠레모나 및 팜망을 사용한 망할책재개량에 의한 해태 양식 비교시험과 산지를 달리하는 해태종묘 사상체의 이식시험 및 해태 갯병대책을 위한 병동 채묘망의 실용화에 대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낙동강·완도산의 종묘를 배양관리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3월에 걸쳐서 본격적인 양식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 다시마 양식시험

68년도에 성공한 다시마 인공채묘시험결과 금년도에는 월동시킨 종묘를 동해안에 이식하여 그 성육성적을 조사중에 있다.

본 시험은 동계 종묘 수송방법 및 양식적지의 선정문제가 특히 중요

한 과제이다.

(바) 굴, 양식단지 조성시험

금년 굴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굴 양식방법은 그 시설규모가 1대당 40 m<sup>2</sup> 내외의 소규모이고 수하연도 4~5 m 정도로 짧기 때문에 경제성이 희박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대단위 단지조성과 완전 국산기자재에 의한 양식방법 개발시험을 실시하고자 채용되는 대로 10월 하순에 수하성육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4) 어선어구

(가) 어업시험

현행의 각종 집어등 어업 (기선 선망어업 오징어 일본 조어업 멸치 분기초망어업등) 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어등의 집어효과와 그 수중 조도 (광도) 에 대한 어종별 군집 행동을 조사·연구하여 집어등의 개량보급과 새로운 집어등어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콩치와 멸치에 대하여 각종 집어등 (백열등 수은등 형광등) 의 등질 색광 및 색광도에 따른 어군의 유집 분산에 관한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어구개량시험

① 저인망 및 안강망어구의 개량을 위한 어구 모형 시험을 국내외의 어망자료를 사용하여 비교 시험중에 있다.

현재 저인망어구 모형 5종 안강망 어구 7종에 대하여 어구성능 경제성능 비교 고찰을 실시중에 있으며 생산성과 경제성이 높은 우수한 어구가 결정되는대로 업계에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② 삼치 및 조기 유자망의 어구 자체개량과 적정 망목구명을 위한 어획비교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에 사용하고 있는 이

구자재의 망목은 Polyamide계의 Multifilament 210D×9와 Monofilament 9호의 90~120% 망목 6종이다.

현재까지의 시험 결과는 삼치 및 조기유자망에 있어서 Mono 망이 Multi망의 1.5배 이상의 어획성적이었다.

현재와 같이 이 시험성고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Mono망의 사용 장려로서 어획증산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③ 오징어 자동조획기 시험은 8월부터 시험전 1척과 민간 위탁시험선 2척 계 3척이 자동조획기 30대 수동식조획기 6대 기타 일본조구 10여개를 사용하여 어획비교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 어선개량시험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에서 가장 많은 유자망 및 일본조 연승어선 가운데서 5Q/T 25Q/T 급 어선을 선정하여 목조선과 F. R. P 선별로 구조선형 건조 및 보수등과 복원력 안전도 경제성등의 문제점을 비교 검토코자 추진중에 있다.

즉 이들 시험은 각종 해상시험 모형수조시험을 실시한 후 어선설계서를 작성한 것이며 시험을 통하여 연안 어선의 선질개량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애로를 극복하여 그 방향을 설정케 할 것이다.

#### (라) 동해 연어·송어 어장조사

68년에 동해의 연어·송어 어장조사 및 어구 어법시험을 실시하는데 이어 금년도에는 기업 채산시험을 위한 시험 조업을 실시하였다.

3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76일에 걸쳐 시험선은 실제조업 30일간에 30~50cm의 송어류(주로 곱상어)를 10.3M/T 어획하여 시험어업을 성공하였다.

송어의 어장은 3월 하순에 울릉도와 죽변간이었고 4월에는 울릉도

북방 30마일 해역이었으며 5월에는 울릉도 북방 30~90마일 해역으로 이동하였다.

본 시험조 조업에 사용한 유자망의 망목은 79~95%가 전어기를 통한 적정망목이었으며 자재별로 보면 PamoNo 망이 Multi 망보다 약 2배의 어망률을 보였다.

#### (마) 콩치 봉수망 시험어업

현재 우리나라 원양 참치 연승어선의 출어선 수는 약 200 척에 달하여 이료구입에 소요되는 외화는 연간 500만불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참치 연승어업 이료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콩치의 국내생산 및 보급이 시급한 바 동해 유자망어업에 의한 콩치는 어채 손상 선도불량으로 거의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봉수망어업에 의한 콩치 어획시험을 실시하여 어획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코자 본시험어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3월부터 6월 30일 현재 춘계콩치에 대한 어획실험 결과는 극히 불량한 편인바 그 주된 원인은 회유 적수온대의 확대로 어군 군집이 불량하고 산란 회유로 인한 추광성 부족으로 추측한다.

본 시험어업은 추계남하군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후 봉수망 어업성립에 대한 종합검토를 할 계획이다. 본 시험에 관련하여 9.10 2개월간은 한국수산개발공사 어선이 북서 태평양 콩치시험 어로차 출어할 계획인바 수산진흥원 시험선이 지도선으로서 출어하여 동지역에 있어서의 어획성과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체 이료개발로서 본 참치 연승이료 국내 공급문제를 해결코자 먼저 원양어업 기술훈련소소속 실습선 진달래호에 위탁 실시한 도루묵·고등어·오징어류 이료의 조획시험 결과가 입수된바 동해 봉수망 콩치가 1위, 2위가 일본산 콩치, 3위가 도루묵, 4위이하 자망콩치 살 오징어 봉합 콩치·고등어 순위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도루목의 조획율이 이외에도 양호한 시설이며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업의 이료 공급 자립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이용가공부문

##### (가) 어획물 취급관리 개선지도

이 사업은 69년도 수산중점시책의 하나인 어획물 품질 고급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어선승선지도 현지 순회교육과 선도검사 기준개정에 관한 시험으로 구분되며 승선지도는 교육된 지도원이 어선에 승선하여 어획물의 전상 취급과 입상방법을 지도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기선 저인망·안강망 어선 150척에 대하여 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획물 취급방법에 관한 팜플렛 슬라이드 및 영화를 제작하여 14개 중요어항에서 현지어민 및 어시장 종사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어종에 대한 선어감사 및 선도 향상 방안에 관한 시험을 실시중에 있다.

##### (나) 배합사료 개선시험

이 시험은 사료제조시험과 투이 사육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료 제조시험은 경제성에 입각한 원료의 질적·양적 확보와 사료 제조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것이며 투이 사육시험은 사료 종류별 심이 소화율 및 성장도비교에 중점을 두고 채산성등을 고찰 사료개발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연내 3종 600kg의 시제품을 각 어종에 투이시험할 계획입니다.

##### (다) 굴 위생시험

매미 냉동굴 수출에 수반되는 위생 협정체결자료로서 굴 양식장의 세균 오염상태를 66년부터 진동만 충무연안등 양식시설이 집중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미국 당국에 제출한바 있다.

또한 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출에 따른 위생관리에 대한 제반문제의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동 굴조사단은 그들 보고서에서 육수의 오염이 적은 지역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토록 권고한바 있어 69년도 굴 위생시험은 비교적 인가가 적고 하천·육수의 유역이 적은 한산도 연안 굴 양식장을 택하여 월별로 해수 및 굴의 오염도를 측정 분석하고 있다. 본 조사가 종결되면 금년까지의 시험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대미교섭자료로서 제시할 계획이다.

#### 나. 어업기술자 양성

##### (1) 연근해 어업기술훈련소

한국정부와 UN F.A.O 간의 협정에 의하여 UN 특별기금 1,068,500 \$ 한국정부 부담금 1,481,871 \$ 제 2,550,371 \$의 재원으로 68년부터 72년까지 4개년동안 연간 300명의 연근해 어업기술자(하급해기원)를 양성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68.7.1.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동사업운영계획서가 68.12.13. 서명됨에 따라 그간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및 서당을 비롯하여 실습시설공사를 끝내고 69.7.8. 개소하였다.

훈련은 을종과정과 병종과정으로 구분하여 육상 및 해상실습을 병행 실시한다.

훈련생의 해상실습에 필요한 훈련선은 4척으로 2척은 한국정부부담금으로 현재 부산에서 건조중이고 2척은 UN 특별기금부담으로 일본에서 건조중이며 오는 11월말경 인수할 예정이다.

현재 을종과정 20명을 훈련중이며 이외에 을종과정 30명 병종과정 60명을 더 훈련시켜 69년에는 제 110명의 연근해어업기술자(하급해기원)를 양성키로 되어있다.

## (2) 원양어업기술훈련소

61.4.21. 대한민국정부와 UN 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원조에 관한 협정 제1조제2항에 의거 64.11.13. 한국정부와 UN F.A.O 간에 체결한 원양어업기술훈련사업운영계획서에 의하여 UN 특별기금부담 1,241,300\$와 한국정부부담 1,620,525\$ 계 2,861,825\$의 재원으로 65.7.1. 부산에 한국원양어업기술훈련소를 설치하여 65년부터 69년까지 5개년동안 연간 150명의 원양어업기술자(고급해기원)를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족한 어선해기원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68년부터 사업을 확장 100명을 증원하여 연간 250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167명이 훈련중에 있다.

이 훈련소는 어업기술자 양성의 핵심기관으로서 육상과학과 해상실습을 실시하며 특히 해상실습은 현대장비를 갖춘 참치연승 훈련선 2척과 트롤훈련선 1척으로 남태평양 및 싱가포르 근해에서 원양실습조업을 실시중에 있다.

## (3) 국립수산 기술훈련소

국립수산기술훈련소 직제(대통령령 제3686호)에 의거 69.1.20. 발족한 본 훈련소는 총예산 10,174,900원으로 어민 160명, 수산기조반 공무원 50명, 수산직무반 공무원 100명, 어촌 지도원 250명, 계 56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69.5.30. 현재 어민 42명, 수산기조반 46명, 수산직무반 94명, 어촌지도원 240명, 계 422명의 교육을 완료하였다.

## 다. 기술교류

69년에 각종 외원자금(청구권자금포함)으로 중식 12인, 제조 8인, 자원조사 4인, 기타 5인, 계 29인의 연수생을 해외에 파견하는

한편 청구권자금으로 일본에서 수산전문가 보리새우·대하) 2명을 초청코자 계획하고 있다.

(표 68) 69년도 해외연수생 파견계획

분야 \ 자금별	청구권 자금	UN	한서	Colombo Plan	AID	기 타	계
수 산 증 식	7	3	-	-	-	2	12
수 산 제 조	4	1	3	-	-	-	8
해 양 어 장	1	-	-	-	-	-	1
연근해어업조사	3	-	-	-	-	-	3
협동조합경영	-	-	-	-	-	1	1
수 산 자원조사	-	-	-	-	4	-	4
계	15	4	3	-	4	3	29

그외에 인도네시아등 3개국에서 국비로 수산기술자 4인을 초청 부산소재 원양어업기술훈련소에서 훈련중에 있다.

(표 69) 69년도 해외기술자훈련계획

분야 \ 구 분	국 적	인 권	기 간	비 고
Trawl	인도네시아	1	3개월	69.8.18부터
Trawl & Long Line	마레이시아	1	"	훈련 실시
Trawl	우 간 다	2	"	"
계		4		



가. 어로지도 보호

(1) 서해어로 보호지도

조기 성어기에 서해어로 한계선 근해로 집결 출어하는 어선의 복귀에 의한 피납·포격등 제반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조업을 보장하고자 내무부(해양경찰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69.3.15.부터 6.30.까지 경기도 부천군 덕적도에 어로보호본부를 설치 운영하였다.

동기간중 본사업의 운영과 출어어선의 조업 및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예년 어로보호기간동안 출어선 등록척수는 약 1,000척 내외였으나 금년에는 어로한계선 남하조치로 출어척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800척으로 계획하였던바 507척이 등록하였을 뿐이다.

(나) 어로보호기간동안 어로한계선 근해 조기어획량은 예년 10,000 M/T 을 상회하였으나 금년에는 조기 주어장이 축소되었음을 감안하여 어획목표량을 6,000 M/T으로 계획하였던바 5,832 M/T 을 어획하여 97.2%의 실적을 나타냈다.

(다) 복귀에 의한 어선납북사고는 없었으나 어로한계선 월선 7척 불법어업 2척의 위반어선이 적발되어 68척을 입건 송치하고 8척은 훈방조치하였다.

(라) 조업중 표류 20척 침몰 3척 화재 1척 계 24척의 조난어선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표류선박 20척은 전부 구조되었다.

(2) 동해어로 보호지도

명태 성어기에 동해어로 한계선 근해로 집결 출어하는 어선 복귀에 의한 피납 포격등 제반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67.11.1.부터 70.1.30.까지 3개월간

결처 내무부 주관하에 수산청 강원도 수협 및 해군이 협조하여 출어 해역의 경비를 강화하고 출어선의 등록과 통제를 행하며 위반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어획목표량 9,000 M/T의 어로작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나. 부정어업단속

수산관계 제반 법규위반어선에 대하여 본청 및 각시도의 어업 감독 공무원을 파견 지도선 21척을 동서남 전해역에 걸쳐 운항 단속함으로써 69.6.30. 현재 804건을 검거하여 이중 408건을 기소하고 227건을 훈방하였으며 나머지 169건은 처리중에 있다,

(표70)

부정어업단속 및 처리상황

69.6월말 현재

구 소 속 별	검 거 상 황											
	기 저 어 업	잠 수 기	권 현 망	자 망	안 강 망	기 타	계	기 소	불 기 소	훈 방	미 제	계
본청	64	4	-	-	-	14	82	68	-	-	14	82
부산	-	9	-	-	-	-	9	6	-	-	3	9
경기	-	-	-	86	1	157	244	11	-	221	12	244
강원	41	16	-	-	-	5	62	32	-	6	24	62
충남	9	1	-	8	3	2	23	8	-	-	15	23
전북	40	5	-	-	-	-	45	32	-	-	13	45
전남	78	2	5	30	-	17	132	95	-	-	37	132
경북	64	36	-	1	-	19	120	102	-	-	18	120
경남	22	14	-	14	1	19	70	48	-	-	22	70
제주	8	9	-	-	-	-	17	6	-	-	11	17
계	326	96	5	139	5	233	804	408		227	169	804

### 3. 어촌지도

#### 가. 개 요

어촌지도사업은 지난해의 계속사업으로서 어민에게 자조적 협동정신을 고취시켜 협업을 조성하고 전진된 새로운 수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을 증강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자 어촌지도원 140명을 각 시·도 및 연안 시·군에 배치하여 본사업을 담당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위하여 69년도에 책정된 예산 45백만원은 주로 수산기술보급 생활개선 및 어업경영지도 시청각교재를 통한 기술공보 활동등에 쓰여져 어촌 지역사회 개발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어민소득증대책으로 어촌에 조화·편망·백회등의 부업단지를 조성 유희노동력을 활용한 어촌부업을 적극 장려하여 10개 단지에서 29,445천원의 소득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표 71)

#### 어촌부업단지조성사업현황

69.5.31현재 (단위:천원)

품 명	단 위	생 산 현 황					판 매 실 적			추 정 소 득		
		생 산 계 획		생 산 실 적			물 량	금 액	%	계 획	실 적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						
조 화 (1개단지)	타	270000	7200	62288	2,055	29	60558	1999	27	7000	2955	29
편 망 (3개단지)	통	383	29810	141	9656	54	131	9046		3753	2,522	70
백 회 (1개단지)	현	600	2,100	-	-	-	-	-	-	1200	-	-
백 합 사 료 (1개단지)	"	273	8,190	-	-	-	-	-	-	3238	-	-
비 식 용 해 도 기 공 (3개단지)	"	4815	23,445	-	-	-	-	-	-	7536	-	-
패 각 공 장 (1개단지)	포	15750	17550	-	-	-	-	-	-	6618	-	-

## 다. 주요사업 지도내용

### (1) 기술보급지도

어로 제조 및 증식분야에 대한 지도로서 어민을 접촉하여 어구·어법의 개량 해난방지 자원보호에 대한 지도와 해조류(해태·미역·천초) 패류(굴·백합·반지락) 등의 증양식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보급 지도 및 각종 수산물의 품질 고급화 유통개선 처리가공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다.

### (2) 생활개선 지도

어민의 보건위생 의식주 개선에 대한 관념을 고취시켜 어촌의 환경과 위생에 유의케 함으로써 어민보건 향상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어한기의 어촌 유희 노동력을 흡수 어촌부업을 장려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성을 감안 부업생산품의 기업적 생산을 도모하고 어촌부업의 단시화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3) 어업경영지도

어촌의 어업 경제 실태조사와 저축장려 및 가계부 기록등을 지도함으로써 어가경제 현황을 파악하여 어민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며 어촌별 지역적 생활상태와 어업상태를 조사하여 수산시책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4) 기술공보활동

어민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기술과 지식을 신문보도 영화나幻灯기의 상영 및 기술보급지(라후렐·뿔푸렛)의 발간등으로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어민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욕을 돋구어 주고 있다.

## V. 수산물증산과 수출의 확대

### 1. 수산물 증산

####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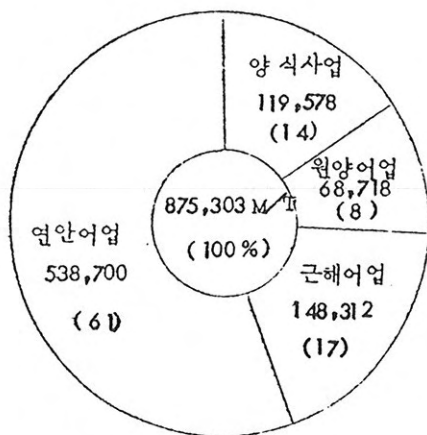
일반재정자금에서 2,353백만원, 청구권 자금에서 2,675백만원, 계 5,028백만원을 수산업에 투입키로 한 69년도 수산물 생산계획은 작년 실적에 비하여 2%가 증가된 875천톤으로 책정하였다.

어업구조별 생산계획으로서 연안어업 539천톤, 근해어업 148천톤, 원양어업 69천톤, 양식어업에 120천톤을 각각 책정하였으며 연안어업 계획량이 전체의 61%로서 비중을 이루고 있으나 62년의 비율인 70%와 대비하면 그 비중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근해어업 역시 62년도의 21%에서 17%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0.2%에서 8%로, 양식어업은 8.3%에서 14%로 각각 그 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생산계획면에서 어업구조의 개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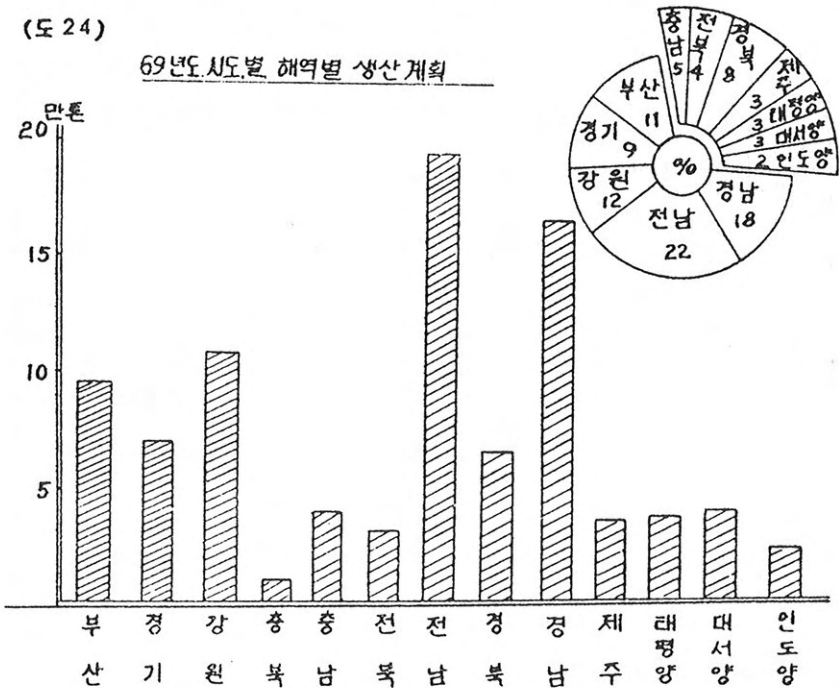
69년도 어업구조별  
생산계획



생산계획을 지역별 시도별로 보면 전남 193천톤으로 22%, 경남이 159천톤으로 18.2%, 강원이 105천톤으로 12%, 부산이 97천톤으로서 11.1%, 기타도가 252천톤으로 28.8%를 생산키로 계획하였으며 해역별로는 대서양이 27천톤으로 3.1%, 태평양이 26천톤으로 3%, 인도양이 15천톤으로 1.8%를 생산키로 계획하였다.

(도 24)

69년도 시도별 해역별 생산계획



한편 이를 종류별로 보면 어류가 552천톤으로 계획량의 63%이며 패류가 109천톤으로 12.4%, 해조류가 99천톤으로 11.3%, 기타가 115천톤으로 13.3%인바 전년도 생산 실적과 대비하여 보면 어류는 8%, 패류는 9.2% 증가된 반면 해조류는 16.9%, 기타 수산물은 5.9% 감소 책정되었다.

(표 72)

## 69년 종류별 생산계획

(단위: %)

종류별	시도별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어 류	84,563	62,363	43,868	5	22,523	33,538	89,268
패 류	2,208	7,909	42	-	11,234	2,528	64,562
해 조 류	2,135	365	22,946	-	4,294	68	32,700
기 타	8,135	11,613	37,987	-	5,480	2,380	6,360
합 계	97,041	82,250	104,843	5	43,531	38,514	192,890

종류별	시도별						
	경 북	경 남	제 주	태 평양	대 서양	인 도양	합 계
어 류	34,164	106,325	6,844	26,178	27,064	15,471	552,174
패 류	135	18,765	1,722	-	-	-	109,105
해 조 류	5,222	18,768	12,968	-	-	-	99,466
기 타	27,044	15,477	82	-	-	-	114,558
합 계	66,565	159,335	21,616	26,178	27,064	15,471	875,303

## 나. 연안어업

## (1) 시책의 기본방향

## (가) 어장의 확대

연안어장의 한정된 조업구역으로 인한 자원량의 제약성을 감안 선평중대는 가급적 지양하고 소형어선의 대형화와 무동력 어선의 동력화로 외연어장의 진출을 촉진하여 어장의 확대를 도모한다.

## (나) 선택적·생산조장

장려성 어업, 지역적 특수성 어업, 수출대상 어종을 대상으로

로 하는 어업등에 대하여는 집중 지원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출증대를 기한다.

(다) 어업의 기업화 촉진

연안중소형 어선의 대형화·장비율의 근대화등의 생산수단 개선 및 어로기술의 향상, 어업지도의 강화로 기업어업경영을 조장한다.

(라) 집단조업조성

동·서·남해역별 주요어업의 성어기에 집단조업을 조성, 어업경영의 위험성을 제거한다.

(마) 저생산성 어업전환

정치망 기타 저생산성 어업을 장려성 어업으로 전환케 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2) 시책의 구현

(가) 연안어장 및 어획자원에 적용되는 생산수단 보급에 적정을 기한다.

(나) 청구권자금 및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의한 연안어선 건조사업은 노후어선대체 및 어로저지선 남하 대책용으로 중점 투입 안전조업과 생산성 향상을 기한다.

(다) 어선의 대형화·동력화, 어구 어법의 개량으로 어장확대 및 생산증강을 도모한다.

(라) 수출대상 기업체 및 대상어종의 어업에 집중적인 지원책을 강구, 수출증대에 기여한다.

(마) 저생산성 어업인 정치망 기타 연안어업을 장려성 어선 어업으로 전환케 하여 기업어업의 육성 및 연안어장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여 소득을 증대시킨다.

(바) 주요어종의 주어기 집단조업시에 지도체제를 강화, 안전



조업을 도모하는 한편 시군에 지도선을 배정, 해상 지도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간접적인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사) 접적지구에 대형톤급의 연안어선을 투입, 안전조업을 기하며 동해어로서지선 남하조치에 따른 피해대책으로 소중형 어선을 건조 지원한다.

(아) 어업상 낙후된 시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낙도를 개발시키기 위하여 어선을 투입, 어선 어업의 발달로 생산증강을 기한다.

(차) 정치어업권을 조정 정비한다.

### (3) 어업별 생산계획

69년도 연안어업의 생산목표량은 538,700  $\text{kg}$ 으로서 어류 346,982  $\text{kg}$ , 패류 28,131  $\text{kg}$ , 해조류 61,396  $\text{kg}$  기타 102,191  $\text{kg}$ 를 생산키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량은

첫째: 어선의 단위 생산량은 최근 5개년간 (63~67)의 평균생산수준

(3, 4  $\text{kg}$ )을 계속유지할 것이며

둘째: 다확성 어종의 자원은 해황조건에 이변이 없는한 증가 또는 평형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셋째: 68년도에 건조된 어선과 개량된 장비는 69년도 생산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책정한 것이며 어업별 계획은 별표와 같다.

(표 73)

## 69년도 연안어업 생산계획

(단위: %) 1/2

어업별	생 산 제 획				계
	어 류	패 류	해 조류	기 타	
기 선 유 망	88,275	—	—	89	88,364
기 타유자 망	25,919	—	—	2,390	28,309
대 형 안강망	78,166	—	—	9,839	88,005
기 타안강망	7,792	—	—	4,019	11,811
기 선권현망	27,811	17	—	—	27,828
연 승	28,024	—	—	1,035	29,059
일 본 조	5,928	—	—	70,262	76,190
범 선저인망	10,517	—	—	1,495	12,012
잠 수 기	34	8,428	1,943	4,313	14,718
기 선상어연승	2,651	—	—	11	2,662
제 1 종공동	7	16,305	49,692	412	66,416
제 2 종공동	7,285	73	10	99	7,467
제 3 종공동	10,885	559	—	2,162	13,606
해 조 채 워	2	86	6,287	57	6,432
대 부 망	3,499	—	—	674	4,173
대 모 망	9,187	—	—	712	9,899
소 대 망	8,811	—	—	321	9,132
기 타정치망	6,489	—	—	149	6,638
기타연안어업	25,700	2,663	3,464	4,151	35,979
계	346,982	28,131	61,396	102,191	538,700

다. 양식어업

(1) 시책의 기본방향

개발수출 품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생산성·경제성·수출성이 큰 수산물 증산으로 양산체제 확립과 수출증대를 기한다.

(2) 시책의 구현

(가) 백합·굴·반지락의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 수출을 계열화 한다.

(나) 축양업을 적극 장려한다.

(다) 해태양식 및 제조방법 개량으로 품질을 향상한다.

(라) 종묘배양장 연어부화장 시설 및 보호수면설정 운영으로 자원의 번식 조장과 종묘공급을 원활히 한다.

(마) 수산기술자의 초빙 및 파견, 연수사업 강화로 개량된 기술을 도입 보급한다.

(3) 생산계획

69년도 양식어업의 생산목표량은 119,578 M/T 으로서 패류 80,974 M/T, 해조류 38,070 M/T, 어류 534 M/T, 기타수산물 50 M/T 을 생산코자 계획하고 있다.

(표 74) 품종별·요인별 생산계획 (단위 : M/T)

품종별	요인별	기존생산량	증가량	생산성향상	계
패	류	70,680	8,883	1,411	80,974
	굴	41,959	4,140	839	46,938
백	합	3,584	1,809	71	5,464
	반지락	11,313	504	226	12,043
고	막	10,941	1,430	218	12,589
홍	합	2,019	1,000	40	3,059
기	타	864	-	17	881

품종별	요인별	기존생산량	증가량	생산성향상	계
해조류		36,540	798	732	38,070
해태		30,000	319	600	30,919
천초		2,156	280	44	2,480
미역		3,778	199	76	4,053
기타		606	-	12	618
어류		-	-	-	484
뱀장어		-	-	-	249
잉어		-	-	-	224
기타		-	-	-	11
기타수산물 (새우)		-	-	-	50
합계		-	-	-	119,578

#### (4) 중점개발품목의 증산

69년에 증식부문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품목은 굴·백합·해태·반지락·축양등으로서 투자계획은 보조 319,096천원, 융자 797,126천원, 자체부담 350,170천원, 계 1,466,392천원으로 수산증식사업비 1,673,082천원의 87.6%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때 연간 22,280 M/T의 증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중 13,080 M/T이 수출될 것이다.

(표 75)

## 투 자 계 획

(단위 : 천원)

사 업 별	규 모	보 조	용 자	자 체	계
1. 중점 개발		319,096	797,126	350,170	1,466,392
꿀	2,521대 100ha 2개소	18,333	206,393	79,340	304,066
백합	866.7ha	52,000	408,000	102,000	575,000
해태		231,449	46,249	54,400	332,098
반지락	682.5ha	13,250	55,000	68,250	136,500
추양	7개소 80조	4,064	81,484	33,180	118,728
2. 기타 사업		94,380	57,130	55,180	206,690
합계		413,476	854,256	405,350	1,673,082

(표 76)

## 생 산 수 출 효 과

(단위 : 백만원  
천원)

품 종 별	생 산 효 과		수 출 효 과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꿀	M/T 5,160	413	M/T 3,600	1,692
백합	10,200	612	7,100	2,840
해태	122	122	50	750
반지락	6,140	184	1,800	270
추양	658	66	530	265
계	22,280	1,397	13,080	5,817

## (5) 천해간식지 개발계획

서·남해 연안의 양식지지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연안어업의

생산구조를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세워진 천해간석지 개발계획은 68년부터 시작되어 71년까지 4개년간 진행된다.

등기간중 계획된 목표량은 굴 2,128 ha, 백합 5,000ha, 반지락 1,800 ha, 축양 180개소 해태 290,000척이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증식시설자금 9,559백만원, 가공시설자금 303백만원 계 9,862백만원 (정부 9,036 백만원)이다.

이러한 투자효과는 73년부터 생산면에 완전하게 나타나 연간 363,382M/T 이 증산될 것이며 그중 108,660M/T이 해외에서 수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77)

개발목표

(단위 : 백만원)  
천 \$

구분 품종별	개발목표		투자		생산		수출	
	종규모	계획 (68~71)	총투자	정부 지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굴	ha 5,350	ha 2,128	2,260	2,067	M/T 159,600	3,101	42,000	M/T 4,997
백합	6,000	5,000	1,307	1,109	35,600	2,136	25,000	9,500
반지락	3,500	1,800	360	360	38,400	768	2,500	200
축양	180개소	180개소	837	779	15,066	1,816	12,400	7,040
해태	척 290,000	척 290,000	2,059	2,013	30,000	3,000	10,000	20,000
합계			6,823	6,328	278,666	10,821	91,900	41,737
기타			3,039	2,708	84,716	3,345	16,760	8,710
총계			9,862	9,036	363,282	14,166	108,660	50,447

한편 이와 같은 연차적 계획하에 69년의 투자규모는 2,783백만원 (정부 2,576백만원)이며 129,841 %의 생산과 27,640 %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78)

연 차 별 계 획

(단위 : 백만원  
천 \$)

연 차 별	투 자		생 산		수 출	
	총 투자	정부지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968	1,431	1,145	116,158 %	5,273 백만원	21,203 %	17,426 천 \$
69	2,783	2,576	129,841	5,728	27,640	20,891
70	3,242	3,039	206,852	8,097	46,334	29,240
71	2,406	2,276	283,400	10,904	65,000	39,086
72	-	-	353,976	13,515	96,538	48,701
73	-	-	363,382	14,166	108,660	50,447

라. 근해어업

(1) 시책방향

(가) 신어장 진출을 위한 어구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나) 어로기기시설의 개량과 항해기기를 보강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과 조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다) 신어장개척과 어장확대를 위한 조업지도도를 강화한다.

(라) 한어기를 이용한 이작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수익성의 제고를 기한다.

(마) 공동규제 대상어업의 조업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지원에 자한다.

(바) 노후선을 대체하고 선복을 증대하여 단위생산성을 증가한다.

(2) 어업별 생산계획

69년도 근해어업의 생산 목표량은 148,312  $\text{MT}$  으로서 대형기저 92,850  $\text{MT}$ , 중형기저 37,841  $\text{MT}$ , 새우트롤 3,673  $\text{MT}$ , 기선선망 12,890  $\text{MT}$ , 대형포경 1,058  $\text{MT}$ 을 생산키로 계획하고 있다.

(표79)

어업별생산계획

(단위 :  $\text{MT}$ )

어업별 \ 월별	1/4	2/4	3/4	4/4	합 계
대형기저	25,812	22,377	17,364	27,297	92,850
중형기저	10,933	8,966	5,524	12,418	37,841
새우트롤	876	1,080	1,079	638	3,673
기선선망	489	4,148	5,223	3,030	12,890
대형포경	128	370	364	196	1,058
계	38,238	36,941	29,554	43,579	148,312

마. 원양어업

(1) 시책의 기본방향

(가) 신규어선을 확보하여 어선세력을 확충하고 출어업종의 다각화를 기하여 모선식 선단어업의 진출을 꾀하는 한편 북서태평양의 콩치 봉수망 어업과 국내콩치 자망어업의 어법을 개량하여 원양 참치 이료의 자체 공급체제를 마련한다.

(나) 대서양 FREE TOWN 기지에 선박수리소와 의료소를 설치



하고 신기지 (TAHITI 및 ELSA VADOR) 를 개척한다.

(다) 병동운반선 (1,000톤급 3척 550톤급 1척) 을 취항케 하여 독자적인 시장개척과 보급체제를 마련한다.

(2) 어업별·해역별 증산계획

69년도 원양어업의 생산목표량은 68,713  $\%$ 으로 68년의 실적 50,074  $\%$ 보다 18,639  $\%$ 을 증가 책정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참치연승어업이 57,206  $\%$ , 트롤어업이 11,507  $\%$ 이며 해역별로는 남태평양 19,103  $\%$ , 북태평양 7,075  $\%$ , 대서양 27,064  $\%$ , 인도양 15,471  $\%$ 으로서 68년 실적에 비하여 대서양에서 13,576  $\%$ , 인도양에서 3,875  $\%$ 의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표 80)

해역별 생산 계획

(단위 : MT·발)

해역별 어업별	참 치		트 롤		합 계	
	어 획량	금 액	어 획량	금 액	어 획량	금 액
남태평양	19,103	6,107	-	-	19,103	6,107
북태평양	-	-	7,075	1,442	7,075	1,442
대서양	22,632	8,850	4,432	1,212	27,064	10,063
인도양	15,471	5,731	-	-	5,471	5,731
계	57,206	20,688	11,507	2,655	68,713	23,343

한편 69.7.1 현재 해역별 어선진출상황을 보면 남태평양 95척, 북태평양 17척, 대서양 58척, 인도양 38척, 계 208척 (63,292톤) 으로 68년보다 대서양에 21척, 인도양에 5척을 더 출어시키고 있다.

(표81)

## 해역별·어업별어선세력

(69.7.1현재)

해역별	참치		트롤		합계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척수	총톤수
남태평양	95	15,669	-	-	95	15,669
북태평양	-	-	17	15,032	17	15,032
대서양	53	17,529	5	3,082	58	20,611
인도양	38	11,980	-	-	38	11,980
계	186	45,178	22	18,114	208	63,292

## (3) 원양어업 지원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급진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전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 강화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다각적 원양어업의 진출을 조장하기 위하여 북태평양에 모선식 저인망어업 1 선단과 독항식 트롤어선 10척을, 인도양에 소형참치 연승어선 6척을 진출시키고 있으며 북서태평양에서의 콩치 병수망 어업을 적극 지원코자 한다.

둘째 :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냉동보급선을 운용하여 보급 및 어로자개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콩치 이료의 자체수급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 선원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간행물 및 교양서적과 어구 어법에 대한 서적을 원양어로기지에 배포하는 한편 중요기지에 국내영화필름을 배포하여 선원의 사기양양과 조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네째 :국제어업기구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서양 참치보호협정과 동남대서양 생물자원 보호협정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69.4.22~23 양일간에 걸쳐 아세아 민간참치업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2. 수산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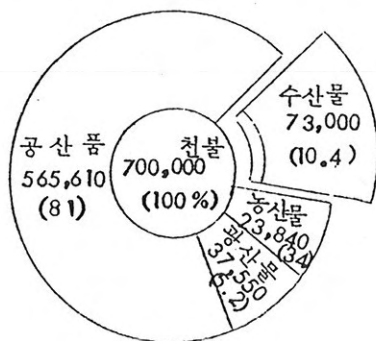
### 가. 개 요

69년도의 수산물 수출목표는 73백만 \$로서 우리나라 총수출목표액 700백만 \$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나 1/4분기 실적이 연간목표액의 14.6%인 10,656천 \$에 불과하여 수출증진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수출이 부진한 요인은 첫째, 국내수요증대에 따른 어가상승 및 수출결손, 둘째, 수출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 결여, 셋째, 일부 수출대 상어종의 생산저조 등으로서 이를 타개하고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69.5.9 수산물 수출종합 진흥책을 수립하여 생산증강 집하체제의 확립, 금융지원 강화, 수출지원 제도개선, 수출행정 체제강화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출목표 달성에 총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 25)

총수출대수산물수출



나. 품목별 수출계획

69년도 수산물 수출계획을 품목별로 보면 활어 4,000천\$, 선어 6,000천\$, 냉동품 7,000천\$, 오징어 3,500천\$, 전어개류 1,000천\$, 염신장품 1,500천\$, 통조림 3,000천\$, 한천 3,000천\$, 해조류 1,500천\$, 김 15,000천\$, 참치 21,000천\$, 어망류 5,000천\$, 기타수산물 1,500천\$이다.

품목별 수출계획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원양어업에서 어획하는 참치로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의 양식 어업상품인 김으로써 21%이고 환선어가 세계로 14%를 차지하고 있다.

(표82)

품목별 수출계획

(단위:백만\$)

구분\품목	참치	김	냉동품	선어	활어	오징어	통조림	한천	해조류	염신장품	전어개류	어망류	기타	계
수출계획액	21	15	7	6	4	35	3	3	1.5	1.5	1	5	15	73
구성비	28.8	20.5	9.6	8.2	5.5	48	4.1	4.1	2.1	2.1	1.4	6.7	2.1	100

다. 지역별 수출계획

지역별 수출계획은 일본이 38,000천\$, 미국 21,030천\$, 자유중국 1,690천\$, 홍콩 800천\$, 싱가포르 800천\$, 태국 600천\$, 월남 540천\$, 스웨덴 170천\$, 기타 8,950천\$이다.

일본에 38,000천\$의 계획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60%내외가 해마다 대일지역에 수출되었는데 69년에도 환선어 10,000천\$, 김 15,000천\$은 전부가 일본에 수출될 계획이고 기타품목도 대부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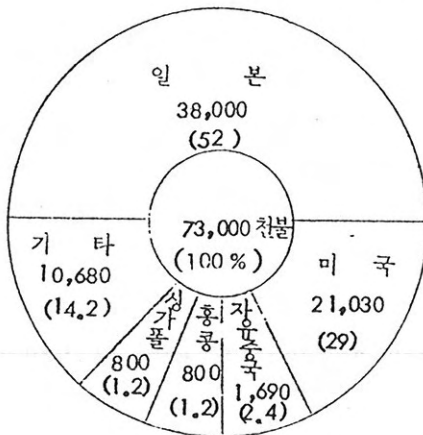
본에 수출될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52%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음에 미국으로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참치수출 대상으로 참치 21,000천\$의 거의 전액을 수출계획하고 기타품목이 약간 계획되고 있어 총수출계획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중국에는 오징어를 주된 수출상품으로하여 기타품목을 합하여 1,690천\$로써 총수출계획의 2.3%를 홍콩과 싱가포르를 주된 수출상품으로 하여 각각 800천\$ 계획으로 총수출계획의 1.2%를 각각 점하고 있다.

기타 여러 대상국에 10,260천\$로서 1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계획은 주된 대상국이 일본과 미국이다.

(도 26) 지역별 수출계획



다. 수출실적분석

69년도 수산물 수출종합진흥책은 5월부터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수산물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업계의 수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수출에 참여하는 어민의 긍지를 갖

도록 함으로써 5월 이후 급격한 수출신장을 초래하였다.

69.4월달 수출실적은 15,440천\$이었으나 진흥책 실시후 7월말에는 40,084천\$로써 3개월간에 24,644천\$의 수출증가를 나

타냈다.

특히 활선어·냉동품의 수출신장률은 급격히 상승되어 수출증대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는데 활어 103%, 선어 847%, 냉동품 370%의 신장률이 된다.

(단위 : 천톤)

구분 품목별	실시전 (1~4월)	실시후 (5~7월)	신 장 륜
활 어	984	763	103%
선 어	249	1,575	847
냉동품	584	1,623	370

## Ⅶ. 수산물유통개선과 처리가공시설의 정비확충

### 1. 개 요

수산제품의 고급화 및 위생적 처리와 기존시설의 개보수확장 및 다양하고 규격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 387,419천원, 일반재정자금 108,950천원, 합계 496,369천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총 30개소의 처리가공시설과 쇼케이스등 1053대의 각종 가공기기를 시설 또는 도입 보급하고 있다.

### 2. 유통시설의 확장

생산지와 소비자간의 Cold Chain System 화를 위하여 양육지에는 종합어시장 또는 냉동공장을 시설하고 소비자에는 소매어시장(쇼-케이스 76대)을 설치하여 신선하고 양호한 품질의 수산물을 소

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매시장 또는 종합판매소를 중점적으로  
 시설하고 있다. 또한 수출증대와 국민식생활개선택의 일환으로 해태가공  
 기기의 도입, 패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박신장시설, 어류 또는 해조류  
 의 고도이용을 위한 가공공장 시설등 각종 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표 83) 수산물처리가공시설계획

계원별	시설명	물량	금액
경 특	전진기지시설보완	7 개소	7,000 천원
	해태탈수기	500 대	10,000
	해태절단기	500 ♧	5,000
	박신장시설	1 개소	20,000
	진주핵가공공장	1 ♧	4,000
	해조분가공공장	1 ♧	2,600
	새우젓저장시설	1 ♧	20,350
	멸치가공시설	1 ♧	14,500
	어류건조시설	1 ♧	25,500
	소 계	13 ♧ 1,000 대	108,950
청 특	종합어시장	3 개소	79,869
	위판장확장	1 ♧	4,000
	냉동공장	6 ♧	84,800
	소매어시장	2 ♧	50,000
	종합가공공장	5 ♧	155,000
	쇼케이스	53 대	13,750
	소 계	17 개소 53 대	387,419
합 계	30 개소 1,053 대	496,369	

### 3. 유통구조의 개선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유통과정의 전반에 걸쳐 자기유통체제를 확립케 하고 이로서 위탁판매전 과정에 있어서의 재주 및 상인자본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자원 보호령 제 19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장소를 지정한 어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생산자 조합인 어협으로 하여금 공동운반선을 운용케 하기 위하여 어협 공동운반선 10척을 건조한 계획이며 수산업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한 단일화된 유통경로의 확립을 위하여 산지 공판장을 주요 소비도시에 설치하고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유통경로는 수산업 협동조합 기구로 하여금 공동출하방식에 의하여 담당토록하여 산지어협과 소비지 공판장을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다.

### 4. 어가안정사업

우리나라 어획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획성어는 대개가 계절적 회유성 어종으로서 어황에 따라 한곳에 집중 양육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 운반 보장등 적절한 유통수단이 결여되어 성어기에는 어가가 폭락하여 생산비에도 미달되는 한편 어한기에는 가격이 등거하고 있어 안정된 어업경영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획성어종의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격안정사업으로 69년도에는 회전자금을 합한 242백만원을 재원으로 다획성 어종의 가격을 조작하는 한편 정부의 수출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조공대상어 구입 개발수출 및 생산자 단체의 대상어 수집 수출 환선어 수집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5. 처리가공시설의 정비확충

수출증대와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어업전진기지 시설보완, 해태가공기기도입, 폐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박신장 시설, 해조류 고도이용 설비등 30개소의 시설확충과 1,053대의 각종 기기도입을 하고자 한다.

## Ⅷ. 수산업 협동조합의 육성강화

### 1. 수협자체자금 조성

자율적인 조합 금융체제를 확립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수산자금을 확대공급하여 어민의 자조능력을 배양하며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과 어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68년도를 준비기간으로 하여 69년도부터 73년까지 5개년간 수협 계통조직의 전기능을 통하여 자체자금 100억원을 일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초년도인 69년에는 2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84)

### 100억 자체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조성구분	년도별					
	68 (준비년도)	69	70	71	72	73
신용조합적립금	-	569	1,251	2,048	2,958	3,982
판매사업적립금	-	185	377	577	785	1,000
해태안정적립금	100	250	400	550	700	850
자 조 저 축 금	-	80	200	400	600	1,000
신 용 기 금	582	616	652	691	731	774
자 본 금	113	510	959	1,374	1,841	2,369
합 계	795	2,210	3,839	5,640	7,615	10,002

69.7.31현재 조성실적은 69년말 목표액 22억원의 54%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최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어촌계의 신용조합 결성지연과 출자금 증액의 선결조건인 법적조치 지연에 기인하고 있다.

(표 85)

자체자금 조성 실적

(69.7.31 현재)

(단위:백만원)

조성구분	69년도목표액	69.7.31 실적	조성비율 (%)
신용조합적립금	569	98	17
판매사업적립금	185	55	30
해태안정적립금	250	285	114
자조저축	80	82	102
신용기금	616	582	95
자본금	510	100	20
합계	2,210	1,202	54

2. 수협직원의 훈련 실시

수협 임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수협의 당면과제인 자체자금 100억원 조성과 각사업별 독립 재산제 실시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정부주요 시책을 계몽하여 조합운영에 반영되도록 수협중앙회에서는 연간 390명의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69.5.31현재 20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86)

사업계획대실적

(69.5.31현재)

과 정	계 획	실 적
고 등 반	40	-
전 무 상 무	120	-
보 통 반	80	69
조 합 장	120	101
과 전 교 육	30	39
계	390	209

Ⅷ. 조사통제업무의 강화

1. 어업센서스 시험조사

어업센서스는 어업의 기본적 생산구조와 취업상황등을 계속적으로 조사파악하여 수산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각종 경상통계조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사로서 F·A·O의 권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70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대비하여 69.8.7 ~ 9.7 까지 2차에 걸쳐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조사 목적은 연안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사업체의 고용자 가구를 가가 호호 방문하여 실제조사표에 의거 조사함으로써 조사표의 적성검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어업실태등을 직접 파악하여 조사요령 기타 집행계획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며, 조사 소요시간 측정으로 조사원의 충원 및 실시에 필요한 일정·예산등을 책정하는데 있었다.

시험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보안점등은 F. A. O 수산통계 담당 야마모도 다다시의 대한시 종합 검토하여 조사표를 재작성코자 한다.

## 2. 어가경제조사

어가의 경제 및 어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어가경제의 동향과 어촌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주요경제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수산진흥정책의 수립과 어가소득 추산 및 수산문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협중앙회에 어가경제 조사업무를 권장시키고 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50개 조사구당 1명의 조사원 (어촌지도원) 을 현지에 주재시켜 일제부의 기록지 도, 순제부 작성 보고 중간집계표의 작성 및 재산기록부의 정리 보고등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이 업무는 64년도 이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내용의 미비등으로 결과치의 정확도가 낮아 69년부터는 조사대상 표본수 200호를 400호로 증가시켰으며 종래의 표본 선정방법과는 달리 69년도부터는 층화3단 확률비례 추출방법에 의하여 1차 추출단위는 어협, 2차 추출단위는 어촌계, 3차 추출단위는 어가로 하되 2차단위인 어촌계를 조사구 (DC) 로 하고 2171개의 어촌계 중 5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여 매 조사구당 6호~10호 (평균 8호) 의 표본 어가를 임의 추출조사하여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다.

69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결과는 거년과는 달리 수산진흥정책의 수립과 국민소득추계 및 수산문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3. 신어유통조사

이 조사는 선어의 생산지 및 소비지의 양육량 및 분배상황과 어가 및 수송수단 등을 파악하여 선어의 유통개선으로 어가안정과 선어소비 확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65년도부터 매월 선어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69년도부터는 조사결과와 보편성과 정확도를 높이고자 조사대상 어종을 11개로부터 20개 어종으로 조사 대상 소비지도매 시장을 7개로부터 11개로 확대하는 한편 선어 유통개선에 대한 수송수단의 기여도를 파악코자 수송수단을 조사항목으로 하였다.

## IX. 한일어업협정수행과 국제협력

### 1. 한일 어업협정 수행

#### 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 4차 정기연차회의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제 4차 정기연차회의는 한국측 16명 일본측 2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예정대로 69.6.18부터 5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양국 어선간 사고의 취급방침

(가) 사고 미연방지에 노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키로 한다.

(나) 사고처리의 지연이 영세어민의 피해를 가중시킴을 고려하여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고 확인서 교환과 민간단체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한 지도 및 관계당국의 측면지원을 계속한다.

(다) 가해선측 민간단체의 조업안전기금 및 저립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관한 지도를 여행한다.

(라) 관계민간단체의 사고방지 및 사고처리상황을 관찰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상호 파견한다.

## (2) 어업자원조사

(가) 어업자원의 계통군 조사연구의 추진을 위해 이를 양국에 권고한다.

(나) 어체표본을 상호 교환한다.

(다) 공동위원회 제출자료를 연구기관간에도 별도 사본을 교환하며 자료의 요약도 상호 교환키로 한다.

(라) 공동자원조사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검토를 정확히 한다.

(마) 차기에도 자원전문가회의를 계속 개최하며 공동규제수역 및 조사수역외에 관계수역의 조사자료 및 그 결과도 참고자료로서 교환키로 한다.

## 나. 한일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약정

66.2.26 개최된 한일어업 공동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한일어업협정 합의 의사록 제 10항의 규정에 의거) 한일간 해난구조 및 긴급피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일본측이 제안한 이래 2회에 걸쳐 실무 교섭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양국간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 미결상태에 있던 중 제 3차 공동위원회 (68.6.19)에서 일본측으로부터 실무 교섭회의의 재개요청이 있었다.

이 약정의 체결은 한일어업협정 합의 의사록 제 10항의 규정의 이행 사항이나 일본측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다. 연안어업 정보교환 및 시찰

한일어업협정 합의 의사록 7항에 의거 69.11월중 3인 내지 4인으로 구성되는 시찰단을 파견 일본 연안어업의 정보를 파악하

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나라 수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 라.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

제2차 한일어업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자원조사 및 환경조사 사항은 양국 국별 위원부로부터 조사제출한 자료를 본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가회의를 구성 심의키로 한바에 따라 69.6.12부터 6일간 일본국 도쿄에서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제4차 한일어업 공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1)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관계수역내의 어업자원상태의 평가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즉 양국이 각기 실시한 자원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부어 및 저어의 어획량 변동 생물학적 측정결과 및 환경조사결과 등에 관하여 각각 심의하였다.

(2) 공동자원 조사의 촉진 및 조사지침의 보완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다. 즉 이를 위하여 환경조사 통계군 자원재생산, 연령사정등을 심의하였다.

#### 마. 제휴순시 및 시찰승선

69년에는 총 6회의 제휴순시를 계획하여 그동안 3회를 실시하였으며 순시중 협정위반 사항은 양국 공히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측 시찰승선은 7회를 계획하여 그 동안 5회를 실시하였다.

## 2. 국제어업 협력

### 가. 어업협력자금

어업협력자금 제2차년도 사용액은 14,086천 \$인바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69.7.4 일본정부에 통보하고 원양어선 14척과 근해어선 13척 및 기타 수산시설을 도입코자 추진중에 있다.

(표 87) 어업협력자금 제 2차년도사업내용 (단위 :천불)

자 금 별	품 종	수 량	금 액
5,000만 \$	참 치 어 선	12 척	4,262
	스 탄 트 롤 어 선	1 척	2,350
	냉 동 운 반 선	1 척	800
	소 계		7,412
4,000만 \$	증 식 사 업 용 자 재		945
	근 해 어 선	13 척	1,165
	소 형 어 선 자 재	1,400 "	734
	냉 동 가 공 공 장	22 개소	1,989
	기 타 육 상 시 설		1,841
	소 계		6,674
합 계			14,086

나. 일반상업차관

69년도 상반기중에 상업 차관 자금으로 도입 인가된 수산 시설은 참치어선 2척 기선저인망 어선 6척 트롤어선 2척으로 2,084천\$에 달하고 있다.

다. 기타차관



(1) AID 차관

67.10 ~ 68.5월(8개월간)에 걸쳐 미국 용역단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보고한 바에 따라 농어촌 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미국의 통조림 회사와 AID차관에 의한 한미 수산업 합작투자사업을 교섭케 하고 있다.

( 표 88 )

농어촌개발공사의 AID차관사업계획

(단위 : 천불)

사 업 내 용	수 량	금 액
1) 시 설		
가) 참 치 어 설	14 척	5,000
나) 가공공장및 기타시설		6,500
계		11,500
2) 재 원		
가) A I D 차 관		10,500
나) 합 작 회 사 부 담		1,000
계		11,500
3) 연 간 수 지 예 상		
가) 수 입		7,200
1) 수 출		6,900
2) 국 판		300
나) 지 출		6,400
다) 수 익		1,100

(2) ADB 차관

참치어선 30척을 확보하기 위한 ADB 차관 10,530천 \$ 을  
62. 12월 경제기획원 경유 ADB에 신청하였으며 69년중 내한하게 되  
는 ADB 평가조사단과 협의하여 계속 추진할 것이다.

(표 89)

ADB 차관 신청내용

(단위 : 천불)

사 업 내 용	수 량	금 액
① 시 설 참 치 어 선	30 척	11,700
② 재 원		
㉞ ADB 차관 (90%)		10,530
㉟ 자기 부담 (10%)		1,170
③ 연 간 수 지 예 상		
수 입 (수출)		6,930
수 익		1,820
고 용		810 명

라. 청구권 자금

69년도 청구권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4,050천 \$의 외자도입을  
계획하였으나 경제기획원의 자금사용한도액 조정으로 인하여 목재 289  
천 \$을 구매하였을뿐 나머지는 70년에 도입한 것을 조건으로 조달청  
에 구매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표 90)

## 3차년도청구권자금사용계획

(단위: 천불)

사 업 명	물 량	계 획 금 액	도 입 금 액
1. 수 산 진 흥 사 업		1,615	
어 업 기 본 시 설	무선국 10대	612	
수 산 물 처 리 가 공	11개소	580	
증 식 시 설		328	
시 험 기 기		50	
연 수 생 파 견	17인	45	
2. 어 선 건 조 및 시 설 개 탕		2,430	목재 3,100㎡ 289
어 선 건 조	280 척	1,445	
동 력 개 탕	21,000 IP	510	
장 비 개 탕	360 대	445	
계		4,045	289

## 제 3 부 1970년 도 수산시책

脈心診考 五卷(1) 本草

### 제 3 부 1970 년 도 수 산 시 책

#### 1. 70년도 수산시책의 기본 방향

70년도 수산시책의 기본 방향은 수년간 지속된 국민경제의 고도성장 추세를 지속시켜 70년대의 우리경제를 중진국 경제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안정기조의 견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는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제 1차 5개년계획과 제 2차 5개년계획에 의하여 이룩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영세한 어업 경영규모를 기업화하고 합리화하여 수산업의 근대화롤 더욱 촉진할 것이다.

특히 62년 이래 수출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 수산물의 수출은 정부의 중점적인 개발시책에 힘입어 수산업 자체내에 함유되어 있는 불리한 특질에도 불구하고 67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37.7%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신장하여 왔으나 68년의 실적은 전년도의 수준을 하회하는 둔화현상을 나타내었음뿐 아니라 69년도 상반기초에 있어서의 예년에 보기도문 부진한 실적은 수산물 수출 시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청됨으로서 69년에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한 수산물 수출진흥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거니와 70년도에는 동진흥책의 실시과정에서 부각된 제반 문제점을 더욱 보강함은 물론 수산부문에 배분될 모든 투융자 예산을 수산물 수출 극대화에 집약될 수 있도록 투하함으로서 종래의 신장율을 회복 이를 지속시키도록 할 것이다.

또한 70년도에는 종래의 확대 위주에 치중하던 수산시설에 대한 가

본방향을 가동율과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역점을 전환시켜 66년 이후 대폭 확장된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완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기착공한 계속사업은 년도내에 완공시키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70년도에 강구할 중점 시책은 다음과 같다.

## 2. 중점시책

### 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은 68년부터 착수하여 7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분야에는 12개 지구에 총 2,799백만원을 투입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본 사업은 어민의 소득을 급증시킬 수 있는 수익성 시장성이 큰 백합 굴 해태와 기타 패조류 축양사업등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0년에는 69년도에 이어 동일 지역에 88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87%의 비중을 점하는 백합·해태·굴 양식사업에 중점 투자할 방침으로 백합양식에 270백만원 해태품질 개량사업에 289백만원 굴에 213백만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의 투자효과는 8,800 MT생산에 3,150천 \$의 수출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중점적인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 나. 개발수출

서남해안에 전개되어 있는 유휴 천해간석지를 개발하여 경제성 수출성이 큰 품종인 굴 백합 해태 등 선택적인 양산체제 확립으로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중투자에 의한 주산단지 조성하여 생산.

가공·수출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개량된 기술지도 보급으로 품질 개량 사업에 중점시책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하에 70년도 개발수출사업개요를 보면 총 투자규모는 12.3억원 (정부 7.9억원, 차관 3.2억원, 어민부담 1.2억원) 인바 그 내용을 보면 배합양식이 1,500ha에 4.5억원, 굴 멧목 수하식이 1,000대에 4억원, 해태품질개량사업은 해태망 50,000채과 부대 기기 및 용수 시설 등에 3.8억원을 집중투자 함으로써 연간 20,000 M/T 생산에 3,800천 \$ (8,000M/T) 의 외화 획득을 기하고자 한다.

개발수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면 배합은 매일 수출의 급증에 따라 정부는 68년도의 계속사업으로서 시범해인애 6개백립단지를 조성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과 경제개발사업으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며 굴 양식은 매일 수출계약에 따라 69년도 부터 중점 개발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영세어민의 경영능력을 감안하여 산은 출자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를 관리 기업체로 하여 경남 진해만에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처리 가공시설을 병설함으로써 계획 생산 및 수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태품질 개량사업은 주 수요국의 기호성을 감안하고 단위당 수출가격 제고를 위하여 68년도 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중점 개발하였으나 특히 70년도는 중량품 생산목표 300만속중 농어촌개발공사와 급당무안어협과의 계약양식으로 시범어장을 조성하여 80만속의 중량급 해태를 생산할 계획이며 기타 220만속은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중량급 해태 생산목표 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 다. 연근해어업의 경영개선

연근해 어업은 소수에 불과한 자본계 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업인



구나 경영체별로 보아 절대다수의 영세어가를 저변으로 자본 장비율이 극히 낮은 취약한 생산수단에 의존하여 어획자원의 풍흉에 불구하고 육감에 의한 비과학적인 어로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각기 상이한 대소 어업이 협소한 어장에 위집하여 조업을 감행하는 경영구조상의 복잡다기성으로 말미암아 생산력은 압박당하고 있으며 선화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근해어업이 아직도 저위 생산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발전의 단계를 달리하고 있을지라도 연근해어업은 총어업인구 1,346천명 중 96%에 해당하는 1,316천여명을 점하고 있으며 연간 총생산면에 있어서도 852,291MT 중 94%에 달하는 802,217MT를 생산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대부분 연근해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같이 연근해어업은 국민경제 및 사회적인 중요한 다면적 역할을 지니고 있는 제특성으로 보아 연근해 어업의 진로를 개척하는 급선무는 경영구조상의 개선책에 집약하여 70년도의 중점 시책을 강구한다.

#### (1) 선택적 중점 생산체제 확립

수익성 수출성이 높은 어종을 선택적으로 양산하여 수출극대화를 촉진하고 어민의 소득 향상을 기한다.

#### (2) 단위생산성 제고 촉진

생산수단의 근대화 일환사업으로 어로장비율의 고도화 어로기술의 향상 및 지도업무의 강화로 단위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안정어업 내지는 기업경영으로 유도 발전시킨다.

#### (3) 장려성 어업전장

생산성이 낮은 어업을 장려성 어업으로 전환시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다.

#### (4) 잠재자원 개발

신어구 어법을 도입 선단편성 투입으로 유용한 잠재자원을 개발하여 계획생산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 (5) 어획물의 품질고급화

어획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취급 관리를 철저히 지도 제공하여 품질 고급화로 어가를 높이고 어민의 권익을 증대시킨다.

### 라. 원양어업 진흥

원양어업의 진흥은 우리나라 어업구조 개선의 첨경일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의 국가시책 달성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연근해 자원의 한정성에서 미루어볼 때 그 진흥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70년도에는 원양어업의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다각적 어업 진출에 의한 신어장 확보 및 외화 가득들의 향상 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 원양어업부문에 75천톤의 생산과 27백만불의 수출을 달성하고자 한다.

#### (1) 선복증대

정부 투융자사업으로 원양어선 2,000톤을 신조하고 그 외에 민간차관에 의해서 참치 연승어선과 트롤어선 14척을 도입하여 70년도 중에 22척의 신규 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 (2) 기술의 고도화

원양어업 어선의 증가에 따른 고급 선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근대화 된 새로운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원양어업 기술훈련소는 69.10.30로서 UNFAO와의 협정이 일단 종료되나 새로 설치된 연근해 어업 기술훈련소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연간 180명의 항해 및 기관

부문 원양어업기술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 (3) 현지 경비의 절감과 참치이료의 자금화

원양어업에서의 현지 경비의 절감과 어로용 기자재의 국산화 대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 첫단계로서 70년도에는 우선 연간 약 300만\$의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참치 연승어업용 이료를 점차적으로 국산이료로 대체하는 방안으로서 콩치·고등어·오징어·도루묵등 국산냉동 수산물용 이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겠다.

또한 69년도 시험조업 결과에 의하여 콩치 봉수망 어업 출어율 본격화 하여 참치 이료의 대량 공급도 시도하겠다.

이와 병행하여 현지 어로 경비를 절감하고 외화 가득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타 어로용기자재도 외국산 기자재의 사용 한도를 정하여 국산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어로어업의 기본적인 생산 수단인 어선을 태풍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어획물을 신속히 양육 처리케 하며 출어어선에 모든 선수물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어항시설과 어업 기본 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어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62년 이래 수산부문에 투입된 투자가 생산면에 완전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70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1) 어항수축

69.5.19 제정 공포된 어항법에 의거 전국 어항 1,311개소를 제 1종·제 2종 및 제 3종 어항으로 그 종류를 구분 지정하고 제 1종

어항중 이용도가 특히 높은 어항시설을 우선 확충 정비하고 제 2종 어항은 시도에 지방사업으로 위임 집행코자 한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어선의 긴급대피를 위한 낙도 어항시설의 착공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하에 70년에는 종래의 분산적인 투자 방향을 지양하고 계속 사업지구에 집중투자하여 현재 착공중인 91개 어항을 71년까지는 완공할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긴급대피어항에 한하여 신규 투자가 이루어 질것이다.

한편 70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물량은 중요어항 415㎡, 일반어항 425㎡, 예비항 40㎡, 낙도어항 247㎡이며 어항보수가 270㎡이다.

## (2) 기본시설 확장

70년도의 어업 기본시설 확장 계획으로 급수시설 4개소, 급유시설 7개소, 공동창고 10개소, 수원지 1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의 보급시설을 보완하여 어민의 이용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시설은 주로 수산물 수출 근거지 기존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곳 중에서 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는 어협관내에 집중시켜 어민의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수산물 증산과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바. 조사연구 사업의 실용화 촉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행하는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보다 산업개발에 직결되는 과제에 치중하고 또한 조사연구 결과를 신속히 산업발전에 활용키 위하여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분야의 활동을 계속 하면서 조사연구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의 방향을 설정코자 한다.

### (1) 시험연구사업의 실용화 촉진

연안어업 및 양식어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안 기수해역과 내만에 대한 해양 환경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중요어업 자원의 적정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어황 예보와 어장 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해조류 및 패류의 종묘 생산 및 축양식 시험과 친해개발 시험으로 연안 어장의 고도 이용과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내수면의 생산력과 특성을 조사하여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용담수 품종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내수면의 적극적 개발을 추진코자 한다.

또한 각 해역별 수출개발 및 축양용 종묘 확보를 위한 어구 어법의 개발 및 어획물의 품질관리와 가공법을 개선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양식어업을 위한 배합사료의 생산 보급시험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2) 어촌지도 사업의 일원화

연안 어민의 소득 향상과 어업생산 기술의 개량 보급을 위하여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어촌지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산청의 어업지도원을 수산진흥원에 배치하여 진흥원의 기술보급사업을 전달케 함으로써 일선 어민의 지도 제몽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다.

### 사. 통계 개선

수산통계 주치의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그간 요원의 확보와 교육등 온갖 힘을 기울인 결과 부분적인 향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면에서 보아 미흡한 점이 허다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서의 센서스의 실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관계당국과 절충중 다행이 FAO의 권고도 있어 70년도에는 우리나라

에서도 처음으로 어업센서스를 실시키로 되었다.

정부에서는 어업센서스를 위하여 지난 4월 FAO 수산통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금년을 준비연도로 70년을 실시연도로 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4차에 걸쳐 산업통계분과회와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어업센서스는 국가시책의 수립시행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실시할 어가 경제조사 어업 경영조사 생산비 조사등 각종 표본조사의 「후래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통계법에 의하여 69.7.14 지정통계 22호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림부령 제 394호로 69.8.25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조사표 결과표를 위시하여 각종 조사요령을 작성하여 통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중에 있는 한편 시험조사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사원을 임명 교육훈련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1970 10 1에 실시되는 인구센서스후인 70.12.1 농업센서스와 동시에 실시키로 하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다.

이 조사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어업의 생산구조와 취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수산통계의 기본 지표가 될 뿐더러 앞으로 시책의 수립시행에 크게 공여될 것이며 나아가서 어업경영진단의 자료등에 크게 이바지 될 것이다.



## 부 록

- I 수산관계 법령제정 및 개정
- II 수산관계 주요통계



1917

1917

# I. 수산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

## 1. 제 정

### 수산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제 2441호) 68. 4. 27 공포

제 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라 함은 어장의 조성 개량 및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어민이 협동하여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안어업"이라 함은 국내의 어업 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 귀항할 수 있는 범위안의 해안에서 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어가어업"이라 함은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어업을 말한다.
4.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대학에 설치된 수산 및 해양관계 연구소와 수산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연구소를 말한다.

제 3조 (시책의 수립) 농림부장관은 법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의 증식 시설 및 그 관리
2. 어업용 보급시설(통신시설을 포함한다)과 그 관리
3. 어항의 기본 조사와 시설 관리
4. 어선의 건조 도입 및 보수와 그 장비의 개량
5. 어구 어법의 개량
6. 수산물의 처리가공시설 및 제품 개량
7. 수산물의 수출진흥

8.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9. 어가안정
10. 수산 기술의 보급과 향상
11.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연구
12. 원양어업의 육성
13. 수산단체의 육성
14. 수산자원의 보호
15. 조업 안전 및 재해 대책

제 4 조 (어업구조의 개선계획) 농림부장관은 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어업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업
2. 무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3. 총톤수 10 톤 이하의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4. 양식어업
5. 정치망 어업

제 5 조 (시험 연구 사업의 조성 등) ① 수산청장은 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험 연구 기관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보호
2. 해양 조사
3. 어선 어구의 개량
4. 어로 기술의 향상
5. 수산물 가공품의 품질개량

## 6. 어획물의 품질 유지

(2) 수산청장은 전항의 사업중 그 일부를 시험·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전항의 위탁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국립 수산 기술 훈련소) (1)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 기술 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수산청장 소속하에 국립 수산 기술 훈련소 (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2) 전항의 훈련소의 조직과 훈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어민 훈련소) (1) 수산청장은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민에게 어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지도를 위하여 동해·서해 및 남해지역에 어민 훈련소를 둔다.

(2) 수산청장은 어민 훈련소의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수산물의 적정가격 유지) 수산청장은 법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조정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 하락하거나 상승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의 가격조절을 위한 구매 저장 및 판매
2.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및 소비 기구 개선
3. 포장 및 용기의 개량

제 9 조 (지도사업) 수산청장은 법 제 3 조 제 1 항 및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민의 생활개선·어업기술의 향상·조업안전과 어업종사자의 지위향상에 필요한 다음의 지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업과 어민생활의 개선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의 지도와 보급

2. 어촌 부업에 대한 기술의 보급
3. 어촌계의 육성
4. 조업 안전에 관한 기술의 지도와 보급

제 10조 (저소득 어업자 등) 법 제 14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는 연안어업중 어가 어업자와 협동 어촌계로 한다.

제 11조 (국가가 장려하는 어업) 법 제 14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특히 장려하는 어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으로 한다.

1. 선미식 트롤어업, 다랑어 선망 어업, 다랑어 일본조 어업 및 붕수망 어업
2. 어장 또는 어구 어법 개척을 위한 시험 어업

제 12조 (연차보고) ① 농림부 장관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연차보고는 매 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연차 보고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산업의 개황
2. 어업 생산 동향
3. 수산물 수출 및 수급 동향
4. 수산 금융
5. 어업 기본 시설의 보수 확장
6.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
7. 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8. 수산 기술지도 및 훈련
9. 수산단체의 육성

10. 수산 기본 통계

11. 수산업의 전망

제 13조 (수산진흥 심의회의의 구성)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 진흥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4조 (위원장 및 위원 등) ① 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수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자와 수산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산청장이 위촉하는자 14인 이내로 한다.

1.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2. 재무부 재정차관보
3. 법무부 법무실장
4. 상공부 상역 차관보
5. 농림부 식산 차관보
6.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장
7. 한국수산 개발공사장

제 1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교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조 (회의) ① 심의회의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에 각 부문별 사항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분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8 조 ( 간사와 서기 )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수산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9 조 (수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시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개 정

한국 수산개발공사법 (법률 제 2005 호)  
(68. 5. 20 공포)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이를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 법 중 "본법"은 "이 법"으로, "강령"을 "대통령령"으로,  
"본공사"를 "이 공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산업 협동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3641호)  
(68. 11. 20 공포)

수산업 협동조합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조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 18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기  
인이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 인가 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초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업무구역내의 어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주소·거소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어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어획고 보유 선수 또는 통수와 종사자수)

② 법 제 1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 18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 제조업 협동조합(이하 "제조업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 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 신청서를 수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서류

2. 업무 구역내의 수산제조업자의 명단과 조합 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시 조서(성명·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조업의 종류·제조기간·제조고·종사자수·시설규모)

제 25조 제 1항 중 "수산청장"을 "중앙회장"으로 한다.

제 2장 제 8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절 권한 위임과 감독

제 54조 (권한위임) ① 법 제 41조, 제 44조 제 2항, 제 3항, 제 52조, 제 61조



제 2 항, 제 78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106 조에 의하여 위의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51 조 제 1 항, 제 152 조, 제 154 조 제 156 조와 제 15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으로서 업무구역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조합에 관한 것은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법 제 55 조 제 3 항, 제 66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2 항 (제 106 조에 의하여 위의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148 조와 제 15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권한으로서 조합에 관한 것은 중앙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55 조 (당선등의 취소 청구) ① 법 제 41 조 (법 제 106 조 및 제 139 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에 의사록 또는 선서록 사본을 첨부하여 수산청장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권한이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수산청장은 30 일 안에 이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I. 수산관계 주요통계

1. 68년도 수산물 총생산고

(단위: ㄱ)

어업별	생산량
일반어업	688,120
양식어업	113,053
포경	1,044
원양어업(해외)	50,074
합계	852,291

1-1 1968년도 종류별· 시도별 어획고

(단위: ㄱ)

시도별	종류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계
부	산	72,589	3,565	498	7,707	84,359
경	기	67,970	4,207	50	6,930	79,157
강	원	53,682	-	29,160	46,073	128,915
충	남	14,925	2,660	823	6,060	24,468
전	북	25,315	2,580	2	2,113	30,010
전	남	74,243	4,349	5,043	6,319	89,954
경	북	31,727	471	9,240	36,803	78,241
경	남	117,099	10,307	11,975	8,216	147,597
계	주	3,543	1,645	20,035	166	25,419
	합계	461,123	29,784	76,826	120,387	688,120

1-2 68년도 종류별·시도별 양식고

(단위: %)

시도별	종류별	어 류	패 류	해 조류	기 . 타	계
부 산	산	-	217	951	182	1,350
경 기	기	6	1,879	540	-	2,425
강 원	원	-	-	-	-	-
충 북	북	-	-	-	-	-
충 남	남	-	6,599	4,019	17	10,635
전 북	북	-	955	131	-	1,086
전 남	남	10	54,154	35,312	-	89,476
경 북	북	-	-	-	-	-
경 남	남	6	6,227	471	-	6,704
제주	주	-	40	1,337	-	1,377
합 계		22	70,071	42,761	199	113,053

1-3 68년도 도경어업 어획고

(단위: 개·%)

구 분	종 류	참고래	향고래	돌고래	밍 크	보리고래	기타고래	계
두 수	수	25	-	-	316	-	3	344
중 량	량	445	-	-	572	-	27	1,044

1 - 4 68년도 원양(해외)어업어획고

구 해역 별	조업척수		종사 선원수	어획량		
	척수	톤수		참치	기타	합계
				%	%	
태평양	121	23,219	2,817	19,299	5,015	24,314
대서양	37	14,000	1,011	12,624	809	13,433
인도양	33	10,506	831	11,596	-	11,596
동남아	19	12,556	397	-	731	731
계	210	60,281	5,056	43,519	6,555	50,074

2. 67년도와 1968 년도의 어선 세력비교

구 분	년 도 항 목	1967			동 력
		동 력	무 동 력	계	
	척 수	10,989	46,266	57,255	11,444
	톤 수	179,117.21	82,961.96	262,079.17	206,321.54
	마 력 수	423,407.5	-	423,407.5	485,303.56
	척당평균톤수	19.29	1.79	4.58	18.02
	척 수 비 율	19.19	80.81	100.00	18.46

3. 68 년도 톤급별 어선세력

구 분	톤 급 별	무 동 력 선		강 조 동 력 선			목 척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마 력 수	
	2 톤 미만	40,899	43,601.25	-	-	-	927
	2.0 ~ 4.9	7,691	21,757.55	-	-	-	3,669
	5.0 ~ 9.9	1,066	7,387.14	-	-	-	2,250
	10.0 ~ 19.9	855	12,803.29	2	30	80	2,806
	20.0 ~ 29.9	46	1,058.05	14	361.73	2,165	657
	30.0 ~ 49.9	1	33.97	19	654.57	2,737	277
	50.0 ~ 99.9	-	-	230	20,801.56	56,239	374
	100 톤 이상	-	-	246	58,659.31	138,293	3
	합 계	50,558	86,641.25	481	80,507.17	199,514	10,963

1968		1967년대비 증 △ 감		
무 동 력	계	동 력	무 동 력	계
50,558	62,002	455	4,292	4,747
86,641.25	292,962.79	27,204.33	3,679.29	30,883.62
-	485,303.56	61,896.06	-	61,896.06
1.71	4.73	-	-	-
81.54	100.00	-	-	-

조 동 력 선		합 계			톤별 적당 비	톤당비율
톤 수	마력수	척 수	톤 수	마력수		
1,462.35	6,095.00	41,826	45,063.60	6,095.00	67.5	15.4
13,386.42	35,767.50	11,360	35,143.97	35,767.50	18.3	12.0
16,785.40	38,497.00	3,316	24,172.54	38,497.00	5.3	8.3
41,790.55	91,688.00	3,663	54,623.85	91,768.00	5.9	18.6
16,694.90	30,766.06	717	18,114.68	32,931.06	1.2	6.2
10,560.06	26,220.00	297	11,248.60	28,957.00	0.5	3.8
24,789.60	56,288.00	604	45,591.16	112,527.00	1.0	15.6
345.08	468.00	219	59,004.39	138,761.00	0.3	20.1
125,814.37	285,789.56	62,002	292,962.79	458,303.56	100.0	100.0

4. 68년 어업별 어선세력

어업별	구분	동력선		
		척수	톤수	마력수
공	선	2	7,411	11,550
참치	연승	171	40,322	95,426
포	경	14	738	2,385
트	롤	58	8,577	20,147
대형기선저인	망	404	31,366	79,139
중형기선저인	망	132	5,051	13,053
기타저인	망	-	-	-
기선선	망	25	1,524	5,235
안강	망	942	19,815	31,843
기타부	망	226	957	3,421
유	망	2,247	26,051	58,587
자	망	1,595	9,535	22,279
권현	망	391	4,486	15,435
선인	망	28	117	769
저인	망	8	16	53
기타인	망	50	122	321
오징어일본	조	475	4,030	7,885
기타일본	조	544	2,773	6,980
상어연승		56	1,158	3,515
기타연승		1,973	11,627	24,720
포패	조	140	658	2,046
잠수	기	207	705	2,221
대형정치	망	180	1,508	3,949
소형정치	망	248	853	1,949
기타어	업	587	8,017	23,549
양	식	173	294	1,375
운반	선	484	13,058	24,266
지도단속	선	42	2,916	15,634
실습및조사	선	42	2,637	7,572
합	계	11,444	206,322	485,304

무 동 력 선		합 계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마 력 수
-	-	2	7,411	11,550
-	-	171	40,322	95,426
-	-	14	738	2,385
-	-	58	8,577	20,147
-	-	404	31,366	79,139
-	-	132	5,051	13,053
200	2,926	200	2,926	-
-	-	25	1,524	5,235
1,009	9,733	1,951	29,548	31,843
1,237	2,637	1,463	3,594	3,421
1,505	4,276	3,752	30,327	58,587
3,934	7,558	5,529	17,093	22,279
719	4,394	1,110	8,880	15,435
270	773	298	890	769
201	476	209	492	53
278	403	328	525	321
-	-	475	4,030	7,885
8,269	9,486	8,813	12,259	6,980
-	-	56	1,158	3,515
6,453	10,151	8,426	21,778	24,720
5,400	5,655	5,540	6,313	2,046
107	242	314	947	2,221
2,302	3,375	1,482	4,883	3,949
2,451	3,866	2,699	4,719	1,949
5,537	8,068	6,124	16,085	23,544
11,260	11,122	11,433	11,416	1,375
426	1,500	910	14,558	24,266
-	-	42	2,916	15,634
-	-	42	2,637	7,572
50,558	86,641	62,002	292,963	485,304



5. 신령별 어선현황

구 분 \ 신령별		5년 이내	6 ~ 10년	11 ~ 15년
강조동력선	척 수	276	118	55
	톤 수	51,348.00	13,663.05	5,371.15
	마 력 수	132,267	34,802	13,872
목조동력선	척 수	3,872	3,447	1,493
	톤 수	41,800.75	35,787.38	18,236.80
	마 력 수	97,774.16	79,010.8	40,548.1
무 동 력선	척 수	13,640	16,779	9,387
	톤 수	20,746.72	26,502.99	14,783.72
합 계	척 수	17,788	20,344	10,935
	톤 수	113,895.47	75,953.42	38,391.67
	마 력 수	230,041.16	113,812.8	54,420.1
척 수 비율	목조동력선	35.3	31.4	13.6
	무 동 력선	27.0	33.3	18.6
신령별구성비합계 (척수)		28.7	32.8	17.6

16 ~ 20년	21 ~ 25년	26 ~ 30년	31 년 이상	계
3	18	1	10	481
268.10	8,541.35	71.56	1,243.96	80,507.17
640	15,211	200	2,522	119,514
626	427	455	643	10,963
9,293.47	6,047.06	5,435.58	9,213.33	125,814.37
23,395.84	14,024.46	11,470.2	19,566	285,789.56
4,782	2,860	1,942	1,168	50,558
8,305.92	5,841.7	5,639.96	4,820.24	86,641.25
5,411	3,305	2,398	1,821	62,002
17,867.49	20,430.11	11,147.10	15,277.53	292,962.79
24,035.84	29,235.46	11,670.2	22,088	485,303.56
5.7	3.9	4.2	5.9	100.0
9.5	5.7	3.7	2.3	100.0
8.7	5.3	3.9	3.0	100.0

6. 어업별 어로장비

어업별	구분	무전기	발전기	어탐기	방탐기	로랑	레다	넷드론베
공	선	7	6	3	3	2	2	14
참	치연승	192	303	161	163	16	141	-
포	경	13	22	2	10	-	1	-
트	를	53	35	53	15	10	15	-
대	형기선저인망	279	633	253	220	48	83	47
중	형기선저인망	89	119	103	1	-	-	13
기	타저인망	-	2	-	-	-	-	-
기	선선망	39	25	32	20	1	10	3
안	강망	411	627	53	4	283	-	-
기	타부망	-	505	-	-	-	-	-
유	망	177	734	96	21	104	6	-
자	망	61	434	3	6	-	-	-
권	현망	64	723	135	74	-	37	-
선	인망	-	5	-	-	-	-	-
저	인망	-	-	-	-	-	-	-
기	타인망	-	-	-	-	-	-	-
오	징어일본조	10	288	-	-	-	-	-
기	타일본조	-	97	1	-	-	-	-
상	어연승	27	23	38	-	-	2	-
기	타연승	19	637	-	-	-	-	-
포	패채조	-	-	-	-	-	-	-
잠	수기	-	-	-	-	-	-	-
대	형정치망	-	-	-	-	-	-	-
소	형정치망	-	2	-	-	-	-	-
기	타어업	-	56	37	-	1	-	-
양	식업	-	-	-	-	-	-	-
운	반선	70	86	1	1	1	1	-
지	도단속선	19	32	17	17	14	17	-
실	습밧조사선	21	36	20	13	9	13	5
합	계	1,551	5,430	1,008	568	489	328	82

넷드홀라	라인홀라	원 치	병동기	수 집 어 중 등	오 정 어 자동조상기	보이스	기 타
-	-	7	9	-	-	-	1
-	198	83	259	4	-	74	97
-	22	22	-	-	-	-	-
-	-	29	28	-	-	5	31
5	4	403	55	-	-	16	585
36	-	123	-	-	-	-	63
-	-	57	-	-	-	-	1
18	-	18	-	-	-	-	54
450	163	534	-	1	-	-	499
-	-	8	-	20	-	-	74
-	-	103	-	131	-	-	81
-	-	23	-	10	-	-	177
-	-	14	-	-	-	-	-
-	-	-	-	-	-	-	-
-	-	-	-	-	-	-	78
-	-	3	-	19	1	-	-
-	-	-	-	6	-	-	1,227
-	2	27	2	10	-	-	56
-	30	2	-	-	-	-	1,060
-	-	10	-	-	-	-	45
-	-	-	-	-	-	-	-
-	-	-	-	-	-	-	-
-	-	21	-	-	-	-	329
-	-	6	-	-	-	-	528
-	-	-	-	-	-	-	-
-	-	4	1	-	-	-	-
2	1	14	7	-	-	-	33
6	6	18	10	-	-	-	5
517	426	1,529	371	201	1	95	5,024

7. 68년도 수산물 제조상황

시도별	품종별	소건품	염건품	염신품	염장품	자건품
서 울		-	-	10	-	-
부 산		109	30	254	121	-
경 기		322	1	1,922	479	315
강 원		10,648	-	402	120	45
충 남		66	2	77	368	65
전 북		62	257	239	199	-
전 남		2,145	2,616	2,602	2,425	783
경 북		5,769	-	28	-	19
경 남		38	-	5,970	2	3,248
제 주		17	-	156	60	-
합 계		19,176	2,906	11,660	3,774	4,475

통조림 및 병 조 립	냉동 품	해 조 제 품	기 타 식 용 품	어 유	합 계
25	1,895	-	14	-	1,944
407	13,162	84	140	352	14,659
-	617	4	-	9	3,669
458	159	2,322	109	227	14,490
-	-	470	-	-	1,048
57	13	17	-	-	844
165	1,405	2,123	551	-	14,815
2,348	1,219	1,465	14	40	10,902
72	-	680	155	-	10,165
156	72	4,325	-	-	4,731
3,688	18,487	1,490	983	628	77,267

8. 68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품종별 / 국별	합 계	일 본	미 국	홍 콩	대 만	유 구
활 어	2,750	2,750	-	-	-	-
선 어	4,482	4,482	-	-	-	-
병 등 품	4,653	3,613	557	-	-	-
오징어	1,970	760	24	30	898	-
건어개류	646	178	84	53	-	-
염신장품	1,217	1,207	2	-	8	-
통조림	2,221 (1,954)	5	38	-	14	20
한천	1,851	988	10	154	-	-
해조류	588	474	20	2	-	-
김	17,054	16,641	169	5	109	114
참치	15,559	2,130	1,231	-	-	-
기타수산물	86	78	5	3	-	-
소계	53,077 (1,954)	33,326	12,140	247	1,029	134
어망류	4,165	281	224	52	-	-
로푸	81	-	81	-	-	-
소계	4,246	281	305	52	-	-
합계	57,323 (1,954)	33,607	12,445	299	1,029	134

태 국	싱가폴	월 남	영 국	서 독	이태리	불란서
-	-	-	-	-	-	-
-	-	-	-	-	-	-
-	-	-	-	63	293	-
57	5	196	-	-	-	-
-	138	102	-	-	-	-
-	-	-	-	-	-	-
-	-	1,954 (1,954)	-	-	-	-
241	297	150	-	4	-	-
-	-	-	-	-	46	26
16	-	-	-	-	-	-
-	-	-	-	-	45	8
-	-	-	-	-	-	-
314	440	2,402 (1,954)	-	67	384	34
24	60	-	14	11	1	4
-	-	-	-	-	-	-
24	60	-	14	11	1	4
338	500	2,402 (1,954)	14	78	385	38



품종별 / 국별	화란	스웨덴	백이의	캐나다	호주	인도
활어	-	-	-	-	-	-
선어	-	-	-	-	-	-
냉동품	28	60	-	3	14	-
오징어	-	-	-	-	-	-
건어개류	-	-	-	-	-	-
염신장품	-	-	-	-	-	-
통조림	-	33	4	18	4	-
한천	-	-	-	-	-	7
해조류	-	-	-	-	-	-
김	-	-	-	-	-	-
참치	157	-	-	76	8	-
기타수산물	-	-	-	-	-	-
소제	185	93	4	97	26	7
어망류	6	13	-	13	34	-
로푸	-	-	-	-	-	-
소제	6	13	-	13	34	-
합계	191	106	4	110	60	7

(단위 : 금액~천불)

말레시아	나이지리아	버마	켄야	이란	비올빈	기타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91
-	-	-	-	-	-	-
-	-	-	-	-	-	1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4
-	-	-	-	-	-	-
-	-	-	-	-	-	2,148
18	1,152	272	285	3	5	1,693
-	-	-	-	-	-	-
18	1,152	272	285	3	5	1,693
18	1,152	272	285	3	5	3,841

9. 69년도 시도별·해역별·종류별·분기별 생산계획량 총괄표

시도별 해역별	월별 종류별	1/4분기						
		어 류	패 류	해조류	기 타	계	어 류	패 류
부 산		16,848	393	477	881	18,599	22,669	537
경 기		11,081	1,500	58	338	12,983	18,238	1,883
강 원		7,228	7	3,547	1,549	12,331	11,368	10
충 북		1	-	-	-	1	1	-
충 남		2,437	1,592	2,661	191	6,881	7,250	3,007
전 북		3,543	291	58	63	3,955	10,681	839
전 남		12,560	13,113	21,632	252	47,577	29,232	14,161
경 북		4,468	24	770	1,557	6,819	10,643	33
경 남		14,461	3,197	3,767	1,204	22,629	33,647	4,009
제 주		711	307	2,011	7	3,036	2,198	420
소 계		73,364	20,424	34,981	6,042	134,811	145,927	24,899
태 평 양		4,592	-	-	-	-	7,358	-
대 서 양		6,127	-	-	-	-	6,334	-
인 도 양		3,174	-	-	-	-	3,944	-
소 계		13,893	-	-	-	13,893	17,636	-
합 계		87,257	20,424	34,981	6,042	148,704	163,563	24,899

2 / 4분기			3 / 4분기				
해조류	기 타	계	어 류	패 류	해조류	기 타	계
1,272	1,414	25,892	23,046	496	249	3,147	25,938
248	1,137	21,506	13,132	1,273	38	5,668	20,161
14,976	4,612	30,966	9,413	9	3,026	19,815	32,263
-	-	1	1	-	-	-	1
1,087	650	11,994	5,886	2,496	164	2,869	11,415
5	569	12,094	8,258	540	0	999	9,797
7,174	882	51,449	21,712	8,105	923	3,152	33,892
3,397	3,468	17,541	9,095	30	734	13,710	23,569
11,573	2,452	51,681	25,926	3,201	2,261	7,373	38,761
8,473	11	11,102	1,863	385	1,695	46	3,989
48,205	15,195	234,226	117,382	16,535	9,090	56,779	199,786
-	-	-	8,344	-	-	-	-
-	-	-	6,832	-	-	-	-
-	-	-	4,105	-	-	-	-
-	-	17,636	19,281	-	-	-	19,281
48,205	15,195	251,862	136,663	16,535	9,090	56,779	219,067

시도별 해역별	월 별 종류별	4 / 4 분기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부 산		23,000	782	137	2,693
경 기		19,856	3,253	21	4,470
강 원		15,859	16	1,397	12,011
충 북		2	-	-	-
충 남		6,950	4,139	382	1,770
전 북		4,056	858	5	749
전 남		25,744	29,183	2,971	2,074
경 북		9,958	48	321	8,309
경 남		32,291	8,358	1,167	4,448
제 주		2,072	610	789	18
소 계		146,788	47,247	7,190	36,542
태 평 양		5,884	-	-	-
대 서 양		7,771	-	-	-
인 도 양		4,248	-	-	-
소 계		17,903	-	-	-
합 계		164,691	47,247	7,190	36,542

계	합 계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계
26,612	84,563	2,208	2,135	8,135	97,041
27,600	62,363	7,909	365	11,613	82,250
29,283	43,868	42	22,946	37,987	104,843
2	5	-	-	-	5
13,241	22,523	11,234	4,294	5,480	43,531
12,668	33,538	2,528	68	2,380	38,514
59,972	89,268	64,562	32,700	6,360	192,890
18,636	34,164	135	5,222	27,044	66,565
46,264	106,325	18,765	18,768	15,477	159,335
3,489	6,844	1,722	12,968	82	21,616
237,767	483,461	109,105	99,466	114,558	806,590
-	26,178	-	-	-	26,178
-	27,064	-	-	-	27,064
-	15,471	-	-	-	15,471
17,903	68,713	-	-	-	68,713
255,670	552,174	109,105	99,466	114,558	875,303

10. 69년도 어업별·종류별·분기별 생산계획량 총괄표

어업별	분기별 종류별 업종별	1/4						
		어 류	패 류	해조류	기 타	계	어 류	패 류
연	기선유망	7,604	-	-	-	7,604	47,463	-
	기타유자망	3,556	-	-	220	3,776	8,611	-
	대형안강망	5,517	-	-	846	6,363	24,797	-
	기타안강망	506	-	-	185	691	3,307	-
	기선권현망	689	-	-	-	689	53	2
	연 승	11,798	-	-	151	11,949	4,142	-
	일 본 조	1,164	-	-	332	1,496	1,072	-
	범선저인망	2,293	-	-	146	2,439	2,955	-
	잠수기	7	1,416	449	1,037	2,909	-	2,747
	기선상어연승	446	-	-	-	446	450	-
어	제1종공동	7	3,087	8,551	25	11,670	-	3,124
	제2종공동	22	1	-	23	46	1,982	1
	제3종공동	1,194	140	-	262	1,596	2,909	200
업	해조채취	2	86	685	-	773	-	-
	대부망	36	-	-	1	37	1,002	-
	대모망	66	-	-	-	66	1,498	-
	소대망	12	-	-	-	12	1,632	-
	기타정치망	131	-	-	7	138	2,184	-
	기타연어업	2,445	279	45	346	3,115	7,891	763
	소 계	37,495	5,009	9,730	3,581	55,815	111,948	6,837

2 / 4			3 / 4				
해조류	기 타	계	어 류	패 류	해조류	기 타	계
-	23	47,486	8,789	-	-	60	8,849
-	1,361	9,972	5,184	-	-	438	5,622
-	2,258	27,035	28,067	-	-	3,567	31,634
-	1,599	4,906	2,480	-	-	1,201	3,681
-	-	55	14,356	3	-	-	14,359
-	295	4,437	3,515	-	-	58	3,573
-	1,378	2,450	1,514	-	-	45,155	46,669
-	395	3,350	1,858	-	-	574	2,432
1,163	1,486	5,396	21	1,818	222	895	2,956
-	11	461	517	-	-	-	517
31,276	101	34,501	-	3,831	6,727	206	10,764
-	11	1,994	3,000	71	10	27	3,108
-	807	3,916	2,760	45	-	409	3,214
5,156	15	5,171	-	-	401	-	401
-	636	1,638	1,805	-	-	33	1,838
-	136	1,634	3,390	-	-	18	3,408
-	233	1,865	4,400	-	-	42	4,442
-	128	2,312	2,225	-	-	10	2,235
2,526	1,320	12,500	6,789	552	462	1,154	8,957
40,121	12,193	171,099	90,670	6,320	7,822	53,847	158,659



연 업 종 별	분기별 종 류 별	4 / 4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연 안 어 업	기 선 유 망	24,419	-	-	6
	기 타유자망	8,568	-	-	371
	대형안강망	19,785	-	-	3,168
	기타안강망	1,499	-	-	1,034
	기선권현망	12,713	12	-	-
	연 승	8,569	-	-	531
	일 본 조	2,178	-	-	23,397
	범선저인망	3,411	-	-	380
	잠 수 기	6	2,447	109	895
	기선상어연승	1,238	-	-	-
	제 1 종공동	-	6,263	3,138	80
	제 2 종공동	2,281	-	-	38
	제 3 종공동	4,022	174	-	684
	해조 채 취	-	-	45	42
	대 부 망	656	-	-	4
	대 모 망	4,233	-	-	558
	소 대 망	2,767	-	-	46
	기타정치망	1,949	-	-	4
	기타연안어업	8,575	1,069	431	1,332
소 계	106,869	9,965	3,273	32,570	

계	합 계				
	어 류	패 류	해 조류	기 타	계
24,425	88,275	-	-	89	88,364
8,939	25,919	-	-	2,390	28,309
22,953	78,166	-	-	9,839	88,005
2,533	7,792	-	-	4,019	11,811
12,725	27,811	17	-	-	27,828
9,100	28,024	-	-	1,035	29,059
25,575	5,928	-	-	70,262	76,190
3,791	10,517	-	-	1,495	12,012
3,457	34	8,428	1,943	4,313	14,718
1,238	2,651	-	-	11	2,662
9,481	7	16,305	49,692	412	66,416
2,319	7,285	73	10	99	7,467
4,880	10,885	559	-	2,162	13,606
87	2	86	6,287	57	6,432
660	3,499	-	-	674	4,113
4,791	9,187	-	-	712	9,899
2,813	8,811	-	-	321	9,132
1,953	6,489	-	-	149	6,638
11,407	25,700	2,663	3,464	4,152	35,979
153,127	346,982	28,131	61,396	102,192	538,700

어업종별	분기별 어업종별	1 / 4					어류	패류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계		
근해어업	대형기선망	25,154	-	-	658	25,812	21,432	-
	중형 "	9,960	-	-	873	10,933	8,142	-
	새우트롤	174	-	-	702	876	217	-
	기선선망	489	-	-	-	489	4,148	-
	대형포경	-	-	-	128	128	-	-
	소계	35,777	-	-	2,461	38,238	33,939	-
양식어업	어류양식	92	-	-	-	92	40	-
	패류 "	-	15,415	-	-	15,415	-	18,062
	해조류 "	-	-	25,251	-	25,251	-	-
	기타 "	-	-	-	-	-	-	-
	소계	92	15,415	25,251	-	40,758	40	18,062
원양어업	참치연승업	13,063	-	-	-	13,063	13,864	-
	저어어업	830	-	-	-	830	3,772	-
	소계	13,893	-	-	-	13,893	17,636	-
합계	87,257	20,424	34,981	6,042	148,704	163,563	24,899	

2 / 4			3 / 4				
해조류	기 타	계	어 류	패 류	해조류	기 타	계
-	945	22,377	15,871	-	-	1,493	17,364
-	824	8,966	5,312	-	-	212	9,524
-	863	1,080	216	-	-	863	1,079
-	-	4,148	5,223	-	-	-	5,223
-	370	370	-	-	-	364	364
-	3,002	36,941	26,622	-	-	2,932	29,554
-	-	40	90	-	-	-	90
-	-	18,062	-	10,215	-	-	10,215
8,084	-	8,084	-	-	1,268	-	1,268
-	-	-	-	-	-	-	-
9,084	-	26,186	90	10,215	1,268	-	11,573
-	13,864	14,503	-	-	-	-	14,503
-	3,772	4,778	-	-	-	-	4,778
-	17,636	19,281	-	-	-	-	19,281
48,205	15,195	251,862	136,663	16,535	9,090	56,779	219,067

어업 구분	구분 종류별	4/4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근 해 어 업	대형기선저인망	24,657	-	-	2,640
	중형기선저인망	11,842	-	-	576
	새우트롤	128	-	-	510
	기선선망	3,030	-	-	-
	대형도경	-	-	-	196
	소 계	39,657	-	-	3,922
양 식 어 업	어류양식	262	-	-	-
	패류양식	-	37,282	-	-
	해조류양식	-	-	3,467	-
	기타양식	-	-	-	50
	소 계	262	37,282	3,467	50
원 양 어 업	참치연승어업	15,776	-	-	-
	저어어업	2,127	-	-	-
	소 계	17,903	-	-	-
합	계	164,691	47,247	7,190	36,542

계	계				
	어 류	패 류	해 조 류	기 타	계
27, 297	87, 114	-	-	5, 736	92, 850
12, 418	35, 256	-	-	2, 585	37, 841
638	735	-	-	2, 938	3, 673
3, 030	12, 890	-	-	-	12, 890
196	-	-	-	1, 058	5, 058
43, 579	135, 995	-	-	12, 317	148, 312
262	484	-	-	-	484
37, 282	-	80, 974	-	-	80, 974
3, 467	-	-	38, 070	-	38, 070
50	-	-	-	50	50
41, 061	484	80, 974	38, 070	50	119, 578
15, 776	57, 206	-	-	-	57, 206
2, 127	11, 507	-	-	-	11, 507
17, 903	68, 713	- 4	-	-	68, 713
255, 670	552, 174	109, 105	99, 466	114, 558	875, 303

11. 69년도 어업별 월별 생산계획량

어업별 / 월별	1 월	2	3	4	5	6
연안어업	19,841	15,171	20,803	43,458	73,601	54,040
근해어업	13,539	11,053	13,646	12,999	12,648	11,294
원양어업	3,028	5,029	5,836	4,774	4,971	7,891
양식어업	10,866	10,992	18,900	11,442	10,372	4,372
계	47,274	42,245	59,185	72,673	101,592	77,597

12. 69년도 종류별 월별 생산계획량

종류별 / 월별	1 월	2	3	4	5	6
어 류	32,107	25,222	29,928	42,691	64,480	56,392
패 류	3,675	4,035	12,714	11,043	9,075	4,781
해 조 류	9,602	11,492	13,887	14,667	23,009	10,529
기 타	1,890	1,496	7,656	4,272	5,028	5,895
계	47,274	42,245	59,185	72,673	101,592	77,597

7	8	9	10	11	12	계
39,847	49,093	69,719	58,983	44,519	49,625	538,700
9,502	9,929	10,123	12,394	15,861	15,324	148,312
5,636	5,772	7,873	5,262	5,812	6,829	68,713
4,051	5,380	2,142	4,744	10,930	25,387	119,578
59,036	70,174	89,857	81,383	77,122	97,165	875,303

7	8	9	10	11	12	계
41,951	46,349	48,363	51,914	54,890	57,887	552,174
5,084	7,157	4,294	7,652	13,791	25,804	109,105
3,149	3,102	2,839	1,149	1,167	4,874	99,466
8,852	13,566	34,361	20,668	7,274	8,600	114,558
59,036	70,174	89,857	81,383	77,122	97,165	875,303



13. 69년도 연근해어업 중요어종별 생산계획량

어업별		어종별					
		명 태	멸 치	퐁 치	칼 치	조 기	전 생이
연 안 어 업	기 선 유 망	-	23,421	37,350	.81	11,713	1,405
	기 타 유 자 망	3,765	5,304	658	719	3,992	1,047
	대 형 안 강 망	-	186	-	29,442	23,577	479
	기 타 안 강 망	-	109	4	2,202	2,116	38
	기 선 권 현 망	-	27,692	4	23	-	-
	연 승	14,794	-	19	2,889	940	6
	일 본 조	-	-	-	583	159	39
	범 선 저 인 망	-	-	-	388	90	22
	잠 수 기	-	-	-	-	-	-
	기 선 상 어 연 승	-	-	-	-	-	-
	제 1 종 공 동	-	-	-	-	-	-
	제 2 종 "	-	6,127	237	344	30	1
	제 3 종 "	-	1,600	16	307	90	-
	해 조 채 취	-	-	-	-	-	-
	대 부 망	-	986	4	1,393	9	19
	대 모 망	-	978	12	3,346	13	162
	소 대 망	-	5,824	8	1,998	9	124
	기 타 정 치 망	-	2,244	8	814	12	80
	기 타 연 안 어 업	5	3,184	611	683	172	811
	소 계	18,564	77,655	38,931	45,212	42,922	4,233
근 해 어 업	대 형 기 저	439	-	-	7,950	18,389	-
	중 형 기 저	4,338	-	-	295	1,618	-
	새 우 트 롤	-	-	-	-	-	-
	기 선 선 망	-	-	-	-	-	7,846
	대 형 도 경	-	-	-	-	-	-
소 계	4,777	-	-	8,245	20,007	7,846	
합	계	23,341	77,655	38,931	53,457	62,929	12,079

(단위: %)

## 류

고등어	가자미	가오리	장어류	상 어	삼 치	방 어	민 어
358	-	-	-	951	3,379	186	984
43	488	94	70	593	1,312	179	521
58	158	253	158	362	88	-	298
2	10	38	54	27	9	1	59
-	-	-	-	-	-	-	-
2	43	381	3,452	825	69	38	154
-	44	2	150	43	514	211	30
-	1,263	528	328	179	-	-	17
-	-	-	-	-	-	-	-
-	-	-	-	2,543	-	-	-
-	-	-	-	-	-	-	-
-	12	7	16	4	3	-	2
-	789	302	136	17	822	10	29
-	-	-	-	-	-	-	-
-	4	8	19	1	184	82	31
268	24	-	-	34	746	653	7
9	2	-	-	53	148	93	23
2	13	2	-	15	656	88	14
56	134	85	232	286	50	20	17
798	2,984	1,700	4,615	5,933	7,980	1,561	2,186
-	9,710	4,521	1,466	1,056	-	-	741
-	5,773	1,289	342	575	-	-	-
-	-	-	-	-	-	-	-
4,932	-	-	-	-	-	-	-
-	-	-	-	-	-	-	-
4,932	15,483	5,810	1,808	1,631	-	-	741
5,730	18,467	7,510	6,423	7,564	7,980	1,561	2,927

어종별 어업별		어					
		넙 치	도 미	병 어	서 대	도루묵	부 어
연 안 어 업	기 선 유 망	6	2	746	-	-	-
	기 타 유 자 망	44	470	1,052	-	-	-
	대 형 안 강 망	49	110	4,176	-	-	-
	기 타 안 강 망	1	-	361	-	-	-
	기 선 권 현 망	-	-	3	-	-	-
	연 승	69	62	10	-	-	-
	일 본 조	296	512	-	-	-	-
	범 선 저 인 망	488	47	32	-	-	-
	잠 수 기	-	1	-	-	-	-
	기 선 상 어 연 승	-	-	-	-	-	-
	제 1 종 공 동	-	-	-	-	-	-
	제 2 종 "	6	-	1	-	-	-
	제 3 종 "	311	108	42	-	-	-
	해 조 채 취	-	-	1	-	-	-
	대 부 망	-	14	85	-	-	-
	대 모 망	30	3	81	-	-	-
	소 대 망	1	4	63	-	-	-
기 타 정 치 망	5	8	57	-	-	-	
기 타 연 안 어 업	117	2	21	-	-	-	
소 계	1,423	1,908	6,731	-	-	-	
근 해 어 업	대 형 기 저	1,404	898	612	1,932	2,026	1,138
	중 형 기 저	246	286	67	209	4,607	481
	새 우 트 롤	-	-	-	-	-	-
	기 선 선 망	-	-	-	-	-	-
	대 형 포 경	-	-	-	-	-	-
소 계	1,650	1,184	679	2,141	6,633	1,619	
합	3,073	3,092	7,410	2,141	6,633	1,619	

류

눈볼대	홍 어	대 구	양 태	준 치	성 태	기 타	소 계
-	-	-	-	-	-	7,693	88,275
-	-	-	-	-	-	5,568	25,919
-	-	-	-	-	-	48,772	78,166
-	-	-	-	-	-	2,761	7,792
-	-	-	-	-	-	89	27,811
-	-	-	-	-	-	3,706	28,024
-	-	-	-	-	-	3,345	5,928
-	-	-	-	-	-	7,135	10,517
-	-	-	-	-	-	33	34
-	-	-	-	-	-	108	2,651
-	-	-	-	-	-	7	7
-	-	-	-	-	-	495	7,285
-	-	-	-	-	-	6,306	10,885
-	-	-	-	-	-	1	2
-	-	-	-	-	-	660	3,499
-	-	-	-	-	-	2,830	9,187
-	-	-	-	-	-	452	8,811
-	-	-	-	-	-	2,471	6,489
-	-	-	-	-	-	19,214	25,700
-	-	-	-	-	-	81,646	346,982
1,070	1,038	1,003	816	583	369	29,953	87,114
646	-	379	223	-	62	13,820	35,256
-	-	-	-	-	-	735	735
-	-	-	-	-	-	112	12,890
-	-	-	-	-	-	-	-
1,716	1,038	1,322	1,039	583	431	44,620	135,995
1,716	1,038	1,382	1,039	583	431	126,266	482,977

어업 어종별		패 류					
		굴	백합	반지락	고막	기타	소계
연안어업	기선유망	-	-	-	-	-	-
	기타유자망	-	-	-	-	-	-
	대형안강망	-	-	-	-	-	-
	기타안강망	-	-	-	-	-	-
	기선권현망	-	-	-	-	17	17
	연승	-	-	-	-	-	-
	일본조	-	-	-	-	-	-
	범선저인망	-	-	-	-	-	-
	잠수기	185	-	3,360	381	4,502	8,428
	기선상어연승	-	-	-	-	-	-
	제1종공동	2,571	1,402	224	1,466	10,642	16,305
	제2종 "	-	-	-	22	51	73
	제3종 "	63	12	-	232	252	559
	해조채취	-	-	-	-	86	86
	대부망	-	-	-	-	-	-
	대모망	-	-	-	-	-	-
	소대망	-	-	-	-	-	-
	기타정치망	-	-	-	-	-	-
	기타연안어업	17	439	70	223	1,914	2,663
소계	2,836	1,854	3,654	2,324	17,463	28,131	
근해어업	대형기저	-	-	-	-	-	-
	중형기저	-	-	-	-	-	-
	새우트롤	-	-	-	-	-	-
	기선선망	-	-	-	-	-	-
	대형도경	-	-	-	-	-	-
소계	-	-	-	-	-	-	
합계	2,836	1,854	3,654	2,324	17,463	28,131	

해 조 류					기 타		
해 태	천 초	미 역	기 타	소 계	오징어	새 우	문 어
-	-	-	-	-	-	10	-
-	-	-	-	-	-	980	12
-	-	-	-	-	28	8,321	1
-	-	-	-	-	578	3,844	6
-	-	-	-	-	85	-	-
-	-	-	-	-	-	24	76
-	-	-	-	-	21	-	317
-	-	-	-	-	67,596	815	79
-	-	-	-	-	452	1	146
-	-	3	1,940	1,943	-	-	-
572	3,790	29,136	16,194	49,692	-	-	41
-	-	10	-	10	7	21	17
-	-	-	-	-	184	842	858
10	361	5,424	492	6,287	-	-	7
-	-	-	-	-	-	6	-
-	-	-	-	-	-	-	-
-	-	-	-	-	-	16	-
-	-	-	-	-	-	1	-
1	42	109	3,312	3,464	122	1,307	606
583	4,193	34,682	21,938	61,396	70,685	16,188	2,166
-	-	-	-	-	1,484	2,635	-
-	-	-	-	-	549	379	-
-	-	-	-	-	-	2,938	-
-	-	-	-	-	-	-	-
-	-	-	-	-	-	-	-
-	-	-	-	-	2,024	5,952	-
583	4,193	34,682	21,938	61,396	72,709	22,140	2,166

업종별		기타수산동물					총계
		고래	밍크		기타	소계	
연안어업	기선유망	-	-		79	89	88,364
	기타유자망	-	-		1,370	2,390	28,309
	대형안강망	-	-		939	9,839	88,005
	기타안강망	-	-		84	4,019	11,811
	기선권현망	-	-		-	-	27,828
	연승	-	-		914	1,035	29,059
	일본조	-	-		2,349	70,262	76,190
	범선저인망	-	-		149	1,495	12,012
	잠수기	-	-		4,166	4,313	14,718
	기선상어연승	-	-		11	11	2,662
	제1종공동	-	-		371	412	66,416
	제2종 "	-	-		54	39	7,467
	제3종 "	-	-		278	2,162	13,606
	해조채취	-	-		50	57	6,432
	대부망	-	-		67	674	4,173
	대모망	-	-		48	712	9,899
	소대망	-	-		29	321	9,132
	기타청치망	-	-		77	149	6,638
	기타연안어업	-	-		2,117	4,152	35,979
	소계	-	-		13,152	102,191	538,700
근해어업	대형기저	-	-		1,617	5,736	92,850
	중형기저	-	-		1,666	2,585	37,841
	새우트롤	-	-		-	2,938	3,673
	기선선망	-	-		-	-	12,890
	대형도경	358	700		-	1,058	1,058
소계	358	700		3,283	12,317	148,312	
합계	358	700		16,435	114,508	687,012	

14. 시도별 분기별 제품별 생산계 획량

(단위: %)

		소진품	염건품	염신품	염장품	자건품	통조림	어세어분	한천	해태	해조류	냉동품	기타식용품	합계
서울	1/4	-	-	-	-	-	-	-	-	-	-	616	-	616
	2/4	-	-	-	-	-	-	-	-	-	-	1,199	-	1,199
	3/4	-	-	-	-	-	8	-	-	-	-	259	-	267
	4/4	-	-	-	-	-	-	-	-	-	-	1,166	-	1,166
	소계	-	-	-	-	-	8	-	-	-	-	3,240	-	3,248
부산	1/4	-	-	-	-	-	-	79	45	17	101	1,490	278	2,010
	2/4	96	2	256	10	440	-	158	15	-	228	6,624	556	8,385
	3/4	144	4	384	15	660	11	185	20	-	-	5,465	741	7,629
	4/4	-	-	-	-	-	15	105	26	2	7	2,981	278	3,414
	소계	240	6	640	25	1,100	26	527	106	19	336	16,560	1,853	21,438
경기	1/4	-	-	9	-	-	-	-	-	-	20	346	16	391
	2/4	432	465	1,166	405	-	-	-	-	-	60	540	33	3,101
	3/4	48	-	2,376	285	74	-	-	-	-	2	648	44	3,477
	4/4	-	-	769	810	36	-	-	-	-	2	626	16	2,259
	소계	480	465	4,320	1,500	110	-	-	-	-	84	2,160	109	9,228
강원	1/4	-	-	48	-	-	41	13	-	-	282	889	523	1,796
	2/4	840	2	336	113	55	1,610	25	-	-	870	1,732	1,046	6,629
	3/4	3,752	4	816	137	-	330	30	-	-	12	374	1,395	6,850
	4/4	1,008	-	400	-	-	83	17	-	-	12	1,685	524	3,729
	소계	5,600	6	1,600	250	55	2,064	85	-	-	1,176	4,680	3,488	19,004



		소건품	염건품	염신품	염장품	자건품	통조림
충 남	1/4	-	-	768	-	-	-
	2/4	180	156	1,104	200	14	-
	3/4	6	55	1,728	200	74	-
	4/4	4	29	1,200	-	22	-
	소 계	160	240	4,800	400	110	-
전 북	1/4	-	-	-	-	-	-
	2/4	64	873	560	624	-	26
	3/4	-	27	240	136	-	8
	4/4	-	-	-	40	-	18
	소 계	64	900	800	800	-	52
전 남	1/4	403	110	24	-	-	-
	2/4	1,075	373	288	105	1,006	71
	3/4	381	538	352	780	528	84
	4/4	381	359	136	615	116	17
	소 계	2,240	1,380	800	1,500	1,650	172
경 북	1/4	224	-	-	-	-	258
	2/4	280	-	112	100	220	3,973
	3/4	2,128	-	198	150	330	464
	4/4	2,986	-	10	-	-	465
	소 계	5,600	-	320	250	550	5,160

어세어분	한 친	해 태	해조류	냉동품	기타식용품	합 계
-	-	340	143	86	65	1,402
-	-	-	265	130	131	2,150
-	-	-	4	79	175	2,321
-	-	38	8	65	65	1,431
-	-	378	420	360	436	7,304
-	-	8	-	86	16	110
-	-	-	-	130	33	2,310
-	-	-	-	79	44	534
-	-	1	-	65	16	140
-	-	9	-	360	109	3,094
9	134	2,299	975	907	16	4,877
53	10	-	1,225	1,426	33	5,665
62	10	-	23	1,253	44	4,055
29	80	256	45	,734	16	2,784
153	234	2,555	2,268	4,320	109	17,381
51	87	-	470	2,88	180	1,558
102	-	-	590	634	360	6,371
119	-	-	11	403	480	4,283
68	40	-	21	1,555	179	5,306
340	127	-	1,092	2,880	1,199	17,518

		소진품	염전품	염신품	염장품	자건품	통조림
경 남	1/4	48	-	56	-	147	-
	2/4	48	1	78	60	295	19
	3/4	608	2	-	90	4,054	19
	4/4	896	-	986	-	2,874	908
	소 계	1,600	3	1,120	150	7,370	946
제 주	1/4	-	-	-	-	-	-
	2/4	6	-	640	50	22	29
	3/4	10	-	960	75	33	143
	4/4	-	-	-	-	-	-
	소 계	16	-	1,600	125	55	172
합   제	1/4	675	110	905	-	147	299
	2/4	2,891	1,872	4,540	1,667	2,052	5,728
	3/4	7,077	5,272	7,054	1,868	5,753	1,067
	4/4	5,257	388	3,501	1,465	3,048	1,506
	계	16,000	3,000	16,000	5,000	11,000	8,600

어세어분	한 천	해 태	해 조류	냉동품	기 타식용품	합 계
89	131	170	434	317	523	1,915
179	-	-	544	490	1,047	2,761
208	5	-	10	489	1,395	6,880
119	67	19	20	144	523	6,556
595	203	189	1,008	1,440	3,488	18,112
-	-	-	867	-	16	883
-	-	-	1,089	-	33	1,869
-	-	-	20	-	44	1,285
-	-	-	40	-	16	56
-	-	-	2,016	-	109	4,093
241	397	2,834	3,292	5,025	1,633	15,558
517	25	-	4,871	12,905	3,272	40,440
604	35	-	82	9,049	4,362	37,581
338	213	316	155	9,021	1,633	26,841
1,700	670	3,150	8,400	36,000	10,900	120,400

